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42-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16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1. 25.

연구수행기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주영(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연 구 원	이미정(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지현(평택대학교 사회복지과)
	허선주(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과)
연 구 보 조 원	박민영(평택대학교 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권의 개념과 정의 밝힘
- 장애인 평생교육권 실태 밝힘
- 선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우수 프로그램 제시함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 양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5명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명,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하였음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434명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203명 등 총 63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요건, 정당한 편의를 포함한 교육환경, 평생교육기관 이용 기회 및 운영 실태, 교육권 신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연구 결과

1) 국내외 문헌조사

- 이론적 배경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권의 개념을 밝히고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배경,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정책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인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특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한계를 제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미국과 호주,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등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초점집단면담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면담 결과 이용자들은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제공인력에 대한 성인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면담 결과 종사자들은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인이 참여할만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전문가 면담 결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생교육 전문가의 교류·협력 부재와 기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양성과정과 재교육 체계가 없고,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시설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수강료 의존률이 높은 민간기관들이어서 장애인 학습자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설문조사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45.0%)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여가 및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동일하게 뒤를 이음.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37.4%)으로 파악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에 대해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부처로는 '보건복지부'(26.3%)와 '교육부'(20.0%), 그리고 '기타 부처'(33.7%)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 항목으로 '운영비'(56.7%)가 가장 많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지원'(11.8%) 순이었으나, 정부 부처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이상(55.4%)이 낮은 편이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들의 자격 및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능력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음 또한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교육요구(장애인의 자격 및 학습 능력 수준 부족으로 인한 기초문해교육 등)와 교육수혜자의 교육요구(문화예술교육 및 직업능력향상교육)와는 차별적인 인식이 많았음
- 업무활동에 대해 종사자들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주로 하지만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요인(어려움)은 외부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 내 장애요인의 경우 종사자의 역량 측면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3.64)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부족'(3.61)이 다음으로 높음. 기관 내 여건 측면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3.79)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의 열악한 부분 중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4.24)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교·강사 등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일 높게 꼽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 종사자들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4.15)을 타 기관과의 협력이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에 대해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종사자들은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50.0%)과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48.4%)이 비슷하며, 종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소의 순위 차가 있긴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확대'와 ②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④ '우수한 강사확보와 질 관리'에서 찾고 있음. 또한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소의 순위 차가 있긴 하지만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②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③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④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⑤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고 있음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33.2%)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여가 및 취미생활'이라는 생각이 그 뒤를 이었으나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순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38.0%)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전체의 73% 이상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82% 이상의 이용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74.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정도에 대해 이용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소개'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5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전단지 및 안내지' 등의 순이었으며, 이용자들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초문해교육'이 27.5%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 24.2%, '인문교양교육' 17.3%, '직업능력향상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육' 13.8%, '학력보완교육' 13.5%, '시민참여교육' 3.8% 순이었음. 이용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간은 그동안 참여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3년 6개월이며, 이용자들이 지출한 평생교육 수강료는 무료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하'가 9.3%, '4~5만원' 6.0%, '10만원 이상' 5.4%, '6~10만원' 3.4% 순이었음. 이용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72.7%가 보통 이하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대해 77.5%는 보통 이하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이용자들은 50.8%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누구와 함께 해도 상관없다(28.1%)거나 장애인들과만 하기(15.8%)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간으로는 '오후만'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40.1%이며, '저녁 시간' 21.5%, '종일'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20.0%를 차지하고 있음(반면에 '오전'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18.4%로 나타나고 있음). 이용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19.7%이며, '문화예술교육'이 18.7%로 그 뒤를 이었음. 또한 이용자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기타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감각장애 이용자들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에 대해 이용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52.7%)이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41.0%)보다 높았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18.4%)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15.6%),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10.1%)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1)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평생교육기관을 통합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
-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한 관련시설·설비를 마련하고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준수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함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충실히 제공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력 양성, 선발 및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함

2)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1)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 2017년 시행 예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재정 및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확충함
-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배치(과제01),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과제02)

(2)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성인 장애인구수, 성·연령·학력·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현황을 파악하고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제공 현황을 파악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행·재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를 파악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이용자, 종사자 등)의 평생교육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함

-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 결정(과제0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개선(과제04),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업무 매뉴얼 개발(과제05)

(3) 평생교육 시설의 접근성 확보와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

-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준수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지정 요건을 마련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과제0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준수(과제07)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내 이동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설비 개선 지침을 개발하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편의제공 지침을 개발함
- 평생교육 시설 내 이동·접근성 개선 지침 개발(과제08), 유형별 장애인의 편의제공 지침 개발(과제09)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며,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적용 모형과 운영지침을 개발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과제10),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과제11)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유형에 따른 역할과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유형의 배치기준을 정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 방안을 마련함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 규정(과제1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배치 기준 규정(과제1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직무연수와 보수교육 시행(과제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 기관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를 정하고,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하며, 기관의 평가 절차와 지침을 정함(과제15)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영역과 지표 개발(과제1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개발(과제1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차 례

■ 요약 / 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5
3. 연구 방법 ····· 6
가. 문헌조사 ····· 6
나. 초점집단면담조사 ····· 6
다. 설문조사 ····· 7
4. 연구의 제한점 ····· 7

제2장 이론적 배경 ····· 9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권 ····· 11
가. 평생교육의 개념 및 권리 ····· 11
1) 평생교육의 개념 ····· 11
2)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 15
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권 ····· 16
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립 요건 ····· 18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 ····· 19
3.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 22
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배경 ····· 22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 24
1) 헌법과 교육기본법 ····· 24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25
3)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 ····· 27
4) 평생교육법 ····· 2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정책 ····· 33
1) 평생교육 전달체계 ····· 33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 36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41

1. 성인 장애인 현황 ····· 43
가.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 ····· 43
나.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등급 ····· 43
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 44
라. 성인 장애인의 교육 정도 ····· 46
마.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 47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특성 ····· 48
가.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 48
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 51
3.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 53
가.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3
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5
1)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5
2) 복지관 등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7
다.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 58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원 현황 ····· 59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60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및 교·강사 현황 ····· 61
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의 한계 ····· 63

제4장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 ····· 65

1. 미국 ····· 67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67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71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78
1) 커뮤니티 컬리지 ····· 7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사례 ····· 81
3) 이 외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사례 ····· 84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94
2. 호주 ····· 96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96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99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101
1) LATCH-ON ····· 102
2) Disability Services Australia ····· 104
3) 장애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106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107
3. 일본 ····· 110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110
1) 평생교육의 태동기(1940년~1970년) ····· 110
2) 평생교육의 확장기 ····· 112
3)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전환기(1988년~) ····· 113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115
1)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 전달체계 ····· 115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118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121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122

제5장 조사연구 ····· 125

1. 초점집단면담 ····· 127
가. 면담 목적 ····· 127
나. 면담 대상 ····· 127
다. 조사 도구 및 방법 ····· 128
라. 면담 결과 ····· 129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 129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137
3)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 141
마. 소결 ····· 14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설문조사 ····· 149
가. 조사 목적 ····· 149
나. 조사 대상 ····· 150
다. 조사 도구의 개발 ····· 150
1) 이용자용 조사 도구 ····· 150
2) 종사자용 조사 도구 ····· 152
라. 조사 기간 및 방법 ····· 153
마. 조사 결과 ····· 153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분석 결과 ····· 153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 결과 ····· 182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분석 결과 ····· 212
바. 소결 ····· 224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224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 229

제6장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235

1.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 237
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 ····· 238
3. 영역별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239
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 239
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244
다.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제공 ····· 246
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 251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253
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배치 및 관리 ····· 257
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 262
4. 정책 개선 과제 수행기관 ····· 264

제7장 결론 및 제언 ····· 267

1. 결론 ····· 269
2. 제언 ····· 27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차례

〈표Ⅱ-1〉 평생교육 개념 정의 ····· 12
〈표Ⅱ-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 ····· 20
〈표Ⅱ-3〉 2012년 대비 2016년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 현황 비교 ·· 39
〈표Ⅱ-4〉 2012년 대비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비교 ····· 40
〈표Ⅲ-1〉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 ····· 43
〈표Ⅲ-2〉 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 ····· 44
〈표Ⅲ-3〉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 45
〈표Ⅲ-4〉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 45
〈표Ⅲ-5〉 장애인과 전 국민 교육 정도 비교 ····· 47
〈표Ⅲ-6〉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정도 ····· 47
〈표Ⅲ-7〉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특성 ····· 48
〈표Ⅲ-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별 교육기관과 특성 ·· 51
〈표Ⅲ-9〉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54
〈표Ⅲ-10〉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 ····· 54
〈표Ⅲ-1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 55
〈표Ⅲ-1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56
〈표Ⅲ-13〉 기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 57
〈표Ⅲ-1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 58
〈표Ⅲ-15〉 조사기관 현황 ····· 59
〈표Ⅲ-16〉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 62
〈표Ⅲ-17〉 경력별 교·강사 현황 ····· 62
〈표Ⅲ-18〉 자격증별 교·강사 수 ····· 63
〈표Ⅳ-1〉 1997년 장애인교육법의 개정 내용 ····· 68
〈표Ⅳ-2〉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 79
〈표Ⅳ-3〉 미국의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81
〈표Ⅳ-4〉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사례 ····· 90
〈표Ⅳ-5〉 지역사회통합연구소(ICI)의 서비스 영역에 따른 대표적인 프로그램 ····· 93
〈표Ⅳ-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운영 프로그램 ····· 121
〈표Ⅴ-1〉 초점 집단 면담 조사 대상 ····· 12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2〉 초점 집단 면담 도구 ····· 128
〈표V-3〉 설문 조사 대상 ····· 150
〈표V-4〉 일반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 151
〈표V-5〉 발달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 151
〈표V-6〉 일반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 152
〈표V-7〉 종사자 성별 ····· 154
〈표V-8〉 종사자 연령 ····· 154
〈표V-9〉 종사자 학력 ····· 154
〈표V-10〉 종사자 거주지 ····· 155
〈표V-11〉 종사자 소속기관 ····· 155
〈표V-12〉 종사자 자격증 ····· 156
〈표V-13〉 종사자 고용형태 ····· 157
〈표V-14〉 종사자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 157
〈표V-15〉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 158
〈표V-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부처 ····· 158
〈표V-17〉 정부 지원 항목 ····· 159
〈표V-1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만족도 ····· 160
〈표V-19〉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 방법 ····· 160
〈표V-2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 161
〈표V-21〉 장애인 수강자 편의 제공 만족도 ····· 161
〈표V-22〉 장애인 수강자에게 불충분한 편의제공 이유 ····· 162
〈표V-23〉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 162
〈표V-24〉 운영비 조달 방법 ····· 163
〈표V-25〉 장애인 수강생 거부 경험 ····· 163
〈표V-26〉 장애인 평생교육 거부 사유 ····· 164
〈표V-2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164
〈표V-28〉 선호 프로그램 ····· 164
〈표V-29〉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 ····· 165
〈표V-30〉 업무비중 ····· 166
〈표V-31〉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 166
〈표V-32〉 업무수행 ····· 167
〈표V-33〉 전반적 장애요인 ····· 16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34〉 기관유형별 장애요인 ····· 168
〈표V-35〉 기관 외 측면 장애요인 ····· 169
〈표V-36〉 기관 내 측면 장애요인 ····· 170
〈표V-37〉 타 기관과의 협력 ····· 171
〈표V-38〉 평생교육의 목적 ····· 172
〈표V-39〉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 172
〈표V-40〉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 ····· 173
〈표V-41〉 종사자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 174
〈표V-42〉 평생교육권 인식도 ····· 175
〈표V-43〉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권 인식도 ····· 176
〈표V-44〉 관련 부처의 적절성 ····· 177
〈표V-45〉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 177
〈표V-46〉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 179
〈표V-47〉 기관별 정책과제 ····· 179
〈표V-48〉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 181
〈표V-49〉 이용자자 성별 ····· 182
〈표V-50〉 이용자 연령 ····· 182
〈표V-51〉 거주지 유형 ····· 183
〈표V-52〉 장애를 입은 평균 연령 ····· 184
〈표V-53〉 장애유형 ····· 184
〈표V-54〉 장애등급 ····· 185
〈표V-55〉 최종학력 ····· 185
〈표V-56〉 일 유무 ····· 186
〈표V-5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 186
〈표V-58〉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 186
〈표V-59〉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187
〈표V-6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188
〈표V-61〉 참여 경험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188
〈표V-62〉 참여한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 ····· 189
〈표V-63〉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 190
〈표V-64〉 장애유형별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 190
〈표V-65〉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 ····· 19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66〉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 ····· 192
〈표V-67〉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 부담 ····· 192
〈표V-68〉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 195
〈표V-69〉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충분성 및 정보의 접근성 ·· 196
〈표V-70〉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 197
〈표V-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록 시 거절 경험 유무 ····· 197
〈표V-72〉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 유무 ····· 198
〈표V-73〉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 198
〈표V-74〉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 199
〈표V-75〉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 199
〈표V-76〉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만족도 ····· 200
〈표V-77〉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 200
〈표V-78〉 장애유형별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 201
〈표V-79〉 평생교육의 목적 ····· 202
〈표V-8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 202
〈표V-81〉 평생교육의 정의 ····· 203
〈표V-82〉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정의 ····· 204
〈표V-83〉 평생교육 참여 권리 ····· 205
〈표V-84〉 평생교육 참여기회 보장수준 ····· 205
〈표V-85〉 통합프로그램 운영 필요 ····· 205
〈표V-86〉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 206
〈표V-87〉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 206
〈표V-88〉 교육 시간대 ····· 207
〈표V-89〉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8
〈표V-90〉 장애유형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8
〈표V-91〉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 209
〈표V-92〉 장애유형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 210
〈표V-93〉 관련 부처의 적절성 ····· 211
〈표V-94〉 증진 요소 ····· 211
〈표V-95〉 성별 ····· 213
〈표V-96〉 연령 ····· 213
〈표V-97〉 학력 ····· 2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98〉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유무 ····· 214
〈표V-99〉 장애등급 ····· 215
〈표V-100〉 평생교육 경험 및 세부 교육 경험 ····· 216
〈표V-101〉 평생교육을 제공받은 장소 ····· 217
〈표V-102〉 평생교육의 유익성 ····· 218
〈표V-103〉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법 ····· 219
〈표V-104〉 함께 하고 싶은 대상 ····· 219
〈표V-105〉 교육 시간대 ····· 220
〈표V-106〉 교육장소 변경 ····· 221
〈표V-107〉 일상생활에 대한 능력 및 자립능력 ····· 221
〈표V-108〉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 ····· 223
〈표V-109〉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 233
〈표VI-1〉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와 계열별 교습과정 ····· 243
〈표VI-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일반사항 ····· 247
〈표VI-3〉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등) ····· 250
〈표VI-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251
〈표VI-5〉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의 구성 ····· 254
〈표VI-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 255
〈표VI-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역할 ····· 258
〈표VI-8〉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역할·자격요건 ····· 259
〈표VI-9〉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별 직무연수 과목과 시간 ····· 261
〈표VI-10〉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지표(안) ····· 263
〈표VI-1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정책 수행 ····· 26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차례

[그림Ⅱ-1] 평생교육의 길 ····· 15
[그림Ⅱ-2] 장애인 평생교육의 요건 ····· 18
[그림Ⅱ-3] 평생교육 전달체계 ····· 34
[그림Ⅱ-4]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35
[그림Ⅱ-5] 개정「평생교육법」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예상도 ····· 36
[그림Ⅳ-1] 중심개념 분류 연구를 위한 분석체계 ····· 74
[그림Ⅳ-2] 일본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중앙 행정체계 ····· 116
[그림Ⅴ-1]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 167
[그림Ⅴ-2]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 173
[그림Ⅴ-3] 종사자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 175
[그림Ⅴ-4]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권 인식도 ····· 176
[그림Ⅴ-5]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 178
[그림Ⅴ-6]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 178
[그림Ⅴ-7] 기관별 정책과제 ····· 180
[그림Ⅴ-8] 기관별 정책과제 ····· 181
[그림Ⅴ-9] 장애유형별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 191
[그림Ⅴ-10]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 195
[그림Ⅴ-11] 평생교육과 관련한 만족도 ····· 196
[그림Ⅴ-12]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 197
[그림Ⅴ-13]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 199
[그림Ⅴ-14] 장애유형별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 201
[그림Ⅴ-15]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 202
[그림Ⅴ-16]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정의 ····· 204
[그림Ⅴ-17]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 207
[그림Ⅴ-18] 장애유형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8
[그림Ⅴ-19] 장애유형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 210
[그림Ⅴ-20] 증진요소 ····· 212
[그림Ⅴ-21]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유무 ····· 215
[그림Ⅴ-22] 평생교육 경험 및 세부 교육 경험 ····· 21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23] 평생교육의 유익성 ····· 218
[그림Ⅴ-24] 함께 하고 싶은 대상 ····· 220
[그림Ⅴ-25]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 ····· 224
[그림Ⅵ-1]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체계도 ····· 237
[그림Ⅵ-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 과제 ····· 238
[그림Ⅵ-3]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제([그림Ⅱ-4]와 동일) ····· 239
[그림Ⅵ-4]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241
[그림Ⅵ-5] 통합형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 ····· 256
[그림Ⅵ-6] 전담형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 ····· 256
[그림Ⅵ-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절차 ····· 264

■ 참고문헌 ····· 273
■ 부록 ····· 27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헌법」에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같은 해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에서는 각급학교에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것과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것,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기관이 그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의 교육 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책임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

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육에 맞추어져 오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만3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보육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과 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5,376개 평생교육기관에서 205,546개 프로그램에 만 18세 이상 성인 국민의 31.4%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9개를 포함하여 총 252개이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은 889개에 불과하다(교육부, 2016). 또한 참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은 전체 해당 인구의 0.1%에 불과한 현실이다.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그 규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된 연원이 짧아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 가운데 하나인 평생교육을 장애인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 사회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을 가장 실천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것이다.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권 보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 제정 당시 그동안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도맡아 온 장애인 야학의 높은 요구에 따른 지원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후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법」은 일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을 법제화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의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발달장애인법」에 재차 규정함으로써 목마른 발달장애인만이라도 돌파구를 찾자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각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 장애집단만의 요구로는 「헌법」의 권리 보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 규정들을 폐지하는 대신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대폭 신설 규정한 조치는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이야 말로 「헌법」의 평생교육권 보장 이념을 가장 실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것은 평생교육에 관한 한 장애인을 더 이상 「특수교육법」이나 「발달장애인법」의 어느 규정으로 보장해야 할 특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권리를 가진 학습자로 인식함으로써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법률 통합의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참여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국민의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충해야 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장애인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제공인력을 양성·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권의 개념과 정의를 밝힌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권 실태를 밝힌다.

셋째, 선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우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첫째, 국내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문헌자료(저서, 논문, 칼럼 등)의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권의 개념을 밝힌다.

둘째, 국내의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 정부보고서 등의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권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다.

셋째,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장애인 평생교육 증진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와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한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프로그램 이용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정확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 학술지, 관련 법규 및 정부의 정책보고서, 관련 통계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국외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자료, 관련 문헌,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정부기관 등을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나. 초점집단면담조사

양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반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기반으로 초점집단면담조사를 하였다.

다. 설문조사

문헌조사와 초점집단면담조사 결과 및 연구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차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여 타당성 검증을 위해 4명의 외부전문가 검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감수를 거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용 2종(발달장애인용 별도 개발)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용 1종 등 총 3종의 설문지(부록 참고)를 최종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로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력보완 교육을 주로 하는 장애인 야학(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진들은 모든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설문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실제 경험이 없는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설문에 응하기를 기피하여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들만의 의견만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용자들 또한 평생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을 경우 설문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을 피함으로써 대부분 경험자 중심으로 의견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이들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1유형)이거나, 「학원법」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2유형), 또는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유형)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시 정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학령기 교육(즉,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이나 대학의 정규교육이 아닌 교육을 말한다. 단,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법」 제24조에 의해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전공과 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좀 더 조작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받고 있으므로 이 시설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복지시설들은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3유형의 기관이라 볼 수 있지만,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기관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 복지 시설 및 그 외의 기관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인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장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권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
3.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권

가. 평생교육의 개념 및 권리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평생'이라는 명사와 '교육'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복합명사이다. 복합명사의 경우 주로 앞의 말은 수식이나 제한의 개념이 크며, 그만큼 뒤의 말이 중요한 뼈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평생교육이라는 말 가운에 중요한 뼈대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문명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간만의 중요한 특성이자 사회가 보장해야 할 천부인권인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에서의 '평생'이라는 용어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육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동어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숭희, 2005). 평생교육이라는 말에서 '평생'은 '교육'이라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로서 뒤에 있는 '교육'의 본래 특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교육이 원래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학교만을 교육의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말로서 교육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탄생한 용어가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평생교육은 인간이 문명으로 이룩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UNESCO(1972)의 평생교육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인간주의적 이상과 민주주의 및 통합에 대한 신념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적인 인간주의적 이상과 민주주의 통합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희수, 2001). UNESCO한국위원회(1973)는 평생교육이란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교육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가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소외된 계층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인간중심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복지와 평등이 강한 시각으로 출발을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에 맞춰 각자의 열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사회에 헌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져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은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을 강조한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지식 전달의 개념과 전문 기술의 습득에서 개인개발을 위한 학습과 창의적 잠재력 개발 및 활용으로까지 확대되는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무형식학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과 제공 형태에서 필요하다(UNESCO Education Strategy 2014-2021).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경제적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이종재, 2004). 따라서 OECD(1996, 1998)의 경제적이고 인적자본적 관점이 반영되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국가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이무근, 김신일, 강무섭, 최운실,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조명했을 때, 평생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개념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차갑부, 2014). 평생교육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각각 정의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한다(권대봉, 2009). 협의 개념에서의 정의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사회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교육인 비형식적(non-formal)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표 II-1〉에서 제시한 모든 정의는 평생교육을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차갑부, 2014).

〈표 II-1〉 평생교육 개념 정의

학자	개념 정의
황종건 (1983)	평생교육은 '생을 통한 교육'으로, 그동안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던 학교교육에 국한되었던 교육의 개념을 탈피하여 개인의 일생을 통한 교육적 과정의 수직적 연결(계속성)과 개인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과의 수평적 통합(통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자	개념 정의
장진호 (1985 : 104)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
김종서 외 (1987 : 14)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아동교육·청년교육·성인전기교육·성인후기교육·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김도수 (1994 : 142)	평생교육이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적 교육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적 교육의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교육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재편성하려는 교육체제 개혁의 지도이념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3 : 6)	평생교육이란 평행을 통한 계속교육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평생교육법 (1999.8.31. 공포)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2009.5.8. 일부개정)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Dave, R.H. (1976 : 43)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달을 꾀하는 과정이다.
Lengrand, P. (1979 : 43)	평생교육은 개인적·사회적·직업적 생활을 충실히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확대된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이다.
Gelpi, E. (1979 : 40)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과 학교졸업 후 교육·훈련을 통합하고,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관계를 발전시켜 개인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최대한 문화적·교육적 성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중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 출처 :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48~49.

평생교육은 공간적 개념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일터교육, 지역사회교육, 사이버교육을 포함하고, 형식적 개념의 무형식교육, 형식교육, 비형식 교육을 망라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권대봉, 2009). 교육을 공간적 정의로 분류하여 다섯 마당으로 제시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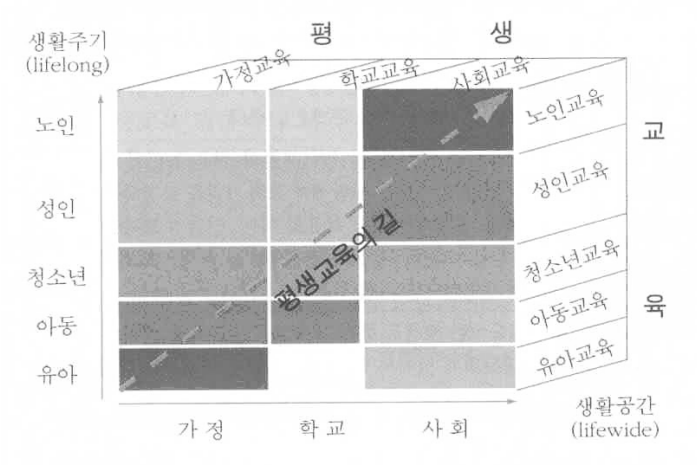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섯 마당에서 교육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에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생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생활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비형식·무형식의 다양한 교육활동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하게 차갑부(2014)는 평생교육을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제시하면, 그는 인간의 일생을 시간 축(생활주기, lifelong)과 관련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공간 축(생활과정, lifewide)과 관련되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직적 통합은 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평생에 걸친 각 단계의 교육이 상호관련성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유아기로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수평적 통합은 인간이 활동하는 생활공간의 통합이다. 인간의 교육활동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각종 사회기관 등 학교 외에도 다양한 학습공간이 존재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동물원·박물관·도서관·클럽·영화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여가활동조차도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사회의 모든 생활공간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수평적 통합이다. 이상의 정의와 개념을 토대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관통하는 평생교육의 길(way of lifelong education)은 [그림 II-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같은 공간상에 수평 축과 수직 축을 동시에 포함하는 입체적인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Ⅱ-1] 평생교육의 길

※ 출처 :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47.

2)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UNESCO에 의하면 교육은 근본적인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행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된다. 따라서 교육은 소외계층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된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파생된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제법, 특히 교육차별금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에서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00)에서도 교육은 근본적인 인권으로 재확인했으며, 2000년까지 달성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길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임연기 외, 2013). 이러한 교육권은 협의 및 광의의 의미로 구분하여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표시열, 2008).

첫째, 가장 협의의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학습권을 의미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학습권은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습자는 국가와 학교 설치자에게 학습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협의의 교육권으로 학습권에 교육을

시킬 또는 교육을 할 권리로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설치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포함된다. 셋째, 광의의 교육권으로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당사자의 교육에 관련된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 넷째, 가장 넓은 의미인 교육권은 「헌법」 상 인정되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교육 인권, 국민 교육권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은 학습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학습은 교육적 맥락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 외적인 상황에서 더욱 관찰되는 특성이 있다(Thomas, 199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평생교육은 제공자 차원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평생학습은 학습자 차원에서 학습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거나 우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의 관점은 학습자 측면을 강조하지만, 평생교육의 관점은 학습 경험의 제공자와 학습자를 모두 고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권대봉, 2007). 학습 및 교육 대상자의 특성들을 반영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분석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그들만을 위한 학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이 생애주기와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자와 학습자 측면에서 대상 집단의 특정화 및 세분화 전략을 활용하고, 면밀한 요구분석을 통해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권

장애인의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지금까지 제시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31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장의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능력이라 함은 개인이 가진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개인이 만족할 만한 존엄한 가치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제공되는 교육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즉, 장애인을 포함한)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인간 특성의 한 단면인 교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근대 이후 학교교육에 의해 가려져 온 원래 의미의 재발견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생애의 특정한 순간 특정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시간(수직적 환경)과 장소(수평적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상황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수준 높은 양질의 삶과 행복추구에 기인한다(한준상, 2002).

질 높은 삶과 행복 추구는 그 목표점이 개인에 따라, 즉 각 개인의 연령이나 재산, 성별, 종교적 신념, 국적,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 말은 개인이 설정한 삶의 질과 행복의 가치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장소 또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이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이 있다.

차갑부(2014)는 평생교육을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장애인 또한 한 개인이며,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수직적 환경과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환경에 놓여 있는 사회의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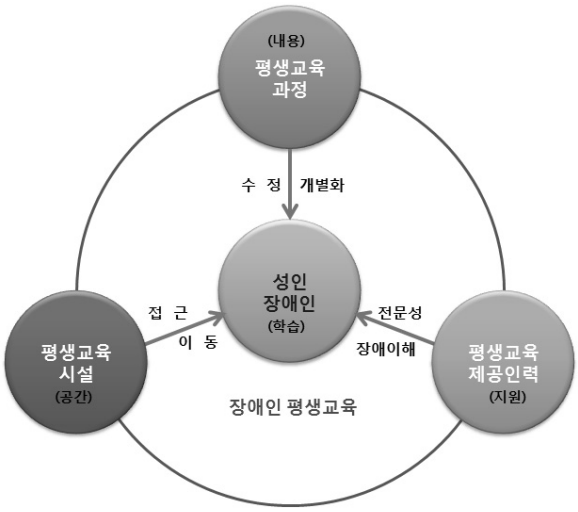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 개념을 별도로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장애인은 국민이며, 국가가 최고법으로 정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평생교육’은 개인이 장애를 가진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립 요건

보통 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교육자, 학습자, 교육내용이라고 한다. 학교교육의 장면에서 보면 교육자로서의 교사, 학습자로서의 학생,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인 교육과정이 된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 학생, 교육과정은 교육을 성립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3요소라고 불린다(강영삼 외, 2007). 이러한 요소는 평생교육이 되었든 장애인 평생교육이 되었든 ‘교육’이라는 점에서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간으로서의 교육장소이다. 교육 장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를 떠올 릴 수 있으나 평생교육에서의 교육 장소는 워낙 다양해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이동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Ⅱ-2] 장애인 평생교육의 요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최소 성립 요건으로 학습자로서의 성인 장애인과 공간으로서의 평생교육 시설, 프로그램으로서의 평생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평생교육 제공인력을 들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2]와 같다.

학습자로서의 성인 장애인은 학습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공간으로서의 평생교육 시설은 장애인이라는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 이동과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으로서의 평생교육과정은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재구성(수정, 개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평생교육 제공인력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서의 교육 관리자,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교수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지원하는 교육보조자들이다. 평생교육 제공인력은 학습자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대상인 학습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육에서 대상, 즉 학습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를 지녔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이 장애인을 포함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해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표Ⅱ-2〉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Ⅱ-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

대상자 구분	대상의 교육적 특성	비고
시각장애를 지닌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의 안면장애, 뇌병변장애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상자 구분	대상의 교육적 특성	비고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복지법」 상의 언어장애 포함
학습장애를 지닌 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상의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을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배경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지배의 잔재인 '사회교육'으로 불렸으며, 당시에는 새마을교육과 같이 정부시책을 위한 국민동원의 필요에 따라 제도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인의 지적 성장과 역량신장을 위한 교육은 정부도 사회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김신일, 2016).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한국사회교육협회가 결성됨으로써 성인대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조직과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연대강화를 꾀하였다. 1977년 한국사회교육협회의 주최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법'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1978년 문교부의 정책연구과제인 평생교육관계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평생교육에 관한 활발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김신일, 2016). 그 후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1980년 10월 23일 헌법 제29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였고,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3월 시행되었다. 「평생교육법」은 2007년 개정되면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 즉,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체계가 정비됨으로써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기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5년 단위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민단체, 언론기관, 사업장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와 기관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태, 2012). 1999년 5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 강연인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에서 김도수(1999)는 장애인 교육의 평생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체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사용하였다. 그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제화 과제'로 행정의 통합과 연계,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장애인이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자원봉사의 다양화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논의는 2001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정동영 외 2인, 2001)가 이루어졌으며, 동 연구 추진과정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이 최초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최초로 법제화되어 시행된 것은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부터라 할 수 있다.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 제33조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방안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게 하였다.

또한 동법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49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그동안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에만 일부 기여하였을 뿐,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해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령기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계에서는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26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6년 5월에는 「평생교육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앞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지원하는 한편, 「특수교육법」 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함으로써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헌법과 교육기본법

「헌법」에서는 장애를 가진 국민을 별도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과 시기를 벗어나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함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이 장

려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은 직업적 소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책임자에 관한 정의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작 시기를 2013년 4월 11일부터로 정해 두고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3)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치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 규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사회 또는 비장애인들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관련조항들은 지난 5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20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평생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4) 평생교육법

가) 현행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사회교육법」으로 출발한 「평생교육법」은 2007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각 자신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평생교육법

지난 5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대폭 수용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7년 5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들에 의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로 제시되었다(http://www.law.go.kr/main.html).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②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며, ③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④ 장애인 평생교육을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개정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 하나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2)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개정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실행위원회 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부장관 소속(국가단위)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기존법률의 위원 외에 장애인교육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도 기존법률의 위원 외에 장애인평생

교육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도 기존법률의 위원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9.〉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5. 29.〉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③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개정법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5. 29〉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29〉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조항의 이관 및 보완 신설

개정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반드시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존법률 상의 사업 외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상의 조문 신설에 따라 「특수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였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부칙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개정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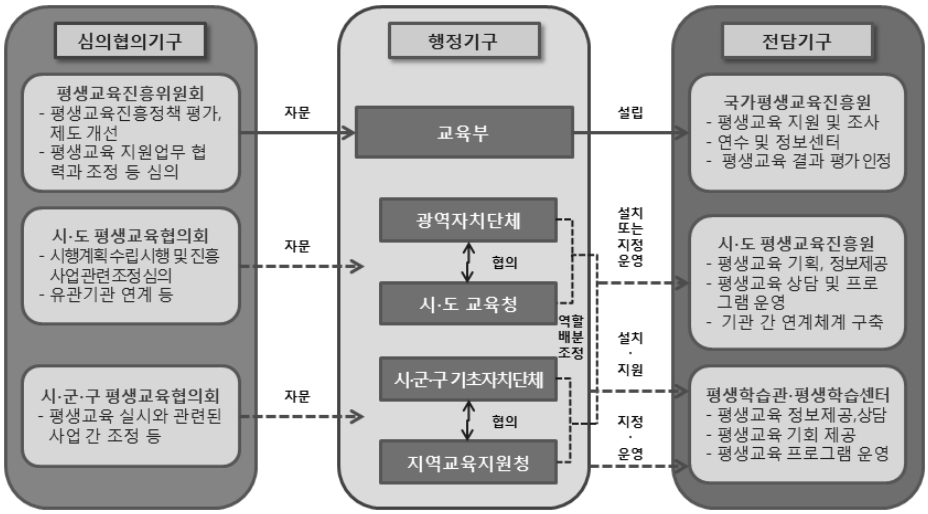
1) 평생교육 전달체계

교육에서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교육의 제공자인 '정부(중앙과 지방)와 학교'로부터 수혜자인 '학생'에 이르는 교수-학습의 지원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우리나라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크게 심의 및 협의기구와 행정기구, 전담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는 각각 '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정부) - ‘광역 자치단체’(시·도)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단계별 체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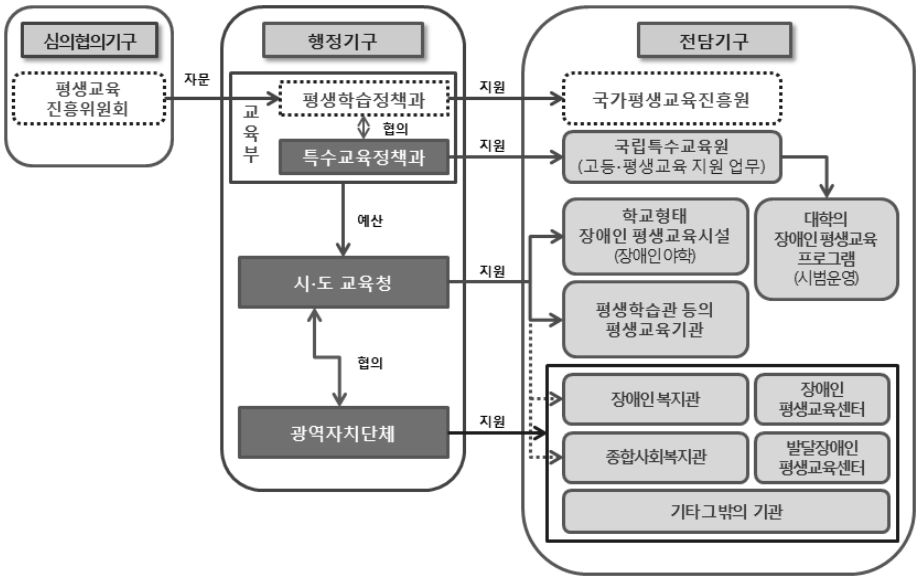
[그림Ⅱ-3]에 따르면, 심의협의기구에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며, 각각 해당 행정기구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기구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기초 자치단체’가 있으며, 각각 해당 전담기구에 지원 역할(설립,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을 수행한다. 전담기구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평생교육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Ⅱ-3] 평생교육 전달체계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전달체계도 원칙적으로 [그림Ⅱ-3]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심의협의기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행정기구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전담기구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형편이어서 그대로 가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그동안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규정은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는 [그림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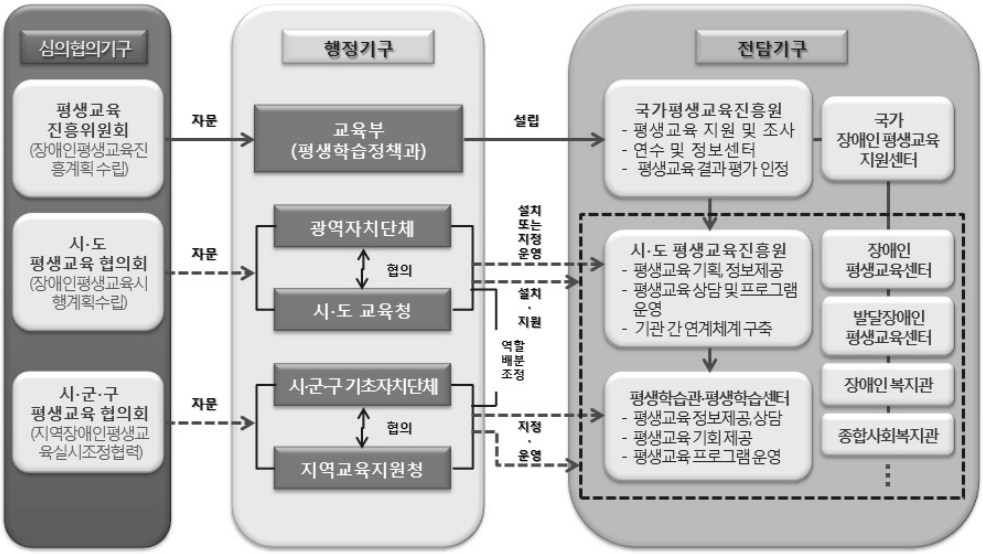


[그림Ⅱ-4]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한편, 2015년부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2016년 5월 29일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적용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예상해 보면 [그림 II-5]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Ⅱ-5] 개정「평생교육법」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예상도

[그림Ⅱ-5]에 의하면, 평생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협의기구를 개편하고, 정부의 행정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의 큰 틀에서 통합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실제의 전문성을 확보·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담기구로 신설하였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크게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교육부라 하더라도 추진 부서가 각각 평생직업교육국 내 평생학습정책과와 지방교육지원국 내 특수교육정책과로 분리되어 있어 방향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관성 및 일원화를 꾀하기 어렵다.

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교육부는 2013년 9월 발표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2013)에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과 성인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의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활용한 성인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OER(교육자원 공개)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용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개발, 및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한 성인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활용한다. 둘째,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중고등학교, 방송대학교 및 국공립 평생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지자체-교육청-평생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성인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의 목적은 공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보완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 인정, 방송중고등학교에 성인 장애인 진입경로를 구축하고 학습을 지원한다. 둘째, 성인 장애인의 교육 욕구를 조사하고, 성인 장애인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대상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콘텐츠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처리와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지원 프로그램 전환을 실시하고 한국교육방송(EBS), 방송대학교, 방송중고등학교 등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1) 기본계획의 역점

2013년부터 시행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 따르면,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둘째, 성인 장애인의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2) 주요 추진 사업

(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시·도별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6개영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장애인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할당 비율을 권고한다. 또한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별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연수 등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체계 구축

첫째,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간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발달장애 등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일반 평생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 지자체 등의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경과와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평생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습정책과)과 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에서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평생학습정책과)의 정책 추진 경과나 결과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 대신 지방교육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의 정책 추진 경과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두 부서의 정책은 어느 정도 상이하지만, 정책 추진 대상이 같으므로 그 성과 데이터는 어느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2016)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전국 49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에서 534명의 교사가 1,69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총 309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표II-3〉과 같다.

〈표II-3〉 2012년 대비 2016년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6년	증감(%)
기관 수		43	49	2.3△
교사 수		343	534	55.7△
학생 수		946	1,690	1.7△
프로그램 수	문해	78	92	1.2△
	교양	60	118	1.9△
	직업	4	22	5.5△
	기타	82	77	0.1▽
	계	224	309	1.4△
지원예산		2,377	2,527	1.1△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02개 기관에서 58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표II-4〉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Ⅱ-4〉 2012년 대비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6년	증감(%)
평생교육 기관	기관 수	148	185	1.3△
	프로그램 수	426	525	1.2△
	예산	1,162	1,805	1.6△
특수학교	기관 수	15	14	0.1▽
	프로그램 수	39	30	0.24▽
	예산	78	45	0.43▽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관 수	26	4	0.85▽
	프로그램 수	115	25	0.79▽
	예산	657	58	99.9▽
계	기관 수	189	202	1△
	프로그램 수	580	580	-
	예산	1,897	1,908	1△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경과 4년째를 추진 전 해인 2012년과 비교한 결과 거의 투자나 변화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야학은 4년 동안 2.3% 증가에 그쳤고, 프로그램 수는 1.4%, 예산은 1.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한 기관 수나 프로그램, 예산의 변화가 1% 증가를 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성인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특성
3.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의 한계

1. 성인 장애인 현황

가.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

2015년 현재 등록 장애인구수는 2,490,406명으로 총인구 51,069,375명 대비 4.88%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의 남성 인구는 전체의 58.1%인 1,446,915명이며, 여성 인구는 41.9%인 1,043,49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남녀 비율 및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남녀 비율		
	계	남	여	남	여	계
총인구수 (2015년 통계청 추계)	51,069,375	25,608,502	25,460,873	50.1%	49.9%	100%
등록 장애인구수 (2015년 보건복지부 추계)	2,490,406	1,446,915	1,043,491	58.1%	41.9%	100%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	4.88%	5.65%	4.10%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나.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등급

2015년 현재 등록 장애인 가운데 1급 장애인은 197,922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급은 334,873명(13.4%), 3급은 432,586명(17.4%), 4급은 370,303명(14.9%), 5급은 521,989명(21.0%), 6급은 632,733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Ⅲ-2〉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2〉 등급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장애 유형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1,281,497	34,576	67,526	155,486	248,140	375,876	399,893
시각	252,874	31,850	6,885	11,756	13,427	21,207	167,749
청각	250,334	6,836	45,429	40,772	54,540	64,084	38,673
언어	18,813	158	2,104	7,780	8,767	3	1
지적	189,752	49,873	65,073	74,805	1	0	0
뇌병변	250,862	55,884	52,125	57,316	31,025	28,099	26,413
자폐	21,103	9,539	8,362	3,202	0	0	0
정신	98,643	2,461	29,723	66,458	1	0	0
신장	74,468	4,380	52,275	65	589	17,159	0
심장	5,833	155	734	4,288	39	617	0
호흡기	12,033	1,726	3,390	6,824	4	89	0
간	10,324	250	352	606	257	8,859	0
안면	2,685	98	415	909	1,194	67	2
장루·요루	14,116	7	111	972	8,085	4,940	1
뇌전증	7,069	129	369	1,347	4,234	989	1
계	2,490,406	197,922	334,873	432,586	370,303	521,989	632,733
등급별 비율	100	7.9	13.4	17.4	14.9	21.0	25.4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2015년 현재 등록 장애인 2,490,406명 가운데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전체의 97.1%인 2,417,82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 인구는 전체의 57.9%인 1,399,737명이며, 여성은 42.1%인 1,018,0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비율을 제시하면 〈표Ⅲ-3〉과 같다.

〈표Ⅲ-3〉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남녀 비율		
	계	남	여	남	여	계
등록 장애인구수 (2015년 보건복지부 추계)	2,490,406	1,446,915	1,043,491	58.1%	41.9%	100%
만 18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구수	2,417,823	1,399,737	1,018,086	57.9%	42.1%	100%
등록 장애인구 대비 만 18세 이상 장애인 비율	97.1%	96.7%	97.6%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15년 현재 전체 등록 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51.4%인 1,281,497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10.2%), 뇌병변장애인(10.1%), 청각장애인(10.0%) 순이다. 만 18세 이상 유형별 성인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구수는 2,417,819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구의 97.1%에 이르며, 이 가운데 남자는 96.8%인 1,400,637명, 여자는 98.0%인 1,218,24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10.3%), 청각장애인(10.2%), 뇌병변장애인(9.9%) 순이다.

〈표Ⅲ-4〉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장 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구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비율
지체	1,281,497	741,089	740,408	51.4	1,277,567	739,515	738,834	52.8
시각	252,874	150,883	101,991	10.2	250,084	149,255	100,833	10.3
청각	250,334	136,850	113,484	10.0	246,168	134,573	111,595	10.2
언어	18,813	13,483	5,330	0.8	17,006	12,282	4,724	0.7
지적	189,752	114,419	75,333	7.6	154,876	92,179	62,970	6.4
뇌병변	250,862	143,637	107,225	10.1	238,859	136,769	102,090	9.9
자폐	21,103	17,964	3,139	0.8	9,511	8,223	1,288	0.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 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구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비율
정신	98,643	51,309	47,334	4.0	98,599	51,288	47,311	4.1
신장	74,468	43,132	31,336	3.0	74,260	43,004	31,256	3.1
심장	5,833	3,646	2,187	0.2	5,428	3,406	2,022	0.2
호흡기	12,033	8,990	3,043	0.5	11,988	89,60	3,028	0.5
간	10,324	7,445	2,879	0.4	9,913	7,267	2,646	0.4
안면	2,685	1,555	1,130	0.1	2,615	1,517	1,098	0.1
장루·요루	14,116	8,683	5,433	0.6	14,049	8,649	5,400	0.6
뇌전증	7,069	3,858	3,211	0.3	6,896	3,750	3,146	0.3
계	2,490,406	1,446,943	1,243,463	100	2,417,819	1,400,637	1,218,241	100
전 연령 등록 장애인 대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					97.1	96.8	98.0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라. 성인 장애인의 교육 정도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따르면, 성인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그리고 무학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14,4%, 중학교 14.5%, 고등학교 51.7%, 대학 이상 19.4%이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이 49.0% 그리고 전체 국민이 71.1%로 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22.1%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무학 비율은 청각장애(19.4%), 뇌병변장애(12.3%), 뇌전증장애(12.0%), 지체장애(11.7%) 등이 비교적 높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 비율은 안면장애(34.7%), 정신장애(28.6%), 신장장애(24.3%), 간장애(20.0%)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5〉 장애인과 전 국민 교육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장애인 (18세 이상)	11.6	28.8	16.2	28.1	15.3
전 국민 (장애인 포함)		14.4	14.5	51.7	19.4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76쪽 발췌.

마.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 참여 경험이 97.4%가 넘어 평생교육의 기회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문화예술교육 2.6%, 직업능력향상교육에 1.4%, 인문교양교육 0.8%, 성인기초 및 문자 해득교육 0.4%, 시민참여교육 0.3% 등의 순으로 경험을 갖고 있다.

〈표Ⅲ-6〉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정도

(단위 : %)

참여 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있음	0.3	0.4	1.4	0.8	2.6	0.3
없음	99.7	99.6	98.6	99.2	97.4	99.7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88쪽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특성

가.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크게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무려 35~41개에 달하는 평생교육기관 유형이 존재한다. 평생교육기관을 유형별로 특성을 제시해 보면 〈표Ⅲ-7〉과 같다.

〈표Ⅲ-7〉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특성

구분	유형	특성
「평생교육법」	지자체의 운영 형태 (2)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교육과정 외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학교부설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
	사내대학형태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백화점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신문, 잡지 등을 발간하는 기관 또는 통신, 방송 등을 행하는 기관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유형	특성
「학원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기타법령	공무원연수기관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노인관련시설 (2)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회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도서관	도서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장애인단체 등)
	성폭력상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여성 관련 시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유형	특성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4)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민자치센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지정직업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
	청소년관련시설 (2)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9~13쪽 재편집.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한편,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은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이 포함된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직접 해당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이 가능하므로 기관 수나 학습자 수에 비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보다 규모가 작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 중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유·초·중등학교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학습관이 포함된다. 또한, 원격형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앞서 〈표Ⅲ-7〉에 제시된 여러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이 둘의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과 준형식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여 〈표Ⅲ-8〉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Ⅲ-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별 교육기관과 특성

구분	형태	형태별 교육기관 및 특성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부설형	• 유·초·중등 및 대학부설 : 초·중등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 사업장부설 :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부대시설로 설립·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 시민사회단체부설 : 법인으로 행정관청에 등록하여 회원이 300인 이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 언론기관부설 :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독립형	• 원격형태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 • 지식·인력개발형태 :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HRD)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형태	형태별 교육기관 및 특성
	전담형	• 평생학습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존의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복합형	• 학원 :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초·중등교육 형태	•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3년간의 초등교육기관 • 고등공민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1~3년간의 사회직업 교육기관 • 고등기술학교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에 대한 1~3년간의 전문기술 교육기관 • 각종학교 :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을 달리하는 교육기관 • 산업체부설고등학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제 특별학급 • 방송통신중학교 : 방송통신을 통하여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을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2호 및 제98조 제1항 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학교
	고등교육 형태	• 방송통신대학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산업대학 :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기술대학(대학, 전문대학) :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 각종학교(대학, 전문대학) : 대학수준으로 신학교·예술학교·승가학교 등의 교육기관 • 원격/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학) :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하고 일정한 학점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형태	형태별 교육기관 및 특성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학교 • 사내대학(대학, 전문대학)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 • 기능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전공대학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하는 학교 •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출처 : 교육부·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iv쪽 발췌.

3.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가.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이상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약 4배 이상 기관수가 더 많고 학습자 수 역시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014년 4,342개로 2012년에 비해 13.2% 증가하였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도 201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증가수준은 미미하였다.

〈표Ⅲ-9〉에 따르면, 이 기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수는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학습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도 수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학습자수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9〉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연도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2014	4,342	205,546	12,919,836	72,477	19,586
	2013	3,965	180,843	18,260,301	72,954	18,376
	2012	3,768	178,971	17,618,495	71,676	20,486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2014	1,034	초·중·고 및 대학의 전공별 교육과정	637,130	6,597	2,616
	2013	1,027		677,620	6,545	2,634
	2012	1,006		710,169	6,614	2,598

※ 출처 : 교육부·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2~4쪽 발췌.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Ⅲ-10〉에서와 같이 2014년 현재 언론기관부설기관(2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격형태의 교육기관(20.3%), 지식·인력개발형태(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기관부설기관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에 비해 52.4% 상승하였다. 반면, 평생학습관이나 유·초·중등학교 부설은 감소하였다.

기관 수와는 달리 프로그램 수에서는 사업장부설기관이 65,449개(31.8%)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격형태(28.7%), 대학부설(13.7%)의 순이었다.

〈표Ⅲ-10〉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2014년	2013년	2012년	2014년	2013년	2012년
유초중등학교부설	9	8	10	44	32	59
대학(원)부설	402	405	403	28,098	26,952	26,920
원격형태	883	876	887	58,951	45,247	48,162
사업장부설	392	375	357	65,449	63,348	61,833
시민사회단체부설	556	524	495	7,434	5,350	5,497
언론기관부설	1,038	703	494	10,914	6,485	4,520
지식·인력개발형태	669	687	727	12,126	12,574	13,108
평생학습관	393	387	395	22,530	20,855	18,872
총계	4,342	3,965	3,768	205,546	180,843	178,971

※ 출처 : 교육부·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4쪽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한편, 2014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수는 2012년보다 약 21.9% 증가하였는데, 이를 프로그램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63,444개(40.2%)로 가장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32.7%), 인문교양(13.4%)의 순이었다. 2012년, 2013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은 계속 증가한 반면,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Ⅲ-11〉 참조).

〈표Ⅲ-1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프로그램 수		
	2014년	2013년	2012년
학력보완교육	20,863	21,051	26,106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611	604	458
직업능력향상교육	63,444	49,053	42,648
인문교양교육	21,171	18,967	18,908
문화예술교육	51,577	44,073	41,214
시민참여교육	74	96	109
총계	157,740	133,844	129,443

※ 출처 : 교육부·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26~278쪽 발췌.

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1)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총 41개 유형의 5,376개 기관에서 205,546개 프로그램(초·중·고 및 대학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제외)을 13,556,96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79,074명의 교·강사와 101,276명의 사무직원들의 지원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 수만을 놓고 보면, 만 18세 이상 국민 43,151,984명(2016년 10월 현재)의 31.4%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과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만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주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성인 장애인 야학 49개를 포함하여 총 252개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889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교육부, 2016). 따라서 전체 평생교육기관 5,358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252개로 4.7%에 머물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는 0.4%에 지나지 않는다.

〈표Ⅲ-1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기관 유형	기관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프로그램 수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성인 장애인 야학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9	1,690	534	30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185	파악 곤란	파악 곤란	525
	특수학교	14	파악 곤란	파악 곤란	30
	특수교육지원센터	4	파악 곤란	파악 곤란	25
계		252	1,690	534	889

* 프로그램은 문화강좌, 인문교양, 직업교육 등 개설된 프로그램 수

**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성인 야학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평생교육시설(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 출처 : 1. 교육부(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12~113쪽 발췌.
2.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2016).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조사 지침**. 26쪽 발췌.

〈표Ⅲ-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 장애인 학습자 수나 교·강사 수는 성인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만 파악되고 있어 사실상 그 현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확인 부재로 〈표Ⅲ-12〉의 평생교육기관에는 일부 장애인복지관도 평생교육기관 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침상의 정확한 수치라 보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복지관 등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통계 자료에 들어 있지 않은 장애인 복지관 등 「평생교육법」과 「학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 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와 3호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2014)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centerlist) 자료에 의하면,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219개소, 주간보호시설 558개소, 체육시설 29개소, 수화통역센터 199개소, 점자도서관 23개소, 보호작업장 447개소, 근로사업장 64개소, 사회복지관 460개소 등 총 1,999개소가 있다(〈표Ⅲ-13〉 참조).

〈표Ⅲ-13〉 기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총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체육시설	수화통역 센터	점자 도서관	보호 작업장	근로 사업장		
계	219	558	29	199	23	447	64	460	1,999
	1,028					601			

※ 출처 : 1.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centerlist).

그러나 〈표Ⅲ-13〉에 제시된 1,999개소의 기관이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들 기관에 대한 정확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없다. 다만, 2011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하여(교육과학기술부, 2011) 부분적인 현황을 밝힌 정도였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1,297개소의 35.9%인 466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92개소의 30.6%인 120개소의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러나 사회복지관의 운영 현황이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추정해 보면 〈표Ⅲ-14〉와 같다. 〈표Ⅲ-14〉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805개소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Ⅲ-1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기관 유형	총 기관 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성인 장애인 야학	49	49	
	평생교육기관	4,342	185	
	특수학교	170	14	
	특수교육지원센터	199	4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028	369	총 기관의 35.9% 추정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01	184	총 기관의 30.6% 추정 수
	사회복지관	460	-	추정 불가
계		6,849	805	

※ 출처 : 1.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162쪽.
3. 교육부(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다.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한편,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에 따르면, 2013년에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거나 운영한 기관 232개소 중 〈표Ⅲ-15〉와 같이 조사에 응한 16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별 운영 현황 및 요구 등을 표집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참여 직원, 프로그램, 학습자 및 교·강사 현황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15〉 조사기관 현황

(단위 : 기관, %)

구분	전체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특수학교	대학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기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기타	
전체	169 (100.0)	4 (2.4)	6 (3.6)	6 (3.6)	17 (10.1)	40 (23.6)	6 (3.6)	14 (6.2)	35 (20.6)	6. (3.6)	2 (1.2)	16 (9.4)	17 (10.1)
국가	5 (100.0)	1 (20.0)	3 (6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지자체 (시·도)	9 (100.0)	0 (0.0)	0 (0.0)	0 (0.0)	0 (0.0)	1 (11.1)	1 (11.1)	0 (0.0)	5 (55.6)	1 (11.1)	1 (11.1)	0 (0.0)	0 (0.0)
법인 단체	77 (100.0)	1 (1.3)	3 (3.9)	0 (0.0)	9 (11.7)	0 (0.0)	0 (0.0)	9 (11.7)	22 (28.6)	3 (3.8)	1 (1.3)	14 (18.2)	15 (19.5)
시·도 교육청	61 (100.0)	2 (3.3)	0 (0.0)	6 (9.8)	4 (6.6)	39 (63.9)	4 (6.6)	2 (3.3)	2 (3.3)	0 (0.0)	0 (0.0)	1 (1.6)	1 (1.6)
지자체	1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9.1)	3 (27.3)	6 (54.5)	1 (9.1)	0 (0.0)	0 (0.0)	0 (0.0)
개인	4 (100.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기타	2 (10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362.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원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원의 경력을 보면, 2년 미만이 전체의 29.1%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경력자는 전체의 68.2%로 단기경력자가 많은 상태이다. 설립형태별로는 근무자가 가장 많은 평생학습관(시·도교육청 관할)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2년 미만이 33.7%,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90.6%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생교육사가 12.2%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가 32.6%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75.9%로 가장 많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원이 교·강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24.1%로 겸임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75.9%이다. 설립형태별로는 근무자가 가장 많은 평생학습관은 모두 겸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관은 겸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77.4%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학력보완', '성인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전체의 51.2%로 가장 높고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14.5%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69.95, '인문교양' 프로그램 13.8% 등의 순으로, 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59.1%, '인문교양' 프로그램 21.6% 등의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실습·체험'이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의법'이 3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생학습관은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실습·체험'과 '강의법'이 주된 교수법이었지만, '시청각매체'의 사용 비율이 12.9%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은 '강의법', '토의법', '실습·체험', '현장견학', '시청각 매체' 등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간을 보면, '6개월~1년 미만'이 35.5%로 가장 높으며, '3~6개월 미만' 프로그램이 31.5%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3~6개월 미만' 48.3%, '6개월~1년 미만' 33.6% 순이며, 장애인복지관은 '6개월~1년 미만' 39.8%, '3~6개월 미만' 3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시수는 30시간 미만이 32.3%, '30~60시간 미만'이 29.0%이며, '24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은 12.9%로 많지 않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30시간 미만'이 36.1%, '60~120시간 미만'이 32.8% 순이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30~60시간 미만' 29.5%, '30시간 미만' 23.9% 순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를 보면, '연 1회' 프로그램이 80.1%로 가장 높고, '연 2회'가 10.6%, '연 3회 이상' 프로그램은 9.3%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 3회 미만의 단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연 1회' 프로그램 78.4%, '연 2회' 16.4% 순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연 1회' 프로그램 85.2%, '연 2회' 프로그램 9.1%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71.2%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4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3.0%이다.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원이 100%, 대학은 교육부 지원(2011년~2014년)이 62.4%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200~500만원 미만'의 지원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 프로그램이 20.9%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은 '2,000만원 이상'의 지원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2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은 '2,000만원 이상'의 지원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27.3%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200~500만원 미만'의 지원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56.9%인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가 전체의 85.1%로 가장 높고 유료 프로그램 중 '5만원 미만' 프로그램이 11.2%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무료 프로그램이 전체의 97.4%이며, 장애인복지관은 무료 프로그램이 전체의 68.2%, 5만원 미만 프로그램이 2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및 교·강사 현황

가) 학습자 현황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성인 장애인)의 현황을 장애유형별, 교육정도(학력)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장애인은 6,117명으로, 이들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은 2,925명으로 47.8%이며, 지체장애인은 1,245명(20.5%), 뇌병변 장애인은 529명(8.6%), 시각장애인 228명(3.7%), 청각장애인 202명(23.3%), 기타(언어, 정신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은 540명(8.9%)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35.2%로 가장 높고, 무학이 14.6%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3.4%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5~34세'가 전체의 1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5~54세가 14.6%로 나타나고 있다(〈표Ⅲ-16〉 참조). 설립형태별로는 평생학습관은 '18~24세' 11.8%, '65세 이상'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55세 이상이 42.3%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층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16〉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전체	무응답	~18	18~24	25~34	35~44	45~54	55~64	65~
6,117 (100)	918 (15.0)	47 (0.8)	771 (12.6)	1,199 (19.6)	888 (14.5)	892 (14.6)	657 (10.7)	745 (12.2)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377쪽 발췌.

나) 교·강사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강사 7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력과 자격증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력별로 보면,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강사는 3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 미만'이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7〉 참조). 설립형태별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은 '2년 미만' 33.8%, '2~3년 미만' 32.4% 등의 순이며, 장애인복지관은 '2년 미만' 30.6%, '2~3년 미만'이 26.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7〉 경력별 교·강사 현황

(단위 : 명, %)

전체	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728 (100)	232 (31.9)	158 (21.8)	174 (23.9)	95 (13.0)	52 (7.1)	6 (0.8)	11 (1.5)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378쪽 발췌.

교·강사의 자격증 현황을 보면,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88.5%이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8.3%로 가장 높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설립형태별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13.5%, '사회복지사' 자격증 11.6%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3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7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Ⅲ-18〉 자격증별 교·강사 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자격증 없음	평생 교육사	특수교육 교사	사회 복지사	초·중등 교사	기타
전체	728 (100.0)	84 (11.5)	14 (1.9)	44 (6.0)	133 (18.3)	55 (7.6)	398 (54.7)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07 (100.0)	54 (26.1)	2 (1.0)	28 (13.5)	24 (11.6)	9 (4.3)	24 (43.5)
장애인 복지관	98 (100.0)	2 (2.0)	4 (4.1)	1 (1.0)	31 (31.6)	4 (4.1)	56 (57.2)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5 (100.0)	0 (0.0)	1 (4.0)	0 (0.0)	18 (72.0)	0 (0.0)	6 (24.0)
기타	398 (100.0)	28 (7.0)	7 (1.8)	15 (3.8)	60 (15.0)	42 (10.6)	312 (78.4)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379쪽 발췌.

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의 한계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숭희, 양은아, 이재열, 2011). 제1유형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담 평생교육기능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2유형은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복합평생교육기능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방계학교, 기능대학이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동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직업훈련시설,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장애여성능력개발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제3유형은 「학원법」에 다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실시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개방된 다수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기술계 평생교육직업학원이 이에 속한다. 제4유형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서 기업체 연수원, 금융연수원, 공무원연수원, 교육연수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제5유형으로는 평생교육 프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제1유형~제4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말하며 종교단체 부설 등이 이에 속한다(김두영, 2016).

이 가운데 물리적인 접근성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 근무자들의 보다 긍정적인 수용 태도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주로 제2유형의 기관(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이들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유형인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김두영, 2016),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도 제2유형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실태는 부분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장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

1. 미국
2. 호주
3.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미국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미국의 평생교육은 1976년 「평생학습법」(The Lifelong Learning Act, 1976)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생학습법」은 학습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틀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노인교육, 부모교육, 여성교육, 퇴직자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정경태, 2012). 이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과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또한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김주영, 2013). 특히, 「재활법」은 반차별 시민법으로써 누구나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접근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academic adjustment)'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임은주, 최승숙, 2013). 즉,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에게 단순히 교육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맞추어진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늘어가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8년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과 연방 보조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 HEOA)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및 교육의 성과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조정, 자료의 개발, 정부보조금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관련자들을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Getzel, E & Wehman, 2010).

또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은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법규이다. 이 법은 1990년 처음 개정되어 생활-중심의 전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청년들을 위한 전환 서비스 요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1997년 법 개정에 따라 전환 교육이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최근 개정은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2월 장애인 교육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2004년 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변화는 전환서비스의 개선, 일반교육으로의 접근, 최초 평가와 재평가에서의 향상, 아동과 부모의 권리보호, 특수교육 교사의 '높은 질'에 대한 정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및 IEP팀 회의, 적절한 정부기금 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공, 주 및 지역 전체와 관련된 평가 등이다. 〈표IV-1〉은 1997년의 장애인 교육법과 2004년 개정내용을 비교한 것이다(정인숙, 2007).

〈표Ⅳ-1〉 1997년 장애인교육법의 개정 내용

법 조항	삽입 및 삭제, 개정 부분
Part A : 일반	
1) **Section 601** : 목적 (1) (A)(6) 특수교육과 장애아동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성인교육**(for further education)**, 고용, 그리고 독립된 삶을 준비하도록 고안된 관련 서비스를 강조하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성인교육(for further education)이 삽입됨
2) **Section 602** : 정의 전환서비스 : "전환 서비스"용어는 장애를 가진 아동**(child)**을 위해 협력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A) 일련의 활동들은 학교에서의 중등 교육, 직업교육, 경쟁 고용(지원 고용을 포함함)의 지속과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혹은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는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의 아동의 이동을 촉진하도록 장애 아동의 학문적 향상과 기능적 성취에 초점을 둔 결과**(results)** 지향적인 절차 내에서 계획되어진다. (B) 일련의 활동들은 아동의 강점, 아동의 선호와 흥미를 고려한 개별아동의 요구에 기초를 둔다.	• 학생(student) 용어가 아동(child)으로 개정됨 • 직업훈련(training)이 직업교육(education)으로 개정됨. 아동의 이동을 촉진하도록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문적 향상과 기능적 성취에 초점을 둔 결과(results)부분이 삽입됨 • outcome이 results로 개정됨(두 용어는 대부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outcome은 전체적인 면에서의 결과로 본다면 results는 목표했던 그 부분의 결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봄 • 아동의 강점이 삽입됨
Part B :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 지원	
Section 614 :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EP)** **(1) IEP**의 정의 **(Ⅷ)** 아동이 **16**세 이전에 첫 번째 **IEP**가 시작되어야 하고, 시작된 이후에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aa)** 훈련, 교육, 고용, 적절한 장소에서의 독립생활 기술과 관련된 적절한 나이의 전환 평가에 기초를 둔 적절한 측정이 가능한 중등교육 목표들 **(bb)** 아동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학습과정 포함) **(cc)** 주 법에 따라 아동이 성인 연령에 도달하기 전 **1년** 내**(not later than)**에 시작하고, 아동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통보 받아야하고, 경우가 있다면 651장(section) 하에서 이미 성인 연령에 도	• 연령이 16세로 규정되고, 평가부분이 삽입됨 • 최소 1년 이상 전(at least one year before)이 1년 내(not later than)로 개정됨 * 주의 법에 따라 성인의 연령이 다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법 조항	삽입 및 삭제, 개정 부분
달한 아동들에게도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IEP의 연간목표 (ⅱ) 학문적, 기능적 목표가 포함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는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야 한다. (aa) 아동이 일반교육과정에서 향상을 만들고,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장애로 인해 초래된 아동의 요구에 대처한다.	• 학문적, 기능적 목표의 삽입과 만들고(make)가 삽입됨
(bb) 장애로부터 초래된 각 아동의 다른 교육적 요구에 대처하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 (bb)의 모든 조항이 삽입됨
(ⅲ) (ⅱ)의 하위조항**(subclause)**에 기술된 연간목표에 따른 아동의 향상에 관한 측정방법의 기술과 그 아동의 연간목표에 따른 향상에 관한 정기 보고의 시기(보고 카드의 배포와 동시에 **1**년에 **4**회 혹은 기타 정기보고처럼)가 계획되어야 한다.	• 모든 조항이 삽입됨
3) IEP의 개발 (A) 일반 : 각 아동의 IEP 개발 시, IEP 팀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ⅰ) 아동의 강점 (ⅱ) 아동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관심; (ⅲ) 최초 평가(evaluation)의 결과와 아동의 가장 최근 평가(evaluation)	
(ⅳ) 아동의 학문적, 발달적, 기능적 요구	• 아동의 학문적, 발달적, 기능적 요구가 삽입됨

※ 참고자료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CEC) : http://www.cec.spde.org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Special Education : http://www.nasdse.org
Wrightslaw IDEA http://www.wrightslaw.com/law/idea/index.htm

▸ 진한 글씨는 개정된 부분임. Section(장), Paragraph(절), Clause(조항)으로 표기함

※ 출처 : 정인숙(2012).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41(4).

Part A에서의 변화의 의미는 성인교육과 결과지향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즉,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의 교육 서비스(장애아동의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교육, 지원고용, 경쟁 고용, 성인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생활 혹은 지역사회 참여 등)가 학교에서 학교 이후 활동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능적 성취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아동의 선호, 흥미와 더불어 아동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자 하였다.

Part B의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14세부터 요구되었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의 전환 서비스에 대한 진술은 16세 이전으로 개정되었다(CEC, 2005).

또한 중등교육의 목표들을 장애아동의 훈련, 교육, 고용, 적절한 장소에서의 독립생활 기술과 관련된 적절한 나이의 전환 평가에 기초를 두고, 적절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학습과정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2004)은 장애아동의 연간목표 진술에 있어서 일반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일반교육과정에서의 향상에 관한 측정방법을 기술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화프로그램 진행과정 중 주와 지역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 시에는 학문적 성취와 기능적 수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장애인 교육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을 법제화하여 이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법」(NCLB : No Child Left Behind Act PL 107-110:2001)은 미국의 모든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법으로 2001년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모든 아동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발전하도록 학교가 적절한 연간 진보(Adequate Yearly Progress : AYP)에 대한 책임을 갖고 매년 성취 기준에 대한 아동의 향상 정도를 측정한 후, 모든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비롯한 영어 학습자,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미국교육부는 이들에게는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숙달' 점수를 도입한 대안평가를 인정하고 대신 '질 높은' 교사의 지도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학령기의 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고, 학령기의 교육방식은 졸업 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령기의 아동들은 곧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가게 된다.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학령기에 형성하게 되는 장애 인식과 장애 이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법」(NCLB)에서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평가는 곧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일반교육과정에서의 진전을 보증하기 위해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구안하여 모든 아동이 교육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Turnbull et al., 2004). 이러한 시도는 곧 장애인을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장면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평가를 통하여 교육에서 한 아동도 배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교육이 특수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전체의 모든 교사, 나아가서 지역, 주, 국가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토대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평등함을 일깨워주고, 차별 개념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사회 속에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동일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 교육장면에서의 모든 장애인의 포함은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근본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과목을 따로 개설하기 보다는 일반인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정동영, 1998). 즉, 장애인을 일반인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장애학생부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 전공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학교에도 특수교육 전공자들을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교과의 내용이나 장비를 장애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대학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여수일, 2005).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미국의 장애인 교육 및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1998년 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장의 504조와 508조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은숙·이정은, 2006). 또한 1990년 개정된 ADA(American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의 제2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장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소유한 어느 곳이든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은숙·이정은, 2006). 이러한 법적 조치에 의해 인지장애가 없는 감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이동하고 배우며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므로,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이나 체육관,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따로 사용되지 않고 평생교육 안에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재활부에서 운영하는 리저널센타를 비롯한 전환교육 지원센터는 주로 인지장애가 있거나, 중복장애인을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체계로는 연방정부의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OSERS)이 있다. OSERS는 특수교육부(Th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와 재활서비스 행정부(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재활연구를 위한 국가기구(National Institute of Rehabilitation Research)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내에 성인과 직업교육국(Office of Adult and Vocational Education)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 서비스 내에 아동과 가족을 위한 행정부가 있고, 발달장애 행정부, 정신지체 대통령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독립국에는 장애를 위한 국가 협회가 있다(Brolin & Loyd, 2004). OSERS(수교육·재활서비스국)는 IDEA 및 NCLB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자유의 시작(NFI : New Freedom Initiative)을 근거로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의 교육과 동시에 재활을 돕고 있다(http://www.ed.gov/about/offices).

NFI(새로운 자유의 시작)의 주요 골자는 보조공학과 보편적(Universally)으로 디자인된 공학을 통한 접근 향상,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장, 장애인의 집 소유 증진, 일터에서의 장애인 통합, 교통수단 선택권 확장,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완전한 접근 촉진 등으로 이를 위해 적절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OSERS는 특수교육, 직업 재활, 연구의 3개 주요 영역에 대해 부모와 개개인, 학교 지역과 각 주에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영아와 유아,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학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하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학과 연구를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인하고, 조기 발견과 중재, 통합된 고용 환경과 독립생활의 촉진을 위해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개인을 보증할 수 있는 내적, 외적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직업,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이 고용이나 삶에서 비장애인에게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특히,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질의 연구결과를 배포하고 장애인 개개인과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과학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탐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OSERS의 행정조직에는 주의 특수교육국과 주의 직업 재활, One-stop Center가 있다. 미국의 51개주의 일례로 캔자스 주 교육국(http://www.ksde.org)은 약 100개 정도의 카운티를 관리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FY05 장애아동을 위한 캔자스 특수교육과 2005 캔자스 법규, 캔자스 법규-특수교육법(1999), 2003 의회법안 82, 개정 K.S.A 72-67, 115, 캔자스 행정법규(KAR) 등의 주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캔자스 교육국 내에는 아동지원서비스팀이 있다. 팀의 주요목표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캔자스의 모든 학교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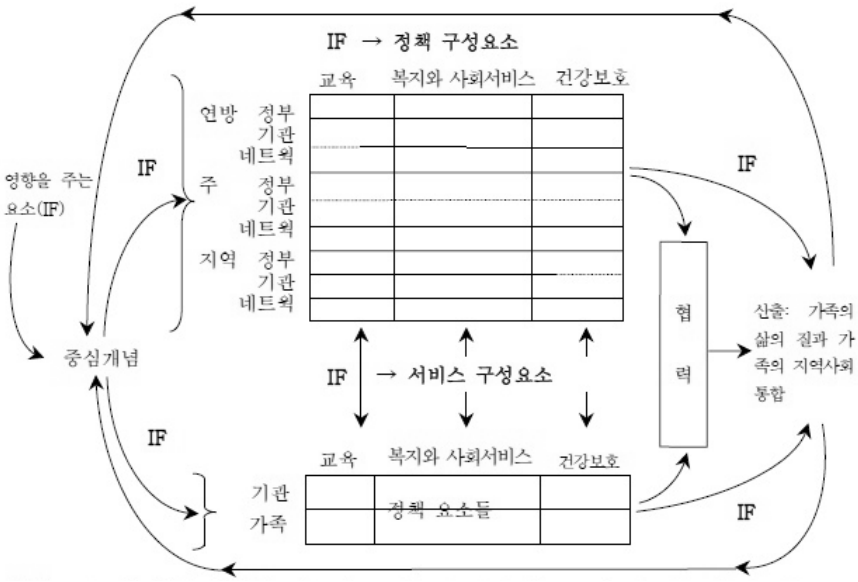
주요 지원 내용은 주의 수행 계획, 특수교육 자문 협회, 평가, 법률, 연구 및 데이터, 자료, 특별 프로젝트, 운영정보체제, 고용정보 등에 관한 것이다. 지역학교구의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을 위한 학습과 그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이행, 평가에서의 역할을 격려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의 특수교육 프로젝트(K-STARS)를 이행하고 있다. K-STARS의 이행 중점은 문자와 수, 보편적으로(Universally) 계획된 지도, 중재에 대한 반응, 유아와 소수 인구를 위한 지도 자료와 전문적 개발,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 특수교육 교사와 관련서비스 제공자의 모집과 보유, 동료-동료 보조 네트워크, 데이터 운영, 아동정보체제, 모니터 체제의 평가와 진행에 관한 것이다. 또한 캔자스의 통합네트워크(INKS, 현장에 기초한 보조공학과 전문적 개발), 통합된 데이터 운영과 우선 지원체제(KITS), 시각장애인을 위한 캔자스 교수자료(KIRC), 캔자스 교수 지원 네트워크(KISN), 결과를 위한 교사지원 프로그램(STOP), 집과 학교, 지역사회 체제의 정보와 자료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사와 장애청년의 지원(STAY)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카운티 수준에서의 일례로 존슨카운티(Johonson County)는 6개의 학교 지역을 담당하고 캔자스 주 내에 26개의 발달장애 조직(CDDO)을 두고 있다(http://www.jcds.org). 지역 수준에서의 일례로 블루 벨리 학교 지역(Blue Valley Unified Schol District)은 91개의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학교와 직업과의 연계를 위한 직업 개발 기회 프로그램(CDOP :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Program)과 성인 협력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지원(ACCESS : Adult Cooperative Community Education Services Support) 등을 가지고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Blue_Valley_School_District).

이러한 국가의 지원 체제와 가족, 기관들과의 협력체제는 Turnbull과 Stowe(2001)가 발표한 [그림IV-1]의 중심개념 분류 연구를 위한 분석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ilverstein이 1990년의 ADA(American Disabilities Act)에 담았던 중심개념 즉, 기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등, 완전 참여, 독립생활, 경제적 자급자족의 4가지 분류를 새로운 9개의 분류로 확장한 후 3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즉,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심개념을 헌법상의 원리, 도덕상의 원리, 행정상의 원리로 보고, 헌법상의 원리로는 생존, 자유, 평등, 도덕상의 원리로는 존엄, 초석으로서의 가족, 지역사회, 행정상의 원리로는 전문성과 역량 제고 체제, 개별화, 책임으로 보았다. 이 중심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IF : Influencing Factors)은 IDEA(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2004), NCLB(No Child Left Behind Act PL 107-110:2001),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등의 법적 근거이다.



[그림Ⅳ-1] 중심개념 분류 연구를 위한 분석체계

※ 출처 : H. Rutherford Tumbul Ⅲ and Marrhew, J. Srows(2001). A Taxonomy for Organizing the Core Concepts According to Their Underlying Principles.

[그림Ⅳ-1]은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서비스 체계(조직, 행정구조, 협력을 통한 서비스의 전달)에 중심개념이 어떻게 여과되어 흐르는지를 보여준다. 각 단계의 서비스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심개념들은 각 화살표대로 움직인다. 결국 가족의 삶의 질은 다시 중심 개념으로 피드백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중심개념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중심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는 모든 정책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부와 기관 및 가족이 모두 협력할 때 비로소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기관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NCSET : National Center on Secondary Education and Transition)와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을 위한 국가정보센터(NICHCY :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그리고 지역사회 발달장애 기관(Commun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ganization, 2003)이다.

NCSET는 미국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 내의 특수교육부(OSEP :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의 기금에 의해서 장애청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 세워진 기관이다(http://www.ncset.org). NCSET는 다른 국가나 지역, 주의 연구, 기술 보조, 중등교육과 전환에 초점을 둔 센터들의 다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정보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NCSET(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는 중등교육, 중등이후, 고용, 서비스에 관해 주와 지역 프로그램을 돕고 지역교육국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노동력 개발국과 창업, 장애청년과 가족, 기술적 원조와 보급에 관한 국가적 네트워크, 연방국과 청년에 관한 국가조직과 개개인을 보조한다. NCSET는 미네소타 대학의 지역사회 통합 기구에 본부가 있고 지역사회통합 기구, 중등교육지원 연구를 위한 국가 센터, 전환센터, 교육 리더쉽 기관, PAECR센터, 특수교육 주 담당자의 국가 협회 등과 연계하고 있다. NCSET는 또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NCSET의 주요 프로젝트는 교수와 학습, 중등이후 교육과 고용, 전환계획과 지역사회, 젊음의 개발과 가족 참여 등이다.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검사자료와 절차를 변화시키는 조정, 읽기와 문자, 수학능력, 컴퓨터 능력, 기타 공학과 관련된 능력, 경제적 문자·비판적인 문자·의료 문자·미디어 문자·새로운 문자 등을 포함한 교실 밖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 학문 능력, 정보 수집 등에 관한 것 등이다.

중등이후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고용과 성공에 관한 다양한 단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진로지도와 탐색, 청년들의 미래의 진로 준비, 일을 위한 기회 창출에 관한 학교와 고용주들의 협력 방법에 관한 고용주의 계약, 현재 중등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방법이나 태도들이 중등과정의 장애인 개개인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탐색하는 중등교육지원과 조정, 장애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년의 교육·고용·레크리에이션·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전자와 정보 훈련과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기술에 관한 것들이다.

전환계획과 지역사회 자원 분야에서는 장애청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개개인의 흥미·선호도·요구의 초점과 가족의 가치·선호도·문화에 기초를 둔 전환, 장애청년과 가족 및 전환팀 간에 전문적인 연계를 만들고 가족들에게 동일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에 관한 서비스의 협력, 학교지역 간의 협력, 카운티, 조직들에서 기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체계수준 등에 관한 연구 등이다.

따라서 NCSET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고용과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적으로 주와 지역의 조직과 개개인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중등교육과 전환뿐이 아닌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확장하여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족지원과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국가의 각 부처에서의 지원내용을 통합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흩어져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개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을 위한 국가정보센터(NICHCY)는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을 위한 국가 센터로 영아 및 유아를 포함한 장애아동과 장애청년, 특수교육을 확립한 IDEA, 장애아동과 관련된 NCLB, 효과적인 교육 실제를 위한 연구에 기초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기관이다(http://www.nichcy.org). NICHCY는 특수교육과 고용, 전환 등에 관한 100가지 이상의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주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특수교육·재활국((OSERS), 초등·중등교육국(OESE)과 교육과 학국(IES)의 결과물인 도구세트와 프로그램,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규모의 평가, 대안평가, 향상에 관한 모니터링, 중재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평가, 문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에 관한 지도의 실제, 행동과 적응에 관한 연구물들을 제공한다.

NICHCY의 A-Z 사이트는 가장 흥미있고 관심있는 각각의 일련의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자료, 안내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전환부분에서도 부모와 아동 전문가, 장애인 사이트를 따로 두고 방대한 국내의 모든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NCWD(National Collaborative on Workforce and Disability)에서도 장애, 교육, 고용, 직업개발에 관한 전문가를 두고 장애청년과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ncwd-youth.info). IDEA의 개정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과 지향적인 과정을 위해서 미국의 교육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장애청년을 위한 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역의 계획은 연구에 기반한 중재와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모든 교사는 활동을 포함하고 특수교육자가 중심이 아닌 장애를 가진 아동의 행동에 기초하여 교수를 결정하고, 각 아동의 프로그램의 중심에 부모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각 아동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주의깊게 협력해야 한다(Donald & Jean, 2006). 이러한 실제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 및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의 지원이 요구된다.

1995년 캔자스 주에서는 발달장애 개정 법령이 통과 되었고, 이 때 SRS(Scoliosis Research Society)의 캔자스 과와 지역 카운티 정부는 CDDO(지역사회 발달장애 기관)를 고안하였고, CDDO의 75%($30,922.25)의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위한 연방 행정부에 의해 지급되고, 25%($10,330.75)는 로슨 필립 협회(Lawson Phillips Associates)에서 기부한다(http://www.srskansas.org/hcp). CDDO는 존슨 카운티 발달장애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달장애 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발달장애 개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의 모든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http://www.jcds.org). CDDO는 장애인 개개인의 기금 지원에 관한 적절성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와 지원내용은 첫째, 사례관리로 주거의 선택과 고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전문가인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고용과 일상 서비스로 작업 서비스, 작업단, 지역사회에서의 직업 혹은 일상생활과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거주 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황에 따라 제한된 시간 지원에서부터 24시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가족지원은 가족을 가진 186 특수교육학연구(제41권 제4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택 간호, 일시적 간호, 야간 지원과 소규모 연금 지원(가족수입 분류에 의함)이 포함된다. 다섯째, 밴 리프트(Van Lifts), 장비와 집 변경, 개인의 밴 혹은 특정지구의 거주자들(램프 등)을 위한 수리 등을 지원한다.

CDDO는 캔자스 주 내에 28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존슨 카운티 내의 발달장애 아동들과 졸업 후 장애청년들은 CDDO에서 지원을 받는다. 일예로 캔자스 내 블루벨리 학교(Bule Valley Shool) 내에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 전환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수시로 CDDO의 직원이 방문하여 함께 아동 개개인의 진로와 기금지원에 대해 상담을 할 뿐 아니라, 학교 내에는 직업개발원과, 직업직무원이 보조교사와 함께 직업교육과 생활교육 등에 참여하고, 학교일과가 끝난 후 같이 현장실습을 한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주민을 위한 회관이나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age) 및 4년제 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통합된 환경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rince & Jenkins,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 기반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컬리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미국 지역사회대학에서의 발달장애 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대부분 주 정부 및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주변의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즉 이민자 및 편부모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의 성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안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표IV-2〉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내에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전공이나 학과를 개설하는 경우(예 : Shasta College, Portland Community College 등)와 지역사회 내의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환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Taft college,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등) 경우가 있다.

대학 내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전공이나 학과를 개설한 경우는 주로 특정 직무나 직업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으며, 비장애인 대학생과의 통합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특수교육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연계를 통한 전환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대학생활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학 내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비장애 대학생과의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하기보다는 실제 직업 환경에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전공이나 학과를 개설한 경우 발달장애인의 선발에 있어 직업능력과 생활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환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 이러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Ⅳ-2〉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Shasta Colleg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Special Populations collaborative	1. 대상 : 18세 이상의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 2. 교육내용 : 진로개발, 컴퓨터 활용, 읽기와 수학, 인간의식, 생활기술 3. 교육연한 2년 4. 학위과정이 아닌 수료증 제공 5. 특징 •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특수교사 및 전환교육전문가) • 발달장애 학생이 대학 내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의 특수교육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직접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Taft college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TIL) Program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2. 교육내용 : 식사준비, 금전관리, 구매하기 가사활동, 생활가전 이용하기, 안전, 의사소통, 교통 자조기술, 대인관계 3. 교육연한 : 3년 4. 기숙제, 아파트(학교근처) 5. 학위과정이 아닌 수료증 제공 6. 특징 • 독립생활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음(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6세부터 개별화교육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대학에서 후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만 특별히 일반대학생들과의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음 • 독립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중증장애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졸업 후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Highine Community College	Achieve program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2. 교육내용 : 통신, 계산, 인간 관계, 건강과 안전, 사회적 기술 등 3. 교육연한 : 2년 4. 기숙사 여부 : 원하는 경우 5. 비학위 과정 6. 특징 • 전체 2년 과정으로 전체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개별적인 교육계획에 의하여 한 과정의 성취를 달성할 경우 높은 단계의 과정으로 전이하는 방식으로 교육계획이 짜여져 있어 장애학생의 능력에 맞게 대학생활 및 교육과정을 참여할 수 있음 • 크게 인정서는 고용 인증서(36학점)와 종합전환 인정서(72학점)로 구분하여 제공 • 모든 교육과정의 달성 후 고용 지원
Portland Community College	Pcc Program	1.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 음식에 대한 관심, 배우고 개선하기 위해 결정, 하루 종일 반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함 2. 교육내용 : 식품안전, 직업안전, 팀워크와 사회적 기술, 요리 실습 3. 교육연한 : 약 3년 과정(45 credits) 4, 기숙사 없음 5. 학위과정이 아닌 수료과정(요리 보조 과정) 6. 특징 • 요리라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고용 및 직업생활 전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 10명이내의 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침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CLEAR(College Learning Experiences, Activities and Resources) Program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2. 교육내용 : 독립생활, 대학과정과의 연계, 생활기술, 학습능력, 사회적 기술, 고용지원 등 3. 교육연한 : 2년 4. 기숙사 없음 5. 학위과정 없으며, 학점은행제 형식으로 구성 6. 특징 •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경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평일에는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토요일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사례

미국의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대부분 특수교육 및 관련학과의 주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대학들이 주정부와 지역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즉, 4년제 대학에서 주정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외부의 기타 기금이나 수업료를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국가 및 주정부, 그리고 지역 교육청 중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운영이 아닌 대학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무성, 그리고 관련 학과에서의 전문성을 합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대학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이러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자율성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대학과 달리 발달장애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결국은 발달장애 학생의 평생교육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적인 활동 영역에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 내 시설 및 교육과정의 참여 등 발달장애인의 대학생활 경험 차원에서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 자체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표Ⅳ-3〉 미국의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Louis University	PACE program	1. 대상 : 18세~30세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이며 학령기에 특수교육 대상자(중복 학습장애), 연간 25명 학생 입학 2. 교육연한 : 2년제 3. 비학점, 인증서 수여 4. 프로그램 개요 • PACE 전환교육 프로그램 : 학생들을 성인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대학 경험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Lesley University	Threshold Program	1. 대상 : 학습장애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매년 24명 입학생 2. 교육연한 : 2년제 프로그램 운영(core program)+졸업 후 과정 별도 운영(Transition year+Bridege year) 3. 수료 증명서 발급과 6개 collage credits 중 3개 collage credits 부여 4. 프로그램 개요 • 학교내에 완벽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함양 • 전공과목 이외에 대학 내 교양과목을 이수를 통해 다양한 기술(예체능) 함양 • 핵심 프로그램과 졸업 후 과정을 별도로 두어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선택과정을 개설
UCLA University	Pathway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25세의 발달장애, 매년 15~20명 입학 2. 교육연한 : 2년제 3.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필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학 학점으로는 인정 4. 프로그램 개요 • 학업(컴퓨터, 수학, 생활과학, 예술, 직업과 여가를 위한 읽기), 사회적 기술, 직업(진로탐색과 직업준비), 자기홍호, 건강, 자기계발, 일상생활기술을 주 교육내용으로 함. • 대학 내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여가, 문화적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대학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받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과 계약, 후원 및 자선 활동에 의해 운영 • UCLA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외 외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과정도 신청할 수 있음 • Path 교육 자문위원회(PEAC) 운영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LIFE Program	1. 대상 : 18~24세 지적장애 고등학교 졸업자 2. 교육연한 : 4년제(2년은 on-campus / 2년은 교외 기숙 프로그램) 3. 자격증(certificate) 프로그램 4. 프로그램 개요 • 직업 평가, 개별화 진로 계획, 독립 생활 기술 지원, 학업 관련 수강 허용(읽기, 수학, 과학, 사회, 인문학)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함 • 매학기 '개인발전계획(personal development plan)'으로 지속적인 사정과 지도 • 대학 캠퍼스에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TAPESTRY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21세 지적장애인 2. 교육연한 : 2년과정(48학점 이수) 3. 학위과정 없으며, 수료증 제공하며 TAPESTRY 과정 수료후 학위과정에 지원 가능 4. 프로그램 개요 •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진로탐색과 사회적 기술, 생활기술, 학업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학내 교육과정내의 참여보다는 현장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중점을 둠(일주일에 한번 대학 강의실 수업을 들으며, 대부분은 현장에서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일반학생을 동료 멘토로 지정하고 멘토와 함께 캠퍼스 사회 활동에 참여시킴
University of Arizona	Project Focus(Focusing Opportunities wit Community and University Support)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21세 지적장애 학생 2. 교육연한 : 2년 3. 학위 및 수료증 제공 4.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직원과 동료 멘토의 도움을 받아 최소 6학점 이상의 통합된 교과 이수 및 대학생활에서의 여러 활동에 참여 • 지적장애학생의 생활 및 사회 기술, 고용과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 학점이수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Colorado State University	OPS(Opportunities for Postsecondary Success)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2. 교육연한 : 4년 3. 학위 및 수료증 제공 4. 프로그램 개요 • 여행교육, 지역사회 기반 교육, 독립적인 생활 기술, 사회 기술훈련, 생활기술교육이 주요 교육내용 • 고용보다는 전환교육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지적장애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일반학생들과의 통합된 수업보다는 지적장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초점
University of Delaware	EEM(Career and Life Studies Certificate Program)	1.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의 지적장애학생 2. 교육연한 수업연한 : 2년 3. 학위 및 수료증 제공 4. 프로그램 개요 • 대학내에서 지적장애학생의 직업과 생활 훈련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 • 지적장애학생들은 이 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일반학생과 함께 대학생활 공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	프로그램	주요특징
		• 장애학생들은 최소한 주당 25시간을 캠퍼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대학 내에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음 • 각 수업은 지적장애학생의 개인의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도달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져 있음

3) 이 외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사례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나 과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의 인구조사에 나타난 장애인의 수는 약 48,90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중등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은 주로 2년제 지역사회 대학과 4년제 대학 직업훈련학교 지역사회 내의 마을 회관 및 스포츠 팀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정동영 외, 1998).

지역사회 대학과 4년제 대학은 일반인과의 통합을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성인 장애인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별도의 장애학생부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전공자와 컴퓨터 공학 전공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학교도 특수교육 전공자를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해 교과내용이나 장비를 장애에 맞도록 수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외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New Horizons

New Horizons는 1954년 정신지체인의 부모 8명이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족에 따라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1970년부터 장애성인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였고, 1980년 모빌클루(mobilecrew)를 시작으로 하여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기관은 1년에 63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발달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작업·생활·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작업 프로그램은 재활과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보호작업과 지원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작업은 New Horizon 내의 여러 작업장에서 지역사회 내의 500여 개 공장에서 가지고 온 과제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내용은 문구류 포장·과학 실습용·학급교재 조립·전기부품 조립·우편물 수집·배선 포장 등이다. 모빌클루는 승용차를 타고 지역사회 내의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경사업·경비·재활용 작업 등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내의 많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고용은 선 배치 후 지원 체제의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작업자를 지역사회 내 100개 이상의 기업체에 배치하고 직무지도원(job coach)이 작업자 개개인의 성취 목표에 맞게 현장 지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 기관은 음식준비·서비스·청소를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식당은 훈련생뿐만 아니라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모임·연회장·결혼식 등의 식장으로 지역사회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SSI(Social Security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생활비로 운영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이 기관 소유의 9개 주택에 6명씩 54명이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의 도움과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생활 프로그램(supported living program)은 장애인이 독립 아파트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다른데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장애인 1명에 24시간 3교대로 직원이 지원을 해 준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중증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전기술과 훈련을 제공한다. 절반은 교실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 현장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2명의 교사가 3명의 학생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가면 다른 교사는 나머지 3명을 데리고 교실에서 학습을 한다. 매달 지역센터로부터 18달러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지도교사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사 3명을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일상훈련활동센터(day training activity center)와 예술센터(art center)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상훈련활동센터는 기초생활기술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재정관리·안전·작업습관·건강·대인관계·위생·자기주장 기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술센터는 학생의 예술적 능력 발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미술활동과 작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리기술과 가정생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와 같이 New Horizons은 중증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작업·생활·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성인의 작업·생활·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치 운영되어야만 그들이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생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Taft College

Taft College는 Taft지역의 명칭을 붙인 대학으로 Los Angeles Kern County의 Sna Joaquin Valley 남서쪽의 Rolling Hills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농작물과 석유 생산으로 유명한데, 인구는 2만 정도의 소도시이다. Taft College는 California 지역대학에서 가장 적은 규모인 1,2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의 모토인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지원한다(big enough to serve you, small enough to know you)"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California주 내에서는 최고로 적은 수준이다. Taft College의 장애학생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학생활 경험, 상호작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 제공,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훈련,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 개인적인 장점 인식 및 개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대학에서부터 독립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있다.

Taft College는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서비스 조정가(Coordinator)가 장애학생의 능력을 고려해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입학은 원칙적으로 California 주민이어야 가능하며, 1주일에 30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학교에서 지원해준다. 이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1,200명이고, 141명이 기숙사에 배치되어 있다. 장애학생은 200명 정도이고 기숙사 이용 장애인은 30명 정도이다. 이 대학에 지원하는 장애인은 Taft College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동기나 의욕이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시간일정·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이 개인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구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용 가능한 사회적 행동이 기관·학교·가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동료와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규칙과 감독을 따르고 과거 불량 행동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알고 학생으로서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정보를 편지로 쓰고 메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입학 요건을 구비한 장애학생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면접과 독립생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의 동기수준과 교수에 대한 반응, 감독에 대한 지시 따르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Taft College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있다. 따라서 나이가 18세 이하이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한 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aft College의 입학이 결정되면, 학생은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여 독립생활기술을 배우게 된다. 학생은 평균 22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직원은 학생에게 장·단기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개별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한다. 학생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데 정해진 이수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지체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둔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에게는 문제해결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프로그램은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 건물과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아파트에는 4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학생과 같이 기숙사에 배치된다. 프로그램은 개별수준에 따라 교과학습·직업 훈련·독립생활기술·사회/레저기술·전환 서비스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필수 실습도 있는데 실습일지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수하게 한다.

전화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학생이 부담한다. 기숙사의 방은 1인용 침대·옷장·창고·책상 등을 구비하고 있다. 화장실은 양쪽 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이용하는 기숙사의 방은 취미에 맞게 장식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청소시간을 정하여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기숙사 이용료는 SSI에서 매달 지급되는 780달러 중에서 560달러를 납부한다. 나머지는 저축을 하여 졸업할 때 대부분이 1,000달러 이상을 찾아가는데, 이 자금은 주로 직업의 획득을 위한 면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할 때 이용한다. 기본시설은 대학에서 제공하지만 컴퓨터 같은 용품은 개인용품을 사용한다.

학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학습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졸업장을 받게 된다. 이때 Taft College 직원은 졸업생에게 그들의 집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 이전에 학생이 대학 내의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졸업식 때는 일반학생과 똑같은 알파벳순서로 학위를 받는다. 졸업과 더불어 직무지도원이 직업을 개발해 주기 때문에 89% 정도가 취업을 한다.

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 설립한 지역사회 차원의 비영리단체로 미국 전역에 2,000여개가 있고 New York주에만 40개가 있다. 본부가 따로 없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규모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은 사무실과 훈련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등장한 것은 1972년 미국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중증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자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로부터 당당하게 서비스를 받자는 사회운동을 벌인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버클리에 최초로 자립생활센터를 세웠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선택과 동등이라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일·주거지·교육·여가선용에 대해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운동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이라도 그곳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없으면 곤란하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사회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극대화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다.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주거생활 프로그램,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즉 요리하기·버스타기·공공시설 이용하기 등을 지도하는 일상생활 프로그램, 직업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집안일이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다. 심지어 아기를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아기를 씻기고 우유 먹이는 것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상담과 훈련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자립생활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이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일을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미국은 재활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7조에 연방정부가 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많았지만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재는 2/3 이상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도 많은 장애인이 노력하고 투쟁한 끝에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의 장애인이 탈가족 또는 탈시설하여 자기결정권을 누리면서 일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훈련, 사회생활훈련, 대인관계 훈련, 동료 상담 등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 삶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학교육 이후 중고령 나이의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며, 당사자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등 성인 장애인 교육 풀뿌리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자립생활정보이용센터

1975년에 세워진 자립생활정보이용센터(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LRU)는 장애인의 독립생활, 건강문제,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자료,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한다. ILRU 프로그램은 독립생활 영역에서 전문적 지원, 직업훈련, 연구, 정보 등을 위한 국가적인 센터로써, 독립생활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정보, 지식을 확대시키고, 연구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 결과의 이용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LRU는 IL 네트워크를 통해 CIL(자립생활센터)에 훈련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훈련과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산업으로 건강관리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와 협력자로서, ILRU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작업장 내 훈련, 온라인상 훈련, 화상회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교육 및 훈련과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 지원 서비스(PAS)로 인터뷰를 거쳐 고용된 개인 조력자들이 개인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혹인 장애인들을 돕고, 시각 장애인 서비스로 CIL은 시각 장애인 혹은 저시력인 사람들을 동료 상담, 지원 그룹,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장비와 도움에 관한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고객(장애인 혹은 장애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개인) 지원 프로젝트(CAP)로 CAP는 고객들이 국가의 사회복귀 필수사항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공청회 등에서 고객들을 대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청각&청각/시각 장애인 서비스로 청각 장애인이나, 청각, 시각 장애 모두를 가진 중복 장애인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로 직업목표를 인식, 이력서 작성 기술, 인터뷰 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직업 탐색 기술을 배우고, 사후 관리 상담 서비스를 받으며 동호회 역시 제공한다. 재정 혜택 상담으로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 혜택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주택 서비스로 독립생활센터 주택 담당 직원은 고객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출입에 불편이 없는 집을 찾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능, 기술서비스로 동료 상담원은 사회화에 필요한 능력, 직장 생활 전 상담 및 훈련, 기본적인 독립생활 기능, 기술을 위해 개인 교육, 지원 그룹, 워크샵 등을 제공하고 장애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다른 단체의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하며, 동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표Ⅳ-4〉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사례

기관명	내용
New Horizons	1954년 정신지체인의 부모 8명이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족에 따라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현재 이 기관은 1년에 63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발달 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작업·생활·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Taft College	Taft College에서는 장애학생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경험·상호작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 제공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훈련·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개인적인 장점 인식 및 개발·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대학에서부터 독립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입학 후, 학생은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여 평균 22개월간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에게는 문제해결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강조조점을 둔다. 프로그램은 개별수준에 따라 교과학습·직업 훈련·독립생활기술·사회/레저기술·전환 서비스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필수 실습도 있는데 실습일지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수하게 한다. 전화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학생이 부담한다. 기숙사 이용료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서 매달 지급되는 780달러 중에서 560달러를 납부한다. 나머지는 저축을 하여 졸업할 때 대부분이 1,000달러 이상을 찾아가는데, 이 자금은 주로 직업의 획득을 위한 면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관명	내용
	입할 때 이용한다. 기본시설은 대학에서 제공하지만 컴퓨터 같은 용품은 개인용품을 사용한다. 학생이 요구된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학습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졸업장을 받게 된다. 이때 Taft College 직원은 졸업생에게 그들의 집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졸업과 더불어 직무지도원이 직업을 개발해 주기 때문에 89% 정도가 취업을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 설립한 지역사회 차원의 비영리단체로 미국 전역에 2,000여개가 있고 New York주에만 40개가 있다. 본부가 따로 없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규모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은 사무실과 훈련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선택과 동등이라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일·주거지·교육·여가 선용에 대해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운동이다. 자립생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의 지역하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극대화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다.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주거생활 프로그램,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즉 요리하기·버스타기·공공시설 이용하기 등을 지도하는 일상생활 프로그램, 직업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집안일이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상담과 훈련을 담당한다. 이 이외에도 자립생활 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이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일을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미국은 재활법 7조에 연방정부가 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자립생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많았지만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재는 2/3 이상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ILRU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1975년에 세워진 ILRU는 장애인의 독립생활, 건강문제,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자료,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한다. ILRU프로그램은 독립생활 영역에서 전문적 지원, 직업훈련, 연구, 정보 등을 위한 국가적인 센터로써, 독립생활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정보, 지식을 확대시키고, 연구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 결과의 이용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LRU는 IL네트워크를 통해 CIL(독립생활센터)에 훈련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훈련과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산업으로 건강관리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와 협력자로서, ILRU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작업장 내 훈련, 온라인상 훈련, 화상회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교육 및 훈련과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지역사회통합연구소

지역사회통합연구소(The 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 : ICI)는 1985년 미네소타 대학(트윈시티 캠퍼스)에서 설립되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발달장애인의 Excellence를 위한 대학센터(University Center for Excellenc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CEDD)로, 지역사회의 주요 대학들과 교육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부의 국가 네트워크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소는 전 생애에 걸친 장애 이슈를 다룬 74개의 프로젝트와 5개의 연계 센터의 중심이다. 또한 조기교육 및 개발, 연구소의 파트너 센터에 대한 대학의 센터와 긴밀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다음의 4가지 중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예비 및 평생교육 활동을 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학생, 보조 교사, 전문가 리더십 요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기술적 지원을 한다. 기존의 기관과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정책 연구를 한다. 지역사회의 조직, 기관,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승인된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넷째, 다양한 정보를 보급한다. 기관의 프로젝트와 센터들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뉴스레터, 교육과정, 교육자료, 자원 가이드, 보고서, 브로셔, 잡지기사, 책, 웹사이트, 비디오,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리소스를 통해 공유한다.

이 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유아 서비스 영역의 프로그램은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감정적, 교육적, 그리고 발달적 욕구 다룬다.

둘째, 학령기 서비스 영역의 프로그램은 교육시스템, 사회적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에서의 위험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과 모든 포용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강조한다.

셋째, 전환 서비스 영역의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지역사회 속에서 생산적이고 반응적인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노력한다.

넷째, 성인 서비스 및 지역사회 거주 영역의 프로그램은 직접 지원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의료 조정, 노화, 주거 서비스, 가족 지원, 자기 옹호, 자기 결정,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생활의 다른 측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표Ⅳ-5〉 지역사회통합연구소(ICI)의 서비스 영역에 따른 대표적인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내용
유아 서비스	FISP : Supporting Individuals and Families Information Systems Project(FISP)	주들의 가족지원으로부터 수집한 연간 데이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정제하고, 지적 또는 발달장애인, 두 장애를 모두 가진 장애인(IDD)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더 잘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해 종적인 자료 분석, 정책 연구 그리고 보급 활동을 실행한다. 수집한 자료들은 연방과 주 기관에 가정 속의 가족구성원 또는 지적/발달장애인(IDD)과 가족을 지원하는데 나타나는 트렌드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이용된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비용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비용을 비교, 대조하고 발달장애인 아동과 어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비교한다.
학령기 서비스	Check & Connect : A Comprehensive Student Engagement Intervention	Check & Connect는 학교에서 관계형성 문제해결 또는 역량 강화, 인내를 통해 소외되거나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육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데 고안된 포괄적인 개입이다. Check & Connect의 목적은 학교과정 수료를 통해 학문적, 사회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Check & Connect는 두드러진 문제를 가진 비참여 학생들과 선생님과 가족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유지시키는 주요 목적을 가진 훈련된 멘토를 통해 실행된다. 멘토는 담당 사례의 학생과 가족과 일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연계한다.
전환 서비스	Expanding the Circle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교, 조직,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실행하는지 참여자들에게 통찰력과 전략을 제공하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 행정가 또는 중등 교육 이후의 경험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아메리카 인디언 고등학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커리큘럼은 고등학생에서 성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과정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제공한다.
성인 및 지역사회 서비스	Direct Support Professionals(DSP)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	DSP는 사람들이 개인적 욕구 충족, 친구 만들기, 일자리 찾기, 권리를 이해하고 선택하기, 약물 복용, 새로운 기술 배우기, 물적·인적 자원 연계 용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활동에서 지역사회 인적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등한 시민권 보장에의 노력으로 진행된 장애인권운동의 역사나 민간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성장으로부터 영향도 있었고,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으로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과 제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현재 미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장애인권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민권과 사회권을 누리고자 하였는데 이는 미국장애인법을 통해서 구현되었고, 학령기 교육과정 및 성인기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비장애인과 같은 세팅에서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복지영역의 성장을 통해 민간 영역의 재단이나 연구소, 또는 비영리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지원하거나 자립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민간에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미국적 복지 또는 교육 제공의 특성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잘 드러난다. 민간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공공의 영역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운동의 영향도 있었겠으나 미국의 실천학문으로서의 장애인 교육재활을 강조하는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비장애인과 같은 교육환경에서 대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변화는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법과 장애인 교육법, 고등교육법에도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비장애인과 함께 보장한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를 막 시작하고 있고,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교육이나 돌봄 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포함되고 고려되고 있기에 한국이 앞으로 어떤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누려야 하는 일반적 교육체계 중 하나임을 받아들이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둘째, 미국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공주체가 호주와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임을 알 수 있다.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이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전공과 교육의 개선에만 매달리기보다 대학이나 다양한 층위의 지역사회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수용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로서 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NCSET)와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을 위한 국가정보센터(NICHCY), 지역사회 발달장애기관(CDDO)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구기관과 정보기관, 수행기관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기관이 한층 체계화된 모습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중앙집중식의 일률적인 수직적 체계를 만들고 수행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교육 및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편인데, 미국의 전문기관 운영 및 협력 방식을 참고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사업의 체계적 확대를 고려했으면 한다.

넷째, 미국에는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대학의 프로그램이 특화된 곳도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도 또 하나의 분리된 교육을 낳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 야학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성인장애인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보다 사회통합적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형태의 환경과 운영기술을 개발했으면 한다. 또한 장애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연령별 지역별 욕구가 고려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령별 지역별 욕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내용의 평생교육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호주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였다. 19세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호주는 평균적인 교육능력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학습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적인 교육 또는 특수교육의 형태로 별도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교사와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뇌성마비 학생들을 일반학교로 전학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호주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학교체계 내에 장애학생을 통합하는 것이 학생의 일상적 삶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고, 실질적인 경비도 적게 든다고 판단하여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의 전학과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이후 1975년 미국에서 「전장애아동 교육법」이 통과되고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호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배치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가족과 당사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의무교육 연령이상의 평생교육의 개념까지 확대되면서 부모와 가족은 교사와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청소년이 성인기에 달하면서 직업을 얻는 일은 어려웠고 가족은 장애성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평생교육을 더욱 요구하였다. 장애인 성인을 지원하는 교용 프로그램들도 다수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의 장애로 인해 늘어나는 고용기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중도에 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요구와 함께 장애인복지 분야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1986년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이 통과되었고,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통과되었다. 1991년 「미국장애인법」의 통과 이후에 세계 각국의 장애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련하였는데, 호주도 그 선두 주자에 포함된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교육, 고용,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활동에서도 장애를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 강조되었다. 호주 내의 각 주는 「반차별법」과 「기회평등법」,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법」, 「단일건물규정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인식과 제도와 환경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법안들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호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장애인의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고용·주거·스포츠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한 차별 개념은 단순히 장애인을 교육영역에서 배제했는지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했는지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 환경과 접근성의 문제까지 중요한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경사로가 있어서 접근이 가능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이 있는 경우, 접근이 어려운 건물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환경이 장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기에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교육권에 대하여 장애인도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1995년 교육·고용·훈련·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국무 위원회(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를 열었다. 주 정부와 사립학교·직업학교와 고등학교 대표 및 장애인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령기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제3의 교육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을 교육적 이득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학령기 이후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교육권이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장애인의 동등한 평생교육에 대한 보장은 크게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접근성 보장,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포괄적 지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 특정적 지원이 그 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접근성이란 캠퍼스 환경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캠퍼스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건물 내 공간설계,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예를 들면, 강의실, 가구, 도서관, 실험실, 컴퓨터 실 등), 학내의 쾌적성과 특수한 접근지원, 학내 장애학생 권익위원회 설치, 재정 지원 등,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둘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포괄적 지원은 일반적인 학내 서비스에서 장애특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내에는 진로지도, 상담, 학교입학 및 등록, 오리엔테이션, 시험, 평가, 교수과정, 연구력 배양 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수진과의 접촉, 교과과정안내, 학생상담센터 내 다양한 서비스 등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개인별 욕구에 따라서 별도 지원이 필요할 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험시간의 연장이나 이수학점의 조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육권보장을 위한 장애 특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대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시각장애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학생에게 통역사와 타이피스트를 제공하는 것, 의사소통보조, 캠퍼스 내 활동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교육 세팅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장애학생 전담요원이 근무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성인에 대한 호주의 평생교육은 비차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이외에도, 특히 직업교육과 훈련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전환기 교육(Bridging Pathways)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개발한 전략 프로그램이다. 비장애인의 다수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은 일부만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목표는 직업활동으로 이어주는 전환기 교육의 속성을 갖도록 강조하였다. 전환기 교육의 목표는 첫째, 장애인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직업교육훈련의 경로를 확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학습경험을 증진시켜서 고객 중심의 훈련을 제공하고 총체적인 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며 셋째, 평생학습 성과와 고용을 성취하여 고용주와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심화교육과 평생학습을 하도록 노력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법률과 통제 제도를 준수하고 총괄적인 자원배정을 실행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협조를 증진하는데 있었다.

1991년 호주 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 이후 및 훈련에서 청년의 참여(Yonug people’s Participation in Post-compulsory Education and Train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Finn 보고서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교육이 직업을 위한 전환기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유도하는 중등학교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의무교육 기간 이후의 교육을 요구하는 이들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한 지원서비스의 부적합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무교육 이후의 장애성인의 교육영역에서는 장애성인을 위한 직업적 연계와 훈련으로서의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이 보고서의 제출 이후 대학은 장애성인의 직업적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배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의 학령기교육과정의 변화와, 법적 영역에서의 비차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입법활동이 있었다. 또한 장애성인의 직업활동이 저조함에 주목하여 장애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교육으로서의 직업훈련이 강조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학령기 이후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권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나, 장애포괄적 교육지원과 장애특정적 교육지원의 영역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호주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두거나 세팅을 제안하기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틀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성인이기에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로는 학령기 교육기관보다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별도의 특수교육적 훈련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세팅이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인 교육센터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행정적으로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부(Departments of 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 : TAF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TAFE의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Victoria 주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직업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직장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개별 주정부의 장애성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직업훈련적 속성의 전환교육이 그 특징인데, 주마다 다른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연방정부는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e)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발의안이었다. 이 발의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지역장애위원회에 DEET(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m, and Training)를 대표하는 장애인 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직 상담원을 고용하였다. 지역장애위원회는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였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장애위원회는 장애인의 직장경험프로그램과 고용이후 훈련과 지원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두 축으로 운영하였다. 한국의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98년 호주 연방정부는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라는 새로운 성인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를 만들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장애인 공개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이라는 세가지 유형의 장애인 고용조건을 내세웠으며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필요한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재정은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서에서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연방정부차원의 교육훈련청년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와 주정부차원의 가족청년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Youth and Community Care)에서 고용지원과 유지를 위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였다. 즉, 장애인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고용을 위한 지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부처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는 장애인 성인 교육이 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성인교육이 될 수 있다고 장애인 성인교육의 목표와 틀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고용과는 관련 없는 레크레이션 활동 영역의 프로그램이 성인장애인 대상 교육으로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문해교육이나 일상생활 적응을 목표로 하는 기본 생활교육 또는 학업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의 틀과 구분되지 않으며 함께 통합된 세팅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러한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역센터나 활동센터,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나 스포츠 단체에 의해 기술교육과 장애인의 자기주장과 사회참여 능력을 개선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데 특징이 있다.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화 예술 체육 영역 또는 기본생활이나 문해교육 등의 서비스는 주거 장소·장애 형태 혹은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호주인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는 개인의 이익과 성취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발달과 자율성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애인 역시 가능한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의 선택권과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즉,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일반인에 대한 정책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가능한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하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호주에서는 장애인 성인의 고용과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전환기적 직업훈련 교육으로서의 장애인 성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달체계 역시 고용과 교육을 아우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력체계가 중요시 되었다. 한편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된 고용과 관련없는 문화예술체육 영역의 교육이나 문해교육 등 생활관련 기초교육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이나 복지센터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세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으로서의 성인교육이 구별된 지원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 외에 장애인에 특화되거나 장애인 중심적인 평생교육기관을 나열하자면,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기관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세팅은 대학과, 지역의 비영리기관이나 복지단체인데, 후자는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조직을 포함한다.

물론 각 기관은 추구하는 장애인 성인교육의 내용과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대학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 생애적 차원의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대학은 교육과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Latch-on(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s : Hands on)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다운증후군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었다. 읽기와 쓰기 훈련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다운증후군 성인장애인도 문장구성력을 증진시켜 이메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즉 변화하는 인터넷 세계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 수 있도록 생활 훈련으로서의 문해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것이며 성과도 입증되고 있는 성인 장애인 교육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도 일상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중증의 장애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기에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보다는 일상생활기술훈련이나 사회성증진에 초점을 준 훈련을 강조한다. Disability Servic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ustralia(DSA)는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으로 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다. 고용기회의 제공에서부터 개별예산제도의 운영에 이르는 지역 내 자립한 장애인의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16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 1,200명의 장애인을 지원 및 교육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교육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협회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레크레이션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LATCH-ON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는 LATCH-ON(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s : Hands on)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운증후군 청년의 문해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등 이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운증후군 청년은 청년기에도 인지발달을 계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8세에서 22세까지의 다운증후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Queensland 대학교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었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운증후군 청년에게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함께 공부하는 기회는 물론, 대학 도서관·미술관·식당 및 체육시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LATCH-ON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다운증후군 특성을 가진 성인장애인에게 읽고 쓰는 기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대학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영위하는 새로운 통합의 예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다운증후군 청년에게 문해발달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해 교수기법의 개발을 위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며, 문해능력의 개발을 통해 자기개념과 생활기술을 촉진하고, 장애청년의 미래의 삶을 질을 지원하며, 문해능력의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연구하며, 지역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문해(뉴스레터)와 기술(전자우편)을 통해 네트워크(우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1998년 2월에 시작된 LATCH-ON 프로그램은 처음 4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18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에 있었다. 4명(2명의 남성 포함)은 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반학교의 출신이고, 2명은 특수학교의 출신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혼자 등하교를 하였다(1명은 택시를 이용하였다). 몇몇은 독립적인 등하교를 위해 이동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청년은 없었으나, 안경을 착용한 여성이 2명이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년이 1명이었으며, 다른 청년은 청력검사를 받고 있었다. 참가학생은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해력 선별평가를 받았다. 평가도구는 이들의 문해능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에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팀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 도구는 Neale의 diagnistic tutor와 함께 Neale Analysis of Reading Ability-Revised(1998), Woodcock Johnson Reading Mastery Tests(1997), 연구 팀에 의해 고안된 면담과 토의항목 및 Neale과 Woodcock의 항목 일부를 이용한 읽기 강점의 관찰 및 관찰된 읽기·말하기·듣기 강점 등이었다. 다운증후군 청년은 이야기를 쓰는 것과 평가를 위해 준비하도록 통보받은 그림과 책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한 평가결과, 이들의 읽기 연령과 이해력은 Neale Analysis와 Woodcock Johnson Reading Mastery Test에 의해 출현에서 12세(6학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쓰기능력은 쓰기표본에 의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년들은 모두 문자를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었으나, 본문(text)을 구성하는 능력은 낱자와 단일단어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데서부터 단일문장을 구성하고 100개 내지 150개 단어를 이용하여 단순한 문장을 조리있게 쓸 수 있는 데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말하기기술은 대부분 읽기 쓰기기술보다 더 능숙하거나 정교하지 않았다. 이 청년들은 가족과 같이 영화 Star Wars·연극·그룹 Spice Girls·재즈 발레 등을 본 경험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고 있었다. 첫 해 이 청년들은 주당 2일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프로그램에 출석을 했다(이 프로그램은 19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61일 전일제 회기로 운영되었다.).

LATCH-ON 프로그램은 다운증후군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2명의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었다. 협력 연구자는 문해 교수에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를 담당하고 계획수립과 프로그램의 교수를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또한 2명의 교수 보조자도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었다(호주 Queensland의 경우 이러한 지위의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교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이 프로그램의 다른 단계에서 개인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Queensland 교육부를 포함하여 호주의 모든 주 교육부에 의해 공통적으로 채택된 "문해는 읽기·쓰기·듣기·말하기와 비판적 사고하기의 통합이다. 이것은 화자·필자 또는 독자에게 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른 사회적 상황에서 적당한 언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지식을 포함한다"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1991, p. 4)는 정의를 받아들여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교수·평가 및 영어 보고를 위한 지침으로서 Australia의 모든 주와 지방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영어 프로파일에서 도출되었다(Australian Education Council, 1994a; 1994b). 이러한 프로파일을 이용한 이유는 문해교수 프로그램의 목적을 일관되게 성인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였다(Chapman, 1997).

읽기사정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루어졌고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는 다운증후군 청년이 광범위한 범위의 읽기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욕구의 어떤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욕구의 주요 역영은 이해력 즉, 의미의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읽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다운증후군 청년들은 대부분 단어와 본문을 부호화할 수 있는 반면, 교재를 읽은 다음 중심생각을 발견하고, 맥락을 통해 읽은 단어를 회상하는데 큰 어려움을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전략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읽기를 위해 이용된 교재는 광고 자료·잡지·연구자료·참고도서·웹 페이지·통속소설·신문기사·짧은 이야기 등이다. 이러한 교재는 학생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스포츠·올림픽·음악·영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다운증후군 청년은 모두 작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작문은 한 단어·단일 문장·일련의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흔히 구두점을 생략하고 소문자와 대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다운증후군 청년에게 신문기사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도록 지원하였다. 이들의 쓰기기술 개발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연습기회를 제공하고, 읽기와 쓰기가 필요한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그들의 쓰기목록을 확장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전자우편 계정의 개설이었다. 다운증후군 청년 한 명이 이것을 이용하여 문자를 구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쓰는데 큰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는 해외의 친척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 Disability Services Australia

DSA는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위조직인 DSA business services 파트에서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포장이나 조립 등 단순 업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훈련, 자립생활훈련,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별예산에 대한 관리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에 장애인 성인 교육기관의 좋은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DSA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직업 훈련을 하며, 그 직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돕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58년 워크샵을 첫 활동으로 시작하여 기금 모음 행사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록 개인과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전문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운영되었다. DSA business services는 포장, 채워넣기, 조립 등의 일을 제공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DSA 소속으로서 일을 하게 되므로 직원들의 업무 보상, 장기 휴가, 병가, 그들의 월급, 출석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DSA가 관리한다. DSA는 OJT(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를 실시하고, 작업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직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DSA에 소속된 사업장에 있는 기존의 비장애인 직원들과 서로 관계를 맺도록 격려 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200개의 다양한 규모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호주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과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해 각각 자신의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력서를 계속 쓸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 제공, 장애인의 목표, 요구, 열정 등을 만족시키는 개별화된 지원, 적절한 목표설정을 위한 지원, 매주의 직장모임, 인터뷰 상황을 가정한 역할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삶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DSA life support 파트에서는 적절하게 훈련 받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해 주기도 하고, 집과 소유물을 관리하게 해 준다. 또한 개인의 혹은 공유하는 예산 등을 관리하게 해 주고, 목표와 능력에 부합하도록 낮 시간의 활동을 가질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소속감과 지역사회에서의 인맥형성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 준다.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집에서 살고 있는 다른 거주민들과 함께 집주인으로 간주하고, 지역 거주민 명단에 기재되고, 공공요금 고지서에 이름이 기재된다. 전화번호를 가지게 되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가계예산의 비용을 DSA에서 지불하지 않고 장애인의 개인 계좌에 직접 돈을 넣고 비용이 지불되도록 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입하고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으면서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이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하도록 지원한다. DSA는 비영리기관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이 되는 group home model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3) 장애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여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지적장애인 1986년 설립된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주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Australian Sport and Recreatio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 AUSRAPID)'이다. 이 AUSRAPID는 정신장애/지적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Handicap Intellectual Disability),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제휴하고 있다. 장애인이 스포츠에 선수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AUSRAPID와 그 주 지부는 클럽과 단체에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크리켓·실내 축구·테니스·운동경기·농구·배구·수영 등의 종목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방 정부는 호주 여러 주의 레크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관광사업·스포츠 및 관련 영역의 주 담당 부서가 평등성을 개선하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Aussie Able Program)과 호주스포츠위원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장애인 스포츠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Queensland 주의 Q-RAPID, Sporting Wheelies, 장애인 레크레이션 협회(Disabled Recreation Association)와 같은 기구에서는 특정 스포츠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훈련수준을 높여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다양한 스포츠 아카데미와 호주 스포츠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Sport)도 우수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장애선수의 참여와 경쟁을 고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최근 몇 년간의 흥미로운 성과는 장애인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여가영역에서 고용 증대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체력 단련 지도자 양성과정에서도, 지역사회 클럽과 체육관에 장애인의 참여에 초점을 두는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신체적인 활동에 초점을 둔 대학 프로그램도 점차 개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과 레크레이션이 장애인 성인선수를 길러내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다수에게 보편화되고 있다. 더욱이 주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장애인의 레크레이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레크레이션과 여가 영역에서의 장애인 참여 증진 및 관련산업고 시장의 확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영역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영역도 늘어나고 있다. 시, 음악, 그림, 드라마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소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나 예술인협회 등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글쓰기, 서커스 무용, 등의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과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내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특수교육패러다임은 학령기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을 강조하였고 학령기 이후 성인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교육을 비롯한 일상생활교육 등을 포함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 배경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영역에서의 비차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입법활동이 있었다.

호주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치철학은 학령기 이후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권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나, 장애포괄적 교육지원과 장애특정적 교육지원의 영역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두기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틀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함께 운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접근성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과 학습자원(예; 강의실, 가구, 도서관, 실험실, 컴퓨터 설비), 이들의 요구와 참여에 조언을 제공하는 캠퍼스 위원회, 학생 지원을

제공하는 적절한 재정자원과 같은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진로지도·개인적인 학습상담·후원, 등록 보조·오리엔테이션·특수평가와 시험설비, 요구되는 교수와 연결되는 과정, 요구되는 대안적인 교수와 학습 배치, 문제해결과 학습전략을 포함한 연구·기술 프로그램, 건강과 복지 서비스 등 일반적인 교내 지원 서비스도 장애포괄적이어야 한다. 그 외 읽기 서비스, 통역자, 필기자/노트-대필자, 점자 지원, 녹음 강의자료, 타이핑에의 접근, 설비의 대여와 제공, 의사소통 보조, 캠퍼스 이동 지원, 그리고 캠퍼스 내의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등과 같은 특별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며 이는 장애인 성인이 비장애인 성인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호주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초점을 둔 영역을 살펴보자면, 직업훈련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전생애적 관점의 교육과 사회참여에의 보장과 지원이 강조되면서 특히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집중한 영역은 직업 훈련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고용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기적 성인교육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동시에 지역사회 내 비영리기관이나 직업센터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이 아닌 일생생활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기도 했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은 직업연계라는 전환기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돕는 삶 자체를 위한 교육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은 매우 넓고 제공주체도 다양하다. 고용프로그램의 참여, 자원봉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직업기회 탐색, 독립적인 여행, 대학, 사회교육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의 지원, 지역사회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행사의 참여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에 소속기관에 있건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디서든 제공된다. 다양한 단체나 협회 지역내 대학 등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독립심이 향상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능력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마련하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평생교육의 제공주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역사회의 지역 센터나 활동센터 및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전공과'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에 방치될 수 있는 청년 장애인들을 전공과로 흡수하여 직업훈련을 하고 전환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성인 장애인을 학령기 교육기관 속에서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학령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평생교육)은 정규 학령기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학이나 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마련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학령기 교육기관보다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수교육적 훈련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 방법이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인 교육센터와 대학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성인으로서의 교육기관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통합적 개념의 교육환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령기 전후 교육환경에 적용되면서 수업에의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통합교육이 주도적인 장애인 교육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통합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학령기 교육기관의 교유과정의 경우 통합교육의 변화를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교육환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사교육 영역이나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의 통합교육의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평생교육의 틀에서 분리된 채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일부 단체의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적 전달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호주에서는 전환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용, 교육, 복지의 영역에 관련된 부처들이 재정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협력적 전달체계를 실행하려면 마찬가지로 교육, 복지, 고용의 영역에 관계된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야할 것이다. 또한 재정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만 아니라 사업운영 및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개방과 협력 차원의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호주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이 특수교육만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다. 일반교육 환경 안에서 성인 장애인 교육 방안 논의에 대학은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평생교육 영역으로 대학은 이미 상당한 시장을 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알려진 몇몇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에 따라 어떤 성인 다운증후군 장애인은 이메일로 서신을 주고받는 등 삶의 질을 높인 경우도 있다. 또한 대학사회를 경험하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촉진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대학들이 성인 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정책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3. 일본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일본의 평생교육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의 평생교육정책과 내용을 2016년 현재의 상태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이 크게 변형, 발전된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평생교육의 태동기(1940년~1970년)

일본의 평생교육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는 물론 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각 지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청년학급을 만들어 교육하는 활동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근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직업이나 가사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켜 일반교양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아래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청년학급은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식,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보충학습, 신헌법, 국민과 정치, 민법, 향토사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농촌에서는 원예, 농업기술, 경작재배법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붓글씨, 차도 등도 개설해 가르쳤다(田浦武雄·伊藤敏行, 195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청년학급은 1953년 일본정부가 「청년학급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청년학급의 학습방법은 실험실습이 중시되었지만, 청년학급을 설치해 운영하는 공민관, 학교 등이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청년학급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청년학급주사, 청년학급강사들로 1학급당 10~15인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실제 자격은 학교교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청년학급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회를 만들고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은 보조금을 지급해 청년학급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청년학급운영비는 1952년에 학생 100인에 10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8~10만엔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일부 청년학급에서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청년학급의 태동은 장애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1964년 동경 스미다구에서는 '스미다 교실'을 개설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청년학급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당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들은 학교라는 장소를 떠나면 학습할 장소를 잃게 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 '스미다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다(畠山豊吉, 1955; 高畑庄蔵, 2004; 寄林結·高橋智, 2012; 최복천·이미정외, 2013). 즉, 학교교육의 사후지원의 목적으로 청년학급을 개설하였으며, 청년학급은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담당해 운영하였다. 청년학급은 사실상 생애학습이 아닌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평생교육의 확장기

청년학급을 중심으로 시작된 일본의 평생교육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1980년대 발표된 교육백서에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 국제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하고 자기능력 재개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물질적 생활의 여유는 물론 정신적 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교육적, 문화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가계의 여유나 근로시간이나 가사시간의 단축에 따라 자유시간이 증대하고 평균수명이 신장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가의 활력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학습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학습하면서 능력을 키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새로운 학교 교육체계가 시작된 지 30년이 흐르면서 양적 확대는 물론 고등학교나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상승하고 진학하는 곳도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양화되는 등 국민의 학습욕구가 높아졌다.

실제 1980년 당시 실시된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98.8%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후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5%에 이를 정도로 21세기에는 평생교육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자 교실과 고령자 인재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활동을 장려하기로 방침을 세운바 있다. 생애교육정보제공사업 촉진을 위해 도·도·부·현이 주민에게 각종 평생교육사업 개최 상황이나 시설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TV 스포츠 방송이나 팜플랫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향토자연,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영상, 녹화, 슬라이드 등의 교제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또 고령자에게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시·정·촌에 대해 고령자 교실 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고령자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사회교육에 필요한 지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고령자 인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다.

지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 고향운동, 친구 만들기, 봉사활동과 같은 청소년 지역 활동 및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으며, 학부모 모임(PTA : Parent-Teacher Association)과 협력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부모 모임 활동 촉진을 위한 경비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기초해 '자립', '협동', '창조'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하는 생애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을 기초로 사회교육, 가정교육, 기타 다양한 장소와 기회에 의해 제공되는 생애학습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3)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전환기(1988년~)

일본은 1987년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과제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방침을 둔 '교육개획추진대강'을 결정하고 이를 1988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교육계획추진대강에 따라 문부과학성의 조직개편은 물론 평생교육에 대한 방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된 임시교육심의회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학습'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후 평생교육은 모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임시교육심의회에서는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시점에서 서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기초해 자신에게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평생교육으로 사용해왔던 용어를 평생학습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 그동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학급진흥법」을 1990년에 폐지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 2002)을 제정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평생학습을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학습, 즉, 학교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21세기를 평생학습사회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평생학습 사회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고령화와 과학기술의 고도화 등 사회 경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평생학습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기능과 경력의 향상 이외에도 사회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도의 기반인 인재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둘째,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서 삶의 보람을 위한 학습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 고령자의 사회참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학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의 성과'가 적절히 평가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육개혁의 과제 중 하나인 학력사회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中央教育審議会生涯学習分科会, 2004).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전 생애를 통해 사람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사회인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학습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 학습활동을 통한 지역활동 추진, 현대적·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학습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다양화하고 복잡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과제 해결의 담당자를 기르기 위해 사회 교육을 진흥하고 교육의 원점인 가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과의 연계는 물론 교육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와 제휴 협력에 의해 부모와 자식의 성장을 한층 지원해 나가고 있다.

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생애학습은 생활의 향상과 직업상의 능력향상, 자기충실을 목표로 하여 각자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해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며 생애 전체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 속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 활동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취미,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도 생애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원칙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생애학습은 비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도 '자립', '협동', '창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이후의 성인 장애인들에게 동일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생애학습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 장애인은 계속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배우는 주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학습 지원자도 강사에서 자원봉사자로 바뀌었으며, 자원봉사자로부터 시민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와 지원자의 관계도 '지도'에서 '지원'으로, '지원'에서 '함께 배우기'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990년대 전반까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레크레이션이나 여가와 같은 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으나, 1993년 생애학습분과회의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평생학습을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동창회 성격으로 실시된 장애인 청년학급은 장애인 본인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본인활동(발달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민관, 기타 사회교육시설 및 대학 등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1)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 전달체계

가) 중앙 행정조직 체계

(1) 중앙교육심의회 평생학습분과회

중앙교육심의회는「국가행정조직법」제8조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중앙교육심의회는 일본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다. 중앙교육심의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분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분과회의에서는 평생학습 기회 정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사회교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시청각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 및 사회교육법 규정에 기초한 심의회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문부과학성 생애학습 정책국

일본의 생애학습을 책임지는 소관부처는 문부과학성(우리나라 교육부)내에 있는 생애학습정책국이다. 생애학습정책국에는 정책과, 생애학습추진과, 정보교육과, 사회교육과, 청소년 교육과, 남녀공동참가학습과, 참사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생애학습정책국에는 생애학습에 관한 기회정비 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와 기획 및 법안 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련을 담당하는 전문조사관 1인과 외국의 교육사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외국조사관 2인이 배치되어 있다.

생애학습 정책국에서는 ① 교육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 기획 및 입안 담당, ② 생애학습 기회 정비 추진, ③ 생애학습에 관한 기회정비에 관한 기본적 정책 기획 및 입안, ④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시책의 기획과 입안 및 조정, ⑤ 교육,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되는 정보 통신의 기술의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기획과 입안 및 추진, ⑥ 정보 교육의 진흥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및 원조 및 조언, 정보교육을 위한 보조와 기준 설정, ⑦ 시청각 교육에 관한 연락조정, ⑧ 사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⑶ 경제산업대사

경제산업대사(経済産業省組織規則, 2001)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중앙행정부처로, 생애학습 활성화를 위해 생애학습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의 서비스 산업실에서는 생애학습 진행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말녀하고 있다. 주로 생애학습 단체 및 그 회원 기관을 통해 소관 기관인 상공회의소에 생애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대사와 함께 생애학습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지도 및 기타 지원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행정체계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2] 일본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중앙 행정체계

※ 출처 : 文部科学省組織令, 2016; 文部科学省組織規則, 201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지방 행정조직 체계

(1)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생애학습 심의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과 같은 형태로 교육청 내에 생애학습심의회에서 생애학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관계 주민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해 생애학습에 관한 기회를 종합적인으로 제공하는 기본구상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학습 및 문화 활동 기회에 관한 정보수집, 정리, 제공, ② 주민학습에 대한 수요 및 학습 성과 평가 및 조사연구, ③ 지역사정에 관한 학습방법 개발, ④ 주민학습에 관한 지도자 및 조언자에 대한 연수, ⑤ 지역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문화에 관한 기관 및 단체 연계 및 조회 상담, 지원, ⑥ 사회교육을 위해 강좌개설 기타 주민학습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편, 일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생애학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생애학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는 생애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35개 도·도·부·현, 3개 지정 도시에 생애학습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2)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평생학습담당국

일본은 모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생애학습담당부나 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도·부·현의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진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구·시·정·촌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다. 41개 도·도·부·현과 18개 지정도시, 1,017개 시·정·촌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기본 구상인 평생학습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 평생 학습추진 센터

각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 거점 시설로서 '학습정보 제공이나 학습 상담', '학습 수요 파악',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44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으며, 340개의 시·정·촌에 평생학습 추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전국 평생학습 시·정·촌 협의회

전국 평생학습 시·정·촌 협의회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평생학습은 그 지역 주민이 이끌어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작된 평생학습 시·정·촌 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6개 시·정·촌이 참여하고 있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가) 공민관

공민관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학습처일 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민관은 전국에 약 15,94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의 학습 욕구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학급이나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공민관을 지역사회 학습 거점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관계부처와 연계해 강사파견을 위한 체계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민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공민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 도서관

도서관은 사람들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는 사회교육시설로 대표적인 생애학습 기관 중 하나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립 도서관이 3.140개소, 사립도서관이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서관 수나 도서대출 수,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부과학성은 도서관 사서를 지역사회의 과제나 사람들의 정보요구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고 보다 실천력을 가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등 사서양성과정이나 사서강습 등 육성과정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또 도서관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신임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박물관

박물관은 자료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등록박물관 907개소, 박물관 상당시설 341개소, 박물관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4,52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박물관직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박물관장이나 중간 학예인(curator)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학예인을 외국 박물관에 파견해 그 성과를 다른 박물관에 보급하는 등 박물관 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을 지원하는 학예원은 생애학습 지원을 포함해 박물관에 기대되는 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높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연구는 물론 대학에 학예원 양성과정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전수학교

전수학교는 직업 또는 실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교양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로 실천적인 직업교육,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기관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전문과정',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고등과정',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인 등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위제, 통신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단위제학과는 학년이라는 틀이 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연한을 넘어서도 전수학교 정기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학습스타일이 구축되어 있다. 통신제학과는 학습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인쇄된 교제 등에 의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제화 등에 대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기능을 준비하는 전문인재가 필요하며 이들의 질적 양적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전수학교를 중심으로 산학컨소시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학연계를 통해 IT나 관광, 환경. 에너지, 식·농수산 등의 성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학습자의 지원방안이 세워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방송대학

방송대학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통신대학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도·도·부·현에 '학습센터' 등을 설치하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개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생애학습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약 8만 6천 명이 학습하고 있고 누적인원이 125만 명을 넘는 상태이며, 7만 명을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방송대학의 수강은 직업이나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학생의 유직률은 약60%에 이르고 있다.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610명 정도가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대학에서는 풍부한 교양학습을 비롯해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적 학습을 심화하여 학부, 대학원을 포함해 333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기존 학문분야와 관계없이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자유선택이 가능하며, 교원자격증을 비롯해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특정분야의 수업 과목군을 설정해 학위 이외의 이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학점 은행제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다.

바) 대학

생애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각 대학은 지역사회 '지식의 거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인 입학, 야간강좌, 주야간 강좌제, 과목 등 이수생, 통신교육, 이수증명제도,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강좌는 많은 대학들이 개설해 놓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이나 연구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기회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적어도 992개 대학에서 31,544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297,792명이 수강하고 있다.

사) PTA나 청소년교육단체의 공제사업

PTA(Parent-Teacher Association)나 청소년교육단체는 본래 그들이 주최하는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학교관리에서 사고를 당하면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기관이었으나, 이를 대신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생애학습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PTA·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이 시행되면서 이들 기관은 인가를 받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나 관련 단체의 요청에 따라 생애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 평생학습(추진)센터

전국의 평생학습(추진)센터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관련된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강좌나 모임에 관한 정보제공, 지도자나 강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단체나 서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제·유적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습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숫자는 도·도·부·현 44개소, 시 296개소, 정 51개소, 촌 17개소, 조합 1개소 등 총 40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으로는 전임 1,104명, 겸임 529명, 비상근 1,161명, 지정관리자 1,031명 등 근무하고 있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일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특수학교와 지역 문화센터,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표Ⅳ-6〉과 같다.

〈표Ⅳ-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운영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주요 대상	프로그램
특수학교 또는 지역 문화센터	시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 교양강좌 비장애인과 함께 배우는 시각장애인 교양강좌 • 시각장애인 음악 교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창, 악기(오카리나), 연주 등에 의해 하모니와 노래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년 수회 음악가를 초청해 미니콘서트를 개최. • 시각장애인 점자 초급과정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자 초급과정으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 • 시각장애인 통역·활동보조인 양성연수 시각장애인에게 통역과정이나 활동보조인 양성과정을 이수토록 하려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청각 장애인	• 청각장애인 사회교양강좌 청각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강좌로 타인에게 전달하기 쉬운 수화표현, 장애인차별해소법과 성년후견인제도 등의 제도 관련 강의, 직장생활 중인 청각장애인의 정신건강 등을 실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는 수화통역사는 물론 필기를 도와줄 인력이 배치. • 청각장애인 문장교실 수화를 통해 문장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경어와 정치경제용어, ICT용어와 컴퓨터 지식, 메일 활용과 예문, 수화로 아는 문법, 현대용어와 유형어, 한자와 사자숙어, 그림과 수화로 배우는 관용구, 수화로 읽는 격어, 동음이의어, 새로운 수화, 주의해야 할 언어 등을 교육. • 청각장애인 커뮤니케이션교실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인공내이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생교육기관	주요 대상	프로그램
		재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읽기 쉬운 자막, 편의시설 관련 영화에 대해 감사하기, 요약 필기자와 함께 생각하는 '음성정보 편의사회', 의사소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책, 청각장애인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교육
	지체 장애인	• 광명 아카데미 광명 특수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나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좌로 서로 즐기고, 근황을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 • 민들레 북 학교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실시. 주요 내용으로는 레크리에이션, 음악적 활동, 손 축구를 실시
	발달 장애인	• 모두 즐겁게 두드리자 춤추자 특수학교가 주최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에게 일본식 북치기, 민속무용, 체조 등을 교육 •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방법을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 • 앗! 즐기자! 아다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 춤, 스포츠, 영화감상, 게임, 만들기는 물론 최근 근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대학	장애인	• 영양교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에 관한 평가, 영양교육에 있어서의 유의점과 프로그램 만들기 등
	발달 장애인	• 휴대전화 사용하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의미, 사용방법 등을 교육 • 좋은 인상을 전달하는 방법 익히기 지적장애인의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의미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영어, 국어, 경제학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어, 국어, 경제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 지식을 풍부하게 하며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발달 장애인 및 지원자	• 발달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 발달장애인이나 그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학습.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기술 습득과 지원자, 일반시민의 발달장애에 관한 지식과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

※ 출처 : 高畑庄蔵, 2004; 木村政秀, 2012; 寄林結·高橋智, 2012; 烏雲畢力格·今枝史雄·菅野敦, 2013.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사회 발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교육체계 전반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평생학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첫째, 일본의 평생학습은 80여년의 역사를 통해 평생학습의 주체를 교육 제공자가 아닌 수요자에 두고 있으며, 용어 전체를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통해 평생학습이 추진되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내용이나 과정을 개설하기보다는 일반 평생학습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통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 분리되어 옴으로써 시혜적, 차별적 환경에 머물러 왔었으나, 최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일반 평생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통합된 체제로 정착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평생학습의 내용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의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조성되어 있다. 평생학습 내용은 농어촌, 도시 등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상황에 필요한 과정을 평생학습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지원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우 희소하고 획일적인 형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빈곤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평생교육체제와의 교류와 통합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수정·보완을 통한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한 결과가 사회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 평생학습을 평가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정에 따라서는 일정한 검정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 가운데는 학력보완이나, 전문적 직업기술(어학, 디자인 등), 예술 등의 욕구가 높으면서도 교육기관의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성인 시·청각·지체장애인들 가운데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이나 원격 교육시스템의 접근성 투자의 미비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는 물론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 등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평생학습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성인기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과정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과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학습 등 성인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어떤 분야이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참여기회가 전체 국민의 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일반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처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의 물리적·인식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5장

조사연구

1. 초점집단면담
2.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초점집단면담

가. 면담 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 참여자인 성인장애인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기관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여 평생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설문조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한다.

나. 면담 대상

초점 집단 면담 대상으로는 성인 장애인 3명과 성인 장애인 부모 2명,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면담참여자의 구성은 〈표Ⅴ-1〉과 같다.

〈표Ⅴ-1〉 초점 집단 면담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의 구분		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성인 시각장애인	1	5
	성인 청각장애인	1	
	성인 지체장애인	1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2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	4
	장애인 야학 교장	1	
	대학 평생교육원 팀장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팀장	1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평생교육 전공 교수	1	4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주무관	2	
	평생교육사 협회	1	
총계			13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조사 도구 및 방법

초점 집단 면담에 사용한 도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자, 제공자, 전문가들의 자유롭게 기술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개발하였다. 질문은 크게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현황, 발전방향과 과제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추가 질문을 제시하였으나 면담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질문 내용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표Ⅴ-2〉 참조).

〈표Ⅴ-2〉 초점 집단 면담 도구

구분	질문	추가 질문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귀하는 평생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과 일반 평생교육과의 차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귀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제공 또는 참여 경험 •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 장애인 평생교육의 욕구 • 장애인이 차별받는 유형과 이유 • 장애인이 평생교육에서 바라는 바 – 프로그램, 학습방법, 비용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귀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 법률 제·개정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참여가능 프로그램 개설 활성화 –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기타
기타	지금까지의 말씀 이외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은 집단별로 2016년 7월 5일, 7월 6일, 7월 28일 각 1회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내외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있었으며,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과 속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속기사의 전사자료와 진행자의 기록(당사자) 내용을 기초로 관련 요인 및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의 파악이 필요할 경우 녹음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료를 활용하였으며,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뷰 참여자의 보완 답변을 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여러 개의 소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라. 면담 결과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가) 평생교육 개념과 필요성

면담에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평소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 있게 모든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인식하였다.

> "---<생략>--- 제가 복지실습을 했었는데요. 복지관에서 보니까 농인분들이 굉장히 단어, 국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문장력이 약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완전히 배우고 난 이후에 불편함이 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소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그 스스로 자신 있게 모든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 - 정○○

지식에 대한 상대적 욕구가 강하여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평생교육은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발달과 시대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듣고 파악할 수 있지만 농인 입장에서는 소리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그 정보를 보고 학습하고 따라 가고 배워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배우던지 아니면 자격증 관련을 습득할 때에도 문장력이 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농인들은 그것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
> -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의사소통과 자조능력을 키움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령기 플러스 부모가 양육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볼 때는 엄마는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 계속 제공만 하지 스스로 선택권을 안 줍니다. ---<중략>--- 왜냐하면 점심 이후까지 넘어갈 거고 그때까지 집에 없으면 굶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는 같이 가야 돼." 하는 강요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도 벌써 의사소통과 자조에 관련해서 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면담자 :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한 건 그런 자조능력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배워야 되는 건 수동적이고, 그걸 키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 황○○

나)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평생교육 면담에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평생교육 강사들의 장애이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요즘은 특수교육에서도 교사들의 장애영역별 전공을 폐지하여 유형별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평생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만 있어도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나 그러한 예산 배정이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처음부터 평생교육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학령기 교육에만 열중한 부모나 당사자들의 경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문제점이 강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특수교육과 정보로도 몇 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특수교육 과정에 대해서 보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어머니 계시는 뇌병 장애, 지체장애, 저 같은 경우는 청각, 시각장애 다양한 장애 영역이 있는데 그냥 그는 모든 장애를 다 혼합해서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영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장애 영역이 많이 있는데 장애 영역에 있어서 특성화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한 번에 합해서 특수교육을 하게 된다면 장애영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회복지사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로 특수교육교사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특수교육 전공자들은 학령기 교육에만 머물려 할 뿐 평생교육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학교 이외의 다른 분야 교육에는 진입을 꺼리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만큼은 학령기 교육에서처럼 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 분야의 전문가는 특수교육을 하신 분이라고 그나마. 그런데 그분들은 학령기 안에서 움직이지 그 밖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걸 얘기해도 그냥 구름 얘기, 헛소리가 될 것 같아서. ---<중략>--- 그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 그분들은 이것,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한 말은 못해요. 모른다. 말은 못해요. 그걸 그렇게 많이 운영할 여력이 안 됩니다. 특수교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수교사가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죠. 모든 특수교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 황○○

물론 이러한 욕구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학령기에 하던 교육을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기능들도 계속 반복하여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경험하거나 익히지 않아 모르는 상황들 즉,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학교 밖의 지역사회 여러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 성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또는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혼자서는 실패 확률이 높은 과제들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제공자는 그들의 교육적 특성을 알고 교육과정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인 중증중복장애인의 교육 참여 배제 문제 또한 심각한 형편이라고 한다. 단순 발달장애인에 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그 외의 복지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기 일쑤다. 많은 복지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수요자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공격행동을 갖고 있으면 받기를 꺼려한다. 즉, 대상을 선별한다.

"모든 복지관이 다 공급자 입장으로 가지 수요자 입장으로 안 가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만약에 문제행동, 도전 행동이 있으면 안 받을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강남 거기 평생교육도 지체장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정호랑 같은 동창이에요. 되게 몸이 약해서 누군가 행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툭 쳐서 넘어지면 위험할 정도로 휠체어는 안타지만 굉장히 약한 친구인데 학교 막 졸업하고 났으니까 또래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에 섞여 있어도 그 친구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엄마도 요구하고 그래서 같이 원서를 냈는데 복지관 평생교육 측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말 공급 위주로 돌아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 황○○

다) 평생교육 개선 방안

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교육제도나 변화가 발생하여도 장애인은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당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나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항상 장애인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 나중에 기회가 오더라도 이중 삼중의 비용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든 뭐든 변화의 순간에 장애인을 예외로 생각지 말고 주류의 일원으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바뀔 때마다 중심이 되는 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개발할 때 장애인도 모두 같이 할 수 있게 이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늦게 이렇게 다시 조사해서 장애인에 맞추고 이런 과정을 건너뛰어도 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평등하게 그냥 장애인에 맞춰서 하면 비장애인은 당연히 더 편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 좀 장애인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 홍○○

둘째,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희망한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꼭 장애인을 위해 없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자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이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이나 접근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보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원하는 쪽의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함께 참여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우리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을,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제2국어를 배우면서 영어나 일본어 이런 건 공부를 하면서 제2국어로 수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 미국에 있는 한 주는 수화를 제2국어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는 청각장애인은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선 좀 먼저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우선 안 보이는 게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 홍○○

셋째, 전환 기능을 가진 전달체계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더 전문적인 걸 배워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학령기를 공부해 오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운 것처럼 그 다음 단계(성인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령기를 끝낸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절벽에 서고 마는 것이다. 장애를 안 가진 사람이나 다른 여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눈치껏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해서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긴 하겠지만, 나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며 깨닫고 또 자기가 찾아서 배우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문제해결력의 차이로 성인기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마치 학령기 교육처럼 현 단계를 강화하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익혀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중고등 때부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연계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야 장애인 당사자도, 부모도, 지역 사회인들도 우리 지역사회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인식도 하고. 그런 교육이 함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수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그 인근에 있는 직업교육 현장으로 가능한 학생은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생교육도 접근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장애인들은 사실 청장년층, 노인층, 일반 학령기 아동들 전부 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내가 장년층이 돼서 노년층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잖아요. ---<중략>--- 장애인이 성인기, 학령기를 졸업했을 때는 어디, 그다음에 장년기이 됐을 때는 어디, 노년기에는 어디, 이런 식의 로드맵이 짜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넷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개념과 필요성을 확산하고 평생교육기관에의 접근성을 신장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학령기 동안에도 교육에서 배제된 경험이 많아 성인이 되어서도 뭘 더 배워야겠다는 의지, 즉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형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는 평생교육 이전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적응하려면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학령기 때부터도 교육에서 배제되어 와서. 그런 구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정규 학령기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나서서 뭘 배우고 싶다거나 뭘 하고 싶다거나 이런 의욕들이 공통적으로 많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갖추어져야지 실제로 내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도 갈 곳이 없고, 취업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체 쪽 장애인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많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별로 평생교육? 내가 뭘 또 배워? 내가 배워서 뭐할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솔직히 확고한 생각은 없는데 그 이전에 먼저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

그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의 이동 및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쉽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 제도를 정착시켜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대체자료와 교·강사 등 종사자 교육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원격교육 방식의 평생교육 접근에 대해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생계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큰데, 전통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과 생업방식에는 제한이 많다. 즉 너무 작은 직업 영역을 갖고 있어 고를 수 없는 형편이다.

>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해서 배워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계가 지금 있다 보니까. 너무 작은 직업에 영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욕심을 내서 저걸 꼭 하겠다 해서 이루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는 의지와 관계가 없는데 성향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직업은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것들이 안타깝긴 한데요. 고민이 되네요." - 홍○○

따라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해 왔던 일만을 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이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전수하는 기능을 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컴퓨터(인터넷)를 활용한 원격교육도 시각장애인들에겐 평생교육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브라우저(이미지보다는 텍스트 음성 변환 가능)나 응용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스마트폰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원활한 어플들을 개발하거나 외국의 어플들을 재 표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컴퓨터가 많은 음성인식이 발전되고 해서 지원이 되긴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그런 비장애인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은 더 알트 텍스트나 이런 게 달려 있어서 잘 읽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미지화 되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만든 어플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쉽고. 국내에서 만든 건 더 접근이 어려운 방향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홍○○

이 밖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도 제안하였다. 여성 장애인들은 학습이나 직업기술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 주변에서 결혼생활이나 육아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결혼을 앞두었거나 임신과 출산, 양육 상황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불안을 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영역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이다.

"일단은 접근성이 좋으면 각 지역에서,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지만 그중에도 전 장애여성이다 보니까 학습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장애여성으로서 육아에 대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부족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지만 주위에 여성분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중요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 틀 안에서 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장애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개발될 필요도 있겠네요. 장애 여성으로서의 육아라든지.) 교육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장애영역 중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소외가 되는 영역이 장애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여성 쪽으로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 유○○

장애인들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지역사회에 분명히 그런 기관, 대학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각 영역별로는 필요한 게 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저희 영역으로 생각하자면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 특성화 시켜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거기서 문화여가 쪽에 가깝게 그 욕구에 맞는 걸 만들어서. 대신 강사나 교수님 한 분의 지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학부 학생들이랑 연계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과 사회복지과 이쪽 지체 쪽은 특히나 휠체어 장애인은 물리치료학과 의학 쪽으로 연

계된 분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학부 학생들을, 그들도 실습이 필요한 그잖아요. 그 실습이나 자원봉사시간을 거기에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는 못할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

장애영역별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과나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등의 전문성과 학부학생들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령기를 마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중복장애인들이 그 시기 또래 청년들이 누리는 감성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자긍심도 높일 수 있으며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세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가) 평생교육 개념과 필요성

면담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기관을 만들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전환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저희의 평생교육 접근은 어떠한 기관을 만들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어떠한 센터를 만들고 자꾸 기관을 많이 세우고 무슨 관을 세우고 평생학습관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설이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런 기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자꾸 건물 세우고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어서 ---<생략>" - 오○○

또한 장애인들이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누군가의 지시나 보호와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왔다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며, 그러한 삶(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생교육이라는 거를 작은 범주로 보기보다는 저는 성인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활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이라는 기회를 접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결정짓는 삶을 살고 익숙하지 않아 하세요. 무언가를 결정짓거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지금은 20살 넘어서는 그것들을 다른 생활 방식으로 맞춰가야 되는 걸로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평생교육에서 좀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한 이유이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반 평생교육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이○○

나)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문간 공유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령기까지는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을 받아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까지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은 그 다음 단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기관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지도하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그동안 특수교육교사들에게만 의존해 왔던 경험상 만족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평생교육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교육에서만 접근하게 될 텐데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하고 복지의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다 사회복지사들인데 대부분 보니까 성인기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펑생교육사, 특수교육에서도 많이 관여하시고 사회복지 쪽하고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하나의 분야라기보다는 교육, 복지에 같이 융합이 돼서 전문가가 연합을 해야지만 성인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

특히,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 대상의 50% 이상이 발달장애인들이라 이들의 교육 특성에 익숙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평생교육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평생교육사냐 특수교육교사냐 사회복지사냐를 두고 논란이 많으나 이게 어느 한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과 복지가 같이 융합이 되어 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가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다) 평생교육 개선 방안

면담참여자들 중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령기 이후 지속적인 전환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교육 수준에서 국가 및 사회적 책무성이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희망하였다. 또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이은 2단계 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 사회생활 등 모든 통합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맞춤형 내지는 개별화교육 개념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저는 지속적인 전환교육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평생전환교육 차원으로 가서 거기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지금은 평생교육이 어디에서도 다 무상으로 또는 일부의 지원이지만 이게 체계를 갖춘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돼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서는 국가 차원의 저는 일부 의무가 들어가서 시행될 수 있는 방침들이, 방안들이 이번에는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으로는 여전히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힘들다. 현재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프로그램에 평생교육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그 참여기회를 넓혀야 하며, 지금까지는 간헐적, 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많이들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잘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평생교육을 비슷하게 하고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

> 한 종사자들이 어떤 자신감? 근거?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일반,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공유하고 플랫폼 만들고 이런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장애인 분야에서도 그런 것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 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그 수요자이지만, 그동안 학령기 이후 이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 현재 복지관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특수교육을 추가로 공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 시점에서는 어디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느냐보다 평생교육 제공인력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느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과목들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이 기회에 평생교육사의 역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떤, 어떤 커리들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실습이 들어가야 된다면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역할정립을 하고 교육내용을 짠 다음에 여기에서 또 장애인 평생교육사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평생교육사와 장애인 평생교육사는 분리해서 양성해야 된다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 플러스알파의 교육과정만 하면 되겠다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서 평생교육사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건지 이게 나오면 누군가는 그 이유에서 따라올 거라고 보입니다." - 정○○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복지기관이나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일반 평생교육기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법률에 의한 국가적 제도와 정책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접근성을 정상화하고 프로그램의 공유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가) 평생교육 개념과 필요성

장애인이 갖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 발달장애인만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30% 정도만이 전공과 과정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또한 워낙 수요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일정 기한(3~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민이 깊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은 다른 장애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생교육의 목적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정보의 습득이라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국민은 그 요구가 다른 성인들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한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우선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대상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대상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본법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것,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나 적성에 맞춰서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이 교육기본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법, 교육의 기회보장이나 혹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사회에 소위 약자들에 대한 그런 보장들이 충분히 되어오지 않는 게 지금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애인기준에서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성인들의 경우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 강○○

나)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현재 평생교육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전 국민의 평생교육 수혜율은 1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까지 합쳐 35~40% 정도에 불과하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또한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 1개당 5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평생교육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래서 2007년에 평생교육법 개정하면서 그거를 시도교육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장들,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로 시도지사가 교육감보다 더 우위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들, 광역지자체들을 보면 평생교육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서울시만 해도 산하에 50여개 가까운 소위 재단법인 형태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 강○○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시·도교육청에서 맡도록 하였는데 교육의 입장에서는 학령기 아동에게 투자할 돈도 모자르는데 무슨 평생교육이냐는 식이어서 2007년부터 그 책임을 기초단체장들 즉 시도지사에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어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보다 더 우위에서 평생교육을 관장하도록 한 바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법 개정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은 아직도 학령기 중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맡아줬으면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현재의 평생교육은 변방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생교육법이 사회교육법에서 개정된 게 99년이고 2000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도 교육청 소관이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었는데 학교교육에 쓸 돈도 없는데 학교 졸업한 성인들이 주 대상인 평생교육에 무슨 예산을 쓸 수 있냐. 지금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 강○○

일반 평생교육기관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그곳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장애인을 참여시키려면 시설·설비를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하고, 그룹지도보다는 개별지도가 가능해야 할 텐데, 그렇게 추가되는 건축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수용할만한 기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 평생교육 개선 방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지금도 복지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

한 현황을 잘 살려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에서만 한다는 분리 개념을 버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연계 운영을 한다면, 훨씬 빠른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의 유형별 특성을 살린 이동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성을 접목시켜가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인 거고,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진짜 변방이거든요. 저희가 한직이에요. 그런데 복지하고 아예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지관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애인 복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이게 복지 관련해서 그런 게 다 깔려 있으니까 그 기관이나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

대학을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해 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서울의 경우 1,800개에 달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10개도 안 되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이동 및 접근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을 들자면 학교 형태와 학교부설의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고등교육기관을 열어가는 것이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시설은 서울에만 1,800개가 넘어요. 원격까지 합하면. 그런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축된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든 장애 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일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들은 장애인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장애인 설비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 김○○

또한 대학은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이나 지원만 있다면 초·중등학교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마다 평가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대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진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결국 학부모들도 기존에 있는 특수학교에 또 다니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장애인은 그 근처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응하지 않는 거죠. 그 시설 설비를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굳이 소수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클래스를 듣는 게 아니라 소수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강사가 어차피 거기도 수익구조가 있는데 그 소수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싶지 거죠. 게다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애인 특성에 관해서 같이 알고 있는 강사조차도 부족한 현실이고."

- 강○○

평생교육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를 재교육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정보대체수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생교육사가 조금만 신경써서 중재한다면 수화통역사나 점역자료, 확대자료 및 음성자료 등의 대체자료를 공급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평생교육사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 그리고 일반시민, 그리고 또한 전문적인 강사 이 부분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화통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프로그램에서 수화통역만 있으면 굉장히 열릴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 됐군요, 2011년도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신체장애가 있어서 접근을 못한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청각장애인은 굉장히 그냥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쪽이 청각장애인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반 공개특강 할 때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했어요. ---<중략>---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발효된 후에 일반 평생교육사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관점을 다시 한 번 전환하는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고."

- 신○○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부터 웹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우선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진 곳부터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점차 민간 교육기관들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일반 민간에 1,800여 개 서울에 이렇게 있어도 민간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 우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같은 것도 다 돼야 되잖아요. 웹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다 슬라이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독 설치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함께 통합이 되는 그런 걸로 접근을 우선해서 좀 나중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 신○○

시범적으로 모델 성격을 갖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평생교육기관이 4,000개가 넘고 서울에만 1,800개가 있으나 이는 거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직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라기보다 대부분 공공도서관에 이름만 걸거나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공간을 일부 막아서 형식만 갖춘 곳이 많아 장애인 평생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앞으로 짓는 평생교육기관부터라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 전국적으로 시범 기관들을 고르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이 법의 취지가 발달장애인들이 핵심적인 목표 집단이라면 제 생각에는 별도의 기관이 상징적으로라도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지. 이게 공공의 평생교육시설들. 그러니까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이나 혹은 시군구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고, 그 기관들 중에 새로 건물을 짓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경주만 해도 아주 큰 건물을 새로 짓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도 강동구나 몇 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관을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 경기도도 광명시가 새로 짓고 있고요. 그런 새로 짓는 평생학습관들은 적어도 장애인 평생교육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 관련된,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면,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별도로 몇 개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이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

교육청에서도 복지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연 2억 원 정도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가리지 않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교육에 관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년마다 70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고요. 그 기관마다 얼마씩 단가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기관 대부분이 복지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 김○○

학교 시설을 이용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장 흔한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다. 다만, 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의미인데, 현재의 학교관리자들이 잘 호응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 시설 개방을 요청할 경우 쉽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대상 보수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평생교육사들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평생교육사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있거든요. 여성도 그렇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노인복지관이라고 가면 노인 평생교육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혜 대상,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인 직업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 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134개 평생학습도시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넣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교육부에서 촉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중심에는 평생학습도시라는 정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프라 지표를 한번 넣는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시금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마. 소결

초점집단면담은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의 세 집단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생교육기관 또한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들을 요약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다르다. 성인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공통의 기대와 욕구도 있지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통합과 분리 선호, 지원 등에 있어서 기대나 욕구가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은 개별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제공인력에 대한 성인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낮다. 그 이유로는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나 폭이 좁고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전문성보다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렵다. 민간기관이거나 박물관 등의 경우 장애가 중증일 경우 의사소통이나 이동의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인 학습자를 거부한다. 이는 평소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설·설비 미비,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 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학교, 대학 등 사회적 평생교육 인프라 활용 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면담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며,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 내용들을 요약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수준 차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동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체학습자료 제공이나 수화통역(또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 및 접근성 개선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체제를 보급하는 한편, 교육기관을 대학이나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학습자들이며,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교육적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의 역량을 높이지 않는 한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제공인력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이 참여할만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나 체계적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가 면담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어디서나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관과 일반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장점을 교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며, 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첫째,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생교육 전문가의 교류·협력 부재와 기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보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복지시설과 평생교육기관들(평생학습관, 대학 등)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새로운 학습자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가의 협력과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양성과정과 재교육 체계가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 평생교육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및 양성 커리큘럼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시설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영세하며, 수강료 의존률이 높은 민간기관들이어서 장애인 학습자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 활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심의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부처 간 경계를 낮추어서 현재 선진화된 체계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2. 설문조사

가. 조사 목적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요건의 구비, 정당한 편의를 포함한 교육 환경 정도, 평생교육기관 이용 기회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만족도, 교육권 신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총 637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이하 '이용자') 434명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 203명으로 하였다. 이용자는 모두 성인 장애인으로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 발달장애를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종사자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야학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 외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유사기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V-3〉과 같다.

〈표V-3〉 설문 조사 대상

대상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계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			발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뇌전증	내부장애	기타			
수	147	123	50	36	21	79	14	6	5	22	4	40	203	637
소계	434												203	

다. 조사 도구의 개발

조사 도구는 문헌분석과 초점 집단 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협의회에서 1차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4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2차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 도구는 대상에 따라 이용자용과 종사자용의 두 가지를 개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용 설문지를 변형시킨 발달장애인용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1) 이용자용 조사 도구

이용자용 조사 도구 중 일반장애인용은 일반사항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도를

포함한 다섯 개 영역에 47개 문항 7개 추가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Ⅴ-4〉와 같다.

〈표Ⅴ-4〉 일반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추가질문)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장애발생시기, 장애유형, 장애등급, 학력, 취업상태, 월평균 소득	9(1)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도	참여 경험, 정보 취득 매체,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참여 기간, 참여 비용,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에 대한 만족,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 직원과 강사의 태도에 대한 만족, 평생교육기관의 편의제공에 대한 만족, 수강 프로그램의 효과, 평생교육기관의 분포,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접근성, 수강 등록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편의제공 요청 경험과 만족	27(5)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평생교육의 목적,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권리 및 보장 수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필요성	5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참여 형태, 평생교육 참여 시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	4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책임 부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	2(1)
계		47(7)

이용자용 조사 도구 중 발달장애인용은 일반사항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도를 포함한 다섯 개 영역에 7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Ⅴ-5〉와 같다.

〈표Ⅴ-5〉 발달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영역	질문	문항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최종학력 학교형태, 장애유형, 장애등급	7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도	참여 경험, 참여 프로그램 종류, 참여 기관, 참여 프로그램 만족 여부, 참여 프로그램 불편 사항에 대한 수정 요구	7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참여 형태, 평생교육 참여 시간, 참여하고 싶은 장소	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영역	질문	문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효과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 식사 준비, 집안 청소 및 빨래, 물건 사기, 계산 능력, 규모 있는 금전 사용, 취미활동, 시간 및 약속 지키기, 문해력, 대화, 자기 의사, 예절, 도움 청하기, 사교, 놀이 등	24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 식사 준비, 집안 청소 및 빨래, 물건 사기, 계산 능력, 규모 있는 금전 사용, 취미활동, 시간 및 약속 지키기, 문해력, 대화, 자기 의사, 예절, 도움 청하기, 사교, 놀이 등	31
계		72

2) 종사자용 조사 도구

종사자용 조사 도구는 일반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포함한 네 개 영역에 32개 문항 6개 추가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Ⅴ-6〉과 같다.

〈표Ⅴ-6〉 일반장애인용 조사 도구의 구성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추가질문)
일반사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지역, 소속기관 유형, 소지자격증, 고용형태, 경력	8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의 목적,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권리 및 보장 수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필요성	5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정부의 평생교육 지원 부처와 지원 실태 및 만족 여부, 평생교육 대상 모집 방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장애인 수강자에 대한 편의 제공 실태, 연간 장애인 수강자 현황, 장애인 수강자 장애유형, 연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조달 방법, 장애인 수강자 등록 거부 경험과 이유, 연간 장애인 수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장애인들의 선호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비중,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 여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수행의 애로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타 기관과의 협력 분야와 정도	16(4)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책임 부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	3(2)
계		32(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조사 도구는 인터넷과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였으며, 회수 방법도 온라인,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청각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수화통역사의 지원이 있었으며, 시각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조사도구를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도구의 제공과 회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적에 따라 종사자용, 당사자용, 발달장애인용 각각의 설문지를 항목에 맞게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유형별 및 기관종사자의 자격증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X2 검정, t-test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마. 조사 결과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분석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중 연구에 참여한 300명 중 응답자는 203명으로 회수율은 67.7%였다. 응답자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현황

(1) 인구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종사자 중 여성은 136명으로 67%, 남성은 33%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내용은 〈표V-7〉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7〉 종사자 성별

구분	빈도(명)	구성비(%)
남성	67	33.0
여성	136	67.0
합계	203	100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약 36세이며, '31세~40세' 68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30세' 64명(33.6%), '41세~50세' 49명(25.7%), '51세~60세' 10명(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내용은 〈표Ⅴ-8〉과 같다.

〈표Ⅴ-8〉 종사자 연령

구분	빈도(명)	구성비(%)
20세~30세	64	33.5
31세~40세	68	35.6
41세~50세	49	25.7
51세~60세	10	5.2
합계	191	100.0

평균(M)=35.72(SD=9.30)

종사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27명(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 48명(24.0%), '전문대학 졸업' 15명(7.5%), '고등학교 졸업' 10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대한 내용은 〈표Ⅴ-9〉와 같다.

〈표Ⅴ-9〉 종사자 학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고등학교 졸업	10	5.0
전문대학 졸업	15	7.5
대학교 졸업	127	63.5
대학원 졸업 이상	48	24.0
합계	2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응답자의 거주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는 97명(48.5%), '중소도시' 77명(38.5%), 농어촌 24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 V-10〉과 같다.

〈표V-10〉 종사자 거주지

구분	빈도(명)	구성비(%)
대도시	97	48.5
중소도시	77	38.5
농어촌	24	12.0
기타	2	1.0
합계	200	100.0

(2) 업무관련 특성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이 93명(47.0%)으로 제일 많았으며, '장애인 야학' 29명(14.6%)과 '지역사회복지관' 29명(14.6%), '학교부설' 11명(5.6%), '지자체' 9명(4.5%), '학교' 6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대한 내용은 〈표V-11〉과 같다.

〈표V-11〉 종사자 소속기관

구분		빈도(명)	구성비(%)
평생교육기관	학교	6	3.0
	학교부설	11	5.6
	시민단체부설	3	1.5
	언론기관부설	2	1.0
	지자체	9	4.5
	지식인력개발	1	0.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1.5
	장애인야학	29	14.6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훈련기관	1	0.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복지관	93	47.0
	지역사회복지관	29	14.6
기타		11	5.6
합계		198	100.0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가 152명(74.9%)으로 제일 많으며, '평생교육사' 35명(17.2%)가 두 번째로 많으며, '기타 공인자격증' 소지자가 26명(12.8%), '상담사' 14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Ⅴ-12〉와 같다.

〈표Ⅴ-12〉 종사자 자격증

구분	빈도(명)	구성비(%)
평생교육사	35	17.2
사회복지사	152	74.9
특수교육 교사	9	4.4
상담사	14	6.9
치료사	9	4.4
청소년지도사	9	2.5
직업재활사	5	2.5
기타 공인자격	26	12.8
없음	14	6.9

※ 중복응답

응답한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155명(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은 34명(17.0%)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Ⅴ-13〉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13〉 종사자 고용형태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정규직	155	77.5
비정규직	34	17.0
기타	11	5.5
합계	200	100.0

종사자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평균 3년 7개월의 업무경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종사자는 44명(26.5%)이며, '1년 이하'의 경력자는 그보다 2명 많은 46명(27.7%)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경력연수에 대한 내용은 〈표V-14〉와 같다.

〈표V-14〉 종사자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1년 이하	46	27.7
1년 이상-2년 미만	31	18.7
2년 이상-3년 미만	20	12.0
3년 이상-4년 미만	19	11.4
4년 이상-5년 미만	6	3.6
5년 이상	44	26.5
합계	166	100.0

평균(M)=44.77(SD=46.2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평균 3년 1개월의 업무경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종사자는 38명(20.1%)이며, '1년 이하'의 경력자는 그보다 25명 많은 63명(33.3%)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담당업무와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업무는 1년 이하의 업무경력을 가진 종사자가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경력연수에 대한 내용은 〈표V-15〉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15〉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1년 이하	63	33.3
1년 이상-2년 미만	31	16.4
2년 이상-3년 미만	24	12.7
3년 이상-4년 미만	23	12.2
4년 이상-5년 미만	10	5.3
5년 이상	38	20.1
합계	189	100.0

평균(M)=44.77(SD=46.25)

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1) 운영실태

(가) 현 지원 정부 부처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부처는 '기타부처'라는 응답이 64명(33.7%)으로 제일 많았으며, '보건복지부'가 50명(26.3%), '교육부' 38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지원받는 부처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38명(20.0%)이다. 현 지원부처에 대한 내용은 〈표Ⅴ-16〉과 같다.

〈표Ⅴ-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부처

구분	빈도(명)	구성비(%)
교육부	38	20.0
보건복지부	50	26.3
기타부처	64	33.7
지원받는 부처가 없음	38	20.0
합계	19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구체적 지원 항목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구체적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비 지원'이 115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4명(16.7%), '인력지원' 24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지원 항목에 대한 내용은 〈표Ⅴ-17〉과 같다.

〈표Ⅴ-17〉 정부 지원 항목

구분	빈도(명)	구성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4	16.7
운영비 지원	115	56.7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14	6.9
시설 및 장비 제공	17	8.4
강사 정보 제공	12	5.9
인력 지원	24	11.8
프로그램 홍보	15	7.4
기타	5	2.5
합계	203	100.0

※ 중복응답

(다) 지원 관련 만족도

현재 정부 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평균 2.26(SD=1.16)으로 '별로 아니다'의 평균 의견을 엿볼 수 있다. '별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종사자가 57명(32.2%), '보통' 51명(28.8%), '전혀 아니다' 41명(23.2%), '약간 그렇다' 24명(13.6%), '매우 그렇다' 4명(2.3%)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지원관련 만족도는 〈표Ⅴ-18〉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1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만족도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전혀 아니다	41	23.2
별로 아니다	57	32.2
보통	51	28.8
약간 그렇다	24	13.6
매우 그렇다	4	2.3
합계	177	100.0

(2) 운영방법

(가) 모집방법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주요방법으로는 '전단지 및 안내지'를 이용하는 종사자가 55명(28.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모집하는 종사자는 54명(28.0%), '직원 교육생들의 개인적 소개' 20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18명(9.3%)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주요 모집방법이 세부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Ⅴ-19〉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 방법

구분	빈도(명)	구성비(%)
인터넷 홈페이지	54	28.0
신문 잡지	5	2.6
전단지 안내지	55	28.5
포스터 현수막	19	9.8
평생학습소식지	6	3.1
직원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20	10.4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18	9.3
별도 모집방법이 없음	6	3.1
기타	10	5.2
합계	193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운영 장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기관 내부 공간'에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164명(87.8%)이며, 기관 외부 유상임대 공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8명(4.3%)이며, 외부 무상임대 공간 사용은 5명(2.7%)이다. 운영 장소에 관한 세부내용은 〈표Ⅴ-20〉과 같다.

〈표Ⅴ-2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분	빈도(명)	구성비(%)
기관 내부 공간	164	87.8
기관 외부 유상임대 공간	8	4.3
기관 외부 무상임대 공간	5	2.7
기타	10	5.3
합계	187	100.0

(다) 편의제공

① 편의제공 만족도

응답자 중 장애인 수강자에 대한 편의 제공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약간 그렇다'가 88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46명(23.7%)이다. 편의제공 만족도에 관한 세부내용은 〈표Ⅴ-21〉과 같다.

〈표Ⅴ-21〉 장애인 수강자 편의 제공 만족도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전혀 아니다	4	2.1
별로 아니다	14	7.2
보통	46	23.7
약간 그렇다	88	45.4
매우 그렇다	42	21.6
합계	194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② 장애인 수강자에게 불충분한 편의제공 이유

그렇다면, 불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의 부족'이 59명(32.4%)이며, '교통편의의 불충분한 제공'은 49명(26.9%)이다. 불충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유 세부 내용은 〈표V-22〉와 같다.

〈표V-22〉 장애인 수강자에게 불충분한 편의제공 이유

구분	빈도(명)	구성비(%)
편의시설	33	18.1
보조인력	59	32.4
학습환경	22	12.1
교구 교재	11	6.0
교통편의	49	26.9
기타	8	4.4
합계	192	100.0

(라) 평생교육 참여자의 장애 유형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27명(35.1%)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V-23〉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구성비(%)
시각장애	4	5.2
청각장애	4	5.2
지체장애	27	35.1
발달장애	29	37.7
기타	13	16.9
합계	77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운영비 조달 방법

운영비 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금'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95명(54.3%)이며, '후원금'이 34명(19.4%), '수강료' 31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방법의 세부사항은 〈표V-24〉와 같다.

〈표V-24〉 운영비 조달 방법

구분	빈도(명)	구성비(%)
수강료	31	17.1
후원금	34	19.4
지원금	95	54.3
기타	15	8.6
합계	175	100.0

(바) 수강 거부

① 장애인 수강생 거부

응답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강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7명(19.5%)이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53명(80.5%)으로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V-25〉 장애인 수강생 거부 경험

구분	빈도(명)	구성비(%)
경험 있음	37	19.5
경험 없음	153	80.5
합계	190	100.0

② 거부 사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5명은 '해당 장애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로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강사 및 보조인력의 부족'이 11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26〉 장애인 평생교육 거부 사유

구분	빈도(명)	구성비(%)
편의시설 부족	6	16.2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1	2.7
해당 장애인의 자격이나 능력부족	15	40.5
강사 및 보조 인력의 부족	11	29.7
기타	4	10.8
합계	37	100.0

(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수

2015년 기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수는 2.32(SD=1.1)이다. 최소 0개의 프로그램에서 최대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표Ⅴ-2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분	평균(개수)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2.32	1.1	0	4

② 선호 프로그램

장애인의 선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이 1순위이며, '직업능력교육'이 2순위, '기초문해교육'이 3순위로 나타났다.

〈표Ⅴ-28〉 선호 프로그램

구분	빈도(명)	구성비(%)
기초문해교육	74	39.8
학력보완교육	22	11.8
직업능력교육	78	41.9
문화예술교육	154	82.8
인문교양교육	51	27.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빈도(명)	구성비(%)
시민참여교육	16	8.6
기타	7	3.8

※ 중복응답

③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선정 기획'이 136명(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선정 기획'으로 운영한다가 23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V-29〉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 대상의 교육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선정·기획	136	75.6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기획	15	8.3
지원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선정·기획	23	12.8
기타	6	3.3
합계	203	100.0

(3) 종사자 업무활동

(가) 업무비중

① 업무비중

종사자의 업무비중을 우선 살펴보면, 응답자의 32.3%인 63명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른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부가적임'이 47명(24.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32명(16.4%)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30〉 업무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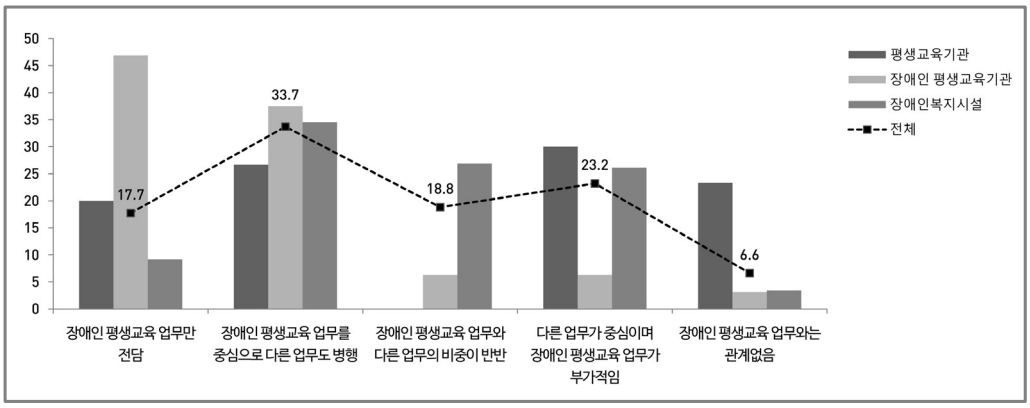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전담	32	16.4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	63	32.3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 다른 업무의 비중이 반반	35	17.9
다른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부가적임	47	24.1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는 관계없음	18	9.2
합계	195	100.0

②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은 “다른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부가적임”으로 답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장애인 야학은 46%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34%이상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Ⅴ-31〉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전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 다른 업무의 비중이 반반	다른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부가적임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는 관계없음
평생교육기관	20.0	26.7	0.0	30.0	23.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6.9	37.5	6.3	6.3	3.1
장애인복지시설	9.2	34.5	26.9	26.1	3.4
전체	17.7	33.7	18.8	23.2	6.6



[그림V-1] 기관유형별 업무비중

(나) 업무수행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 응답자는 '약간 그렇다'가 90명(47.4%), '보통'이 58명(30.5%), '매우 그렇다'가 26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8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32〉 업무수행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전혀 아니다	3	1.6
별로 아니다	13	6.8
보통	58	30.5
약간 그렇다	90	47.4
매우 그렇다	26	13.7
합계	203	100.0

평균=3.52(SD=1.0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장애요인

① 전반적 장애요인

응답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기관 외적인 장애요인과 기관 내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전반적 평균치인 3.30(보통 이상)을 기준으로 기관 외 장애요인 3.41점이 기관 내 장애요인 3.18보다 평균 2.3점 높아 밖의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33〉 전반적 장애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장애요인	3.30	0.85
기관 외 장애요인	3.41	1.02
기관 내 장애요인	3.18	0.78

② 기관유형별 장애요인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평균 0.3점 이상으로 업무상 전반적인 장애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기관 내·외적인 장애요인이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최대 0.57점 차이가 나타났다.

〈표Ⅴ-34〉 기관유형별 장애요인

구분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3.25(1.52)	3.64(1.02)	3.61(0.88)
기관 외 장애요인	3.26(1.36)	3.83(1.29)	3.30(0.79)
기관 내 장애요인	3.14(1.25)	3.49(0.99)	3.46(0.64)

③ 기관 외 측면 장애요인

기관유형별에 따라서 기관 외 장애요인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다른 두 기관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부족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장 높은 평균으로(4.09)로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표Ⅴ-35〉 기관 외 측면 장애요인

구분		평생교육기관(c)	장애인 평생교육기관(a)	장애인 복지시설(b)	F(p)
기관 외 측면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3.14(1.52)	3.61(1.51)	3.20(0.98)	3.82 (0.024)*
	지역 관계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3.63(1.49)	3.70(1.48)	3.26(0.84)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	3.44(1.52)	4.09(1.44)	3.68(1.02)	
	법 체계의 혼란	2.78(1.47)	3.82(1.61)	3.11(0.90)	

*** p<.001,** p<.01, *p<.05 Duncan a>b,c

④ 기관 내 측면 장애요인

기관 내 장애요인의 차이를 종사자의 역량, 기관 내 여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세 가지의 영역 중 환경적 측면이 기관 유형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7*). 환경적 측면의 열악한 부분 중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낸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4.24)으로 이것은 기관 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과 연결하여 기관 내·외적으로 공통적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종사자의 역량의 영역 안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3.64)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부족'(3.61)이 다음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앞서서 중복업무 중 하나로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종사자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여겨진다. 기관 내 여건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3.79)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강사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36〉 기관 내 측면 장애요인

구분		평생교육기관 (c)	장애인 평생교육기관(a)	장애인 복지시설(b)	F(p)
종사자 역량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3.03(1.49)	3.18(1.23)	3.45(0.94)	1.407 (0.248)
	과중한 업무 부담/다른 업무와의 중복	3.13(1.43)	3.64(1.31)	3.61(1.06)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	3.13(1.33)	3.61(1.06)	3.43(1.00)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어려움	3.09(1.40)	3.05(1.19)	3.13(1.00)	
기관 내 여건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	3.03(1.59)	3.79(1.36)	3.74(0.99)	1.613 (0.20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3.41(1.41)	3.27(1.39)	3.41(1.0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3.09(1.46)	3.36(1.45)	3.45(1.04)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 부족	3.22(1.43)	3.73(1.37)	3.43(1.02)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2.81(1.35)	2.79(1.24)	3.17(0.97)	
환경적 측면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3.44(1.41)	4.24(1.14)	3.67(0.99)	3.370 (0.037)*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부족	3.28(1.44)	3.76(1.37)	3.53(0.9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열악성	2.91(1.48)	3.52(1.37)	3.36(1.00)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협력 기관 및 시설 부족	3.25(1.43)	3.76(1.22)	3.43(0.97)	

*** p<.001,** p<.01, *p<.05 Duncan a>b,c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타 기관과의 협력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기관 유형별 타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에서는 '교·강사 등의 인적자원 교류' 협력이 4.19점으로 세부 항목 중 제일 높게 나왔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에서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4.15)이 타 기관과의 협력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은 시급한 과제이다.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Ⅴ-37〉과 같다.

〈표Ⅴ-37〉 타 기관과의 협력

구분		평생교육기관 (c)	장애인 평생교육기관(a)	장애인 복지시설(b)	F(p)
타 기관과의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등 인적자원의 교류	3.63(1.45)	4.00(1.29)	4.19(0.83)	1.283(0.28)
	장애인 평생교육 공간·시설·장비 등 물적 자원의 교류	3.56(1.43)	3.91(1.30)	4.03(0.8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3.72(1.44)	4.15(1.30)	3.94(0.85)	
	장애인 평생학습축제 등 공동 이벤트 사업 추진	3.59(1.50)	3.82(1.26)	3.63(0.8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3.75(1.52)	4.15(1.30)	3.98(0.82)	
	공동홍보, 정보 교환, 학습안내 등 정보 자원 교류	3.78(1.49)	3.94(1.45)	3.96(0.79)	

*** p<.001, ** p<.01, *p<.0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1)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

(가) 전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해 '자립생활 능력 향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1명(45.0%)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여가 취미 생활' 51명(25.2%) 순으로 나타났다.

〈표V-38〉 평생교육의 목적

구분	빈도(명)	구성비(%)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51	25.2
자립생활 능력 향상	91	45.0
취업능력 향상	6	3.0
여가 및 취미생활	51	25.2
장애인 돌봄을 통한 가족의 휴식	1	0.5
기타	2	1.0
합계	2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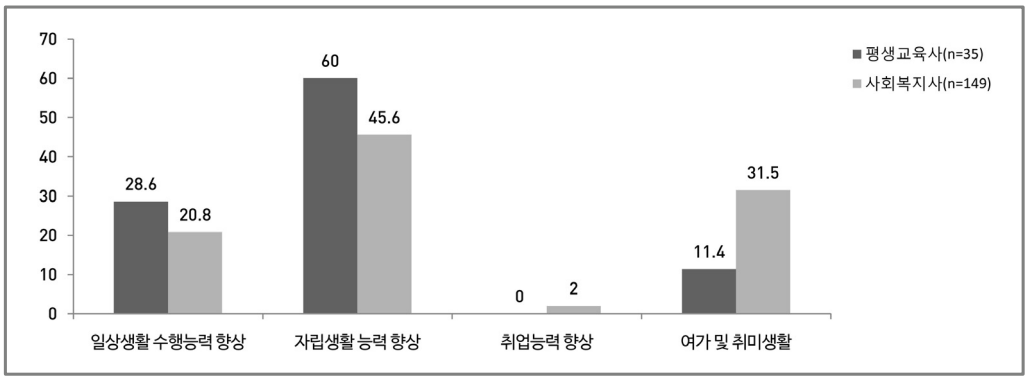
(나) 종사자 유형별

종사자 유형별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의 60%,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종사자의 45.6%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V-39〉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구분	평생교육사(n=35)	사회복지사(n=149)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28.6	20.8
자립생활 능력 향상	60.0	45.6
취업능력 향상	0.0	2.0
여가 및 취미생활	11.4	3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2]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2) 정의

(가) 전체

종사자가 내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6명으로 37.4%였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이 60명 29.6%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자립생활을 하며, 사회 안에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을 평생교육활동이라 연관 지을 수 있다.

〈표Ⅴ-40〉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60	29.6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 발달 및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20	9.9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76	37.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들이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19	9.4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24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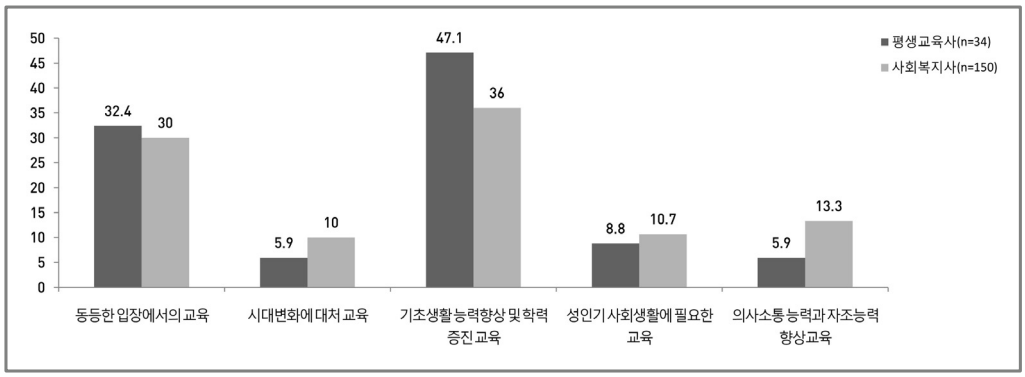
(나) 종사자 유형별

자격증 소지 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정의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사의 47.1%, 사회복지사의 36%가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정의로 답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은 32.4%의 평생교육사와 30%의 사회복지사가 응답하였다.

〈표Ⅴ-41〉 종사자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구분	평생교육사(n=34)	사회복지사(n=150)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32.4	30.0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 발달 및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5.9	10.0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47.1	36.0
장애인들이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8.8	10.7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5.9	13.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V-3] 종사자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3) 인식도

(가) 전체

평생교육권과 관련된 인식도를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라고 당연히 인식하는 것으로 답하였다(평균= 4.49점).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3.57점).

〈표V-42〉 평생교육권 인식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39	0.85
귀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4	1.003
귀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7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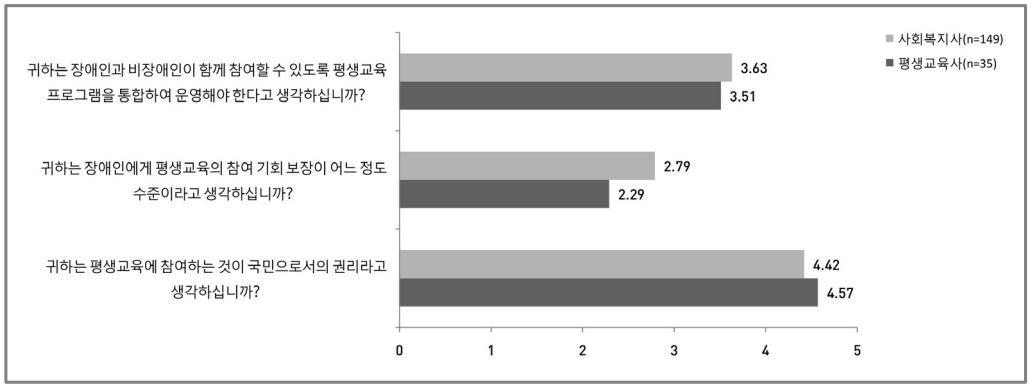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종사자 유형별(복수응답)

기관 종사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라고 당연히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을 가장 높게 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43〉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권 인식도

구분	평생교육사(n=35)	사회복지사(n=149)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57(0.84)	4.42(0.75)
귀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9(1.04)	2.79(0.93)
귀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1(1.48)	3.63(1.05)



[그림Ⅴ-4] 종사자 유형별 평생교육권 인식도

라)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1) 관련 부처의 적절성

장애인 평생교육의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의 적절성에 대하여 '교육부'가 96명(50.0%), '보건복지부'가 93명(48.4%)으로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44〉 관련 부처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교육부	96	50.0
보건복지부	93	48.4
기타	3	1.6
합계	192	100.0

(2) 기관 유형별 증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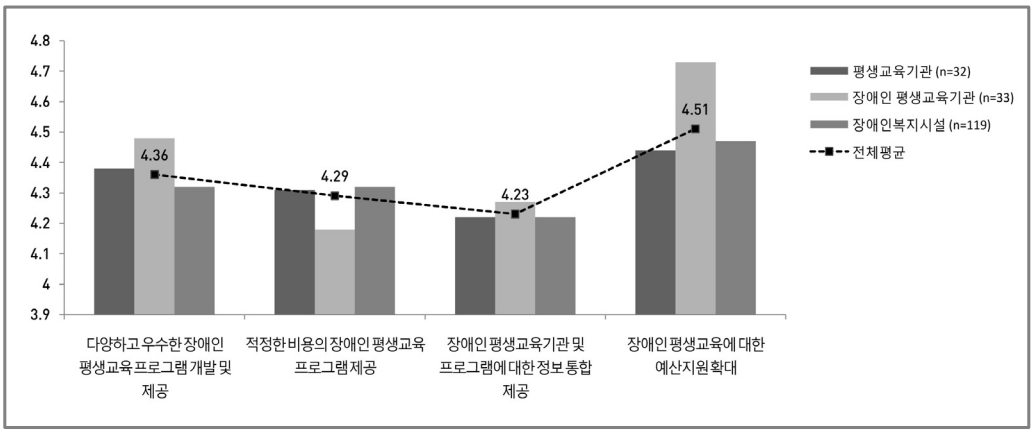
(가)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기관 유형별 증진요소를 살펴보면, 인적· 물적 제공 증진 강화 영역에서는 기관유형 모두 '예산지원 확대'가 평균 4.5점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관리증진 강화영역을 살펴보면,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이 제일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 등의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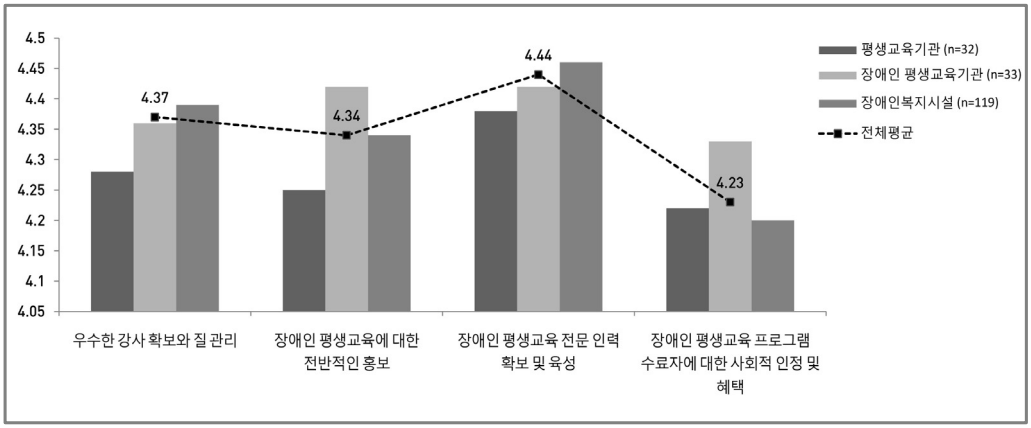
〈표Ⅴ-45〉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구분		평생교육기관 (n=3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n=33)	장애인복지시설 (n=119)
인적·물적 제공 증진 강화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38(1.28)	4.48(1.25)	4.32(0.75)
	적정한 비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4.31(1.25)	4.18(1.33)	4.32(0.7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통합 제공	4.22(1.28)	4.27(1.30)	4.22(1.30)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4.44(1.26)	4.73(0.97)	4.47(0.75)
관리 증진 강화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	4.28(1.30)	4.36(1.29)	4.39(0.7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4.25(1.27)	4.42(1.27)	4.34(0.68)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4.38(1.26)	4.42(1.27)	4.46(0.7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혜택	4.22(1.31)	4.33(1.33)	4.20(0.8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5]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그림Ⅴ-6] 기관별 증진강화요소

(나)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기관유형별, 우선 순위한 증진요소를 살펴보면 '예산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및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으로 공통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46〉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구분	평생교육기관 (n=3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n=33)	장애인복지시설 (n=118)
1순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37.5%)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63.6%)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3.2%)
2순위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4.4%)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9.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22.0%)
3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12.5%)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3.0%)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 (19.5%)

(3) 기관유형별 정책과제

(가) 기관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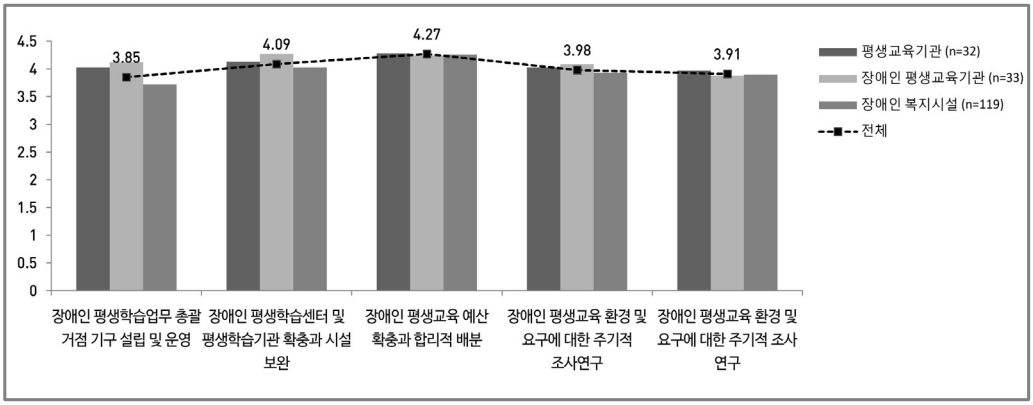
기관별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이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증진강화 측면에서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표Ⅴ-47〉 기관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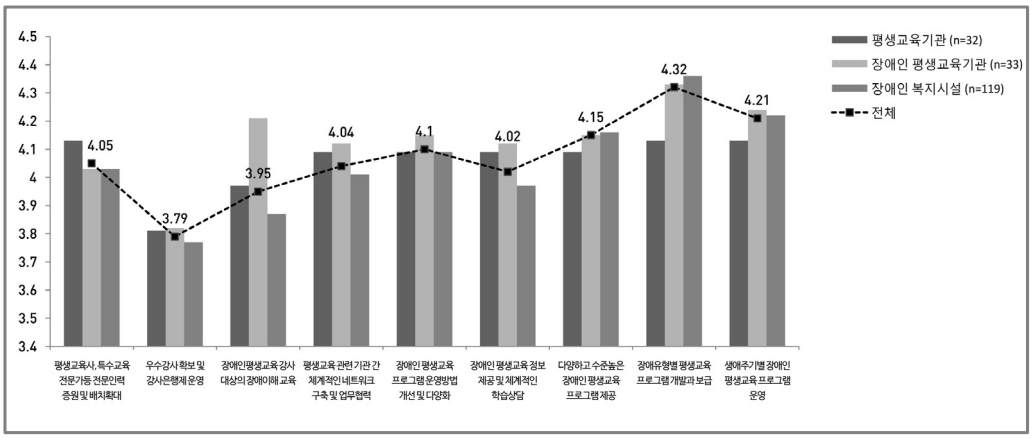
구분		평생교육기관 (n=3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n=33)	장애인 복지시설 (n=119)
환경적 측면 강화 정책	장애인 평생학습업무 총괄 거점 기구 설립 및 운영	4.03(1.30)	4.12(1.45)	3.72(0.85)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4.13(1.23)	4.27(1.44)	4.03(0.81)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4.28(1.25)	4.24(1.48)	4.26(0.78)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및 요구에 대한 주기적 조사 연구	4.03(1.28)	4.09(1.46)	3.93(0.82)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및 요구에 대한 주기적 조사 연구	3.97(1.33)	3.88(1.43)	3.90(0.8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평생교육기관 (n=3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n=33)	장애인 복지시설 (n=119)
프로그램 증진 강화 정책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4.13(1.23)	4.03(1.44)	4.03(0.87)
	우수강사 확보 및 강사은행제 운영	3.81(1.25)	3.82(1.50)	3.77(0.90)
	장애인평생교육 강사 대상의 장애이해 교육	3.97(1.28)	4.21(1.45)	3.87(0.9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력	4.09(1.25)	4.12(1.45)	4.01(0.7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 및 다양화	4.09(1.27)	4.15(1.41)	4.09(0.78)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상담	4.09(1.27)	4.12(1.43)	3.97(0.82)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4.09(1.27)	4.15(1.48)	4.16(0.84)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13(1.30)	4.33(1.49)	4.36(0.75)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13(1.28)	4.24(1.48)	4.22(0.80)



[그림Ⅴ-7] 기관별 정책과제



[그림Ⅴ-8] 기관별 정책과제

(나)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기관별 증진요소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기관은 예산과 시설,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시설확충, 예산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예산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장애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지원이 시급한 부분 과제로 나타났다.

〈표Ⅴ-48〉 기관별 증진요소 우선순위

구분	평생교육기관(n=3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n=33)	장애인복지시설(n=118)
1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순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3순위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설문에 참여한 43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과 만족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요구사항,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프로그램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남성은 224명으로 51.6%, 여성은 48.4%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내용은 〈표Ⅴ-49〉와 같다.

〈표Ⅴ-49〉 이용자자 성별

구분	빈도(명)	구성비(%)
남성	224	516
여성	210	48.4
합계	434	100

(2) 연령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약 43세이며, '31세~40세' 137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41세~50세' 104명(23.9%), '20세~30세' 86명(19.8%), '51세~60세' 62명(14.3%), '61세~' 45명(101%), '~19세' 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내용은 〈표Ⅴ-50〉과 같다.

〈표Ⅴ-50〉 이용자 연령

구분	빈도(명)	구성비(%)
~19세	2	0.5
20세~30세	86	19.8
31세~40세	137	31.5
41세~50세	104	23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빈도(명)	구성비(%)
51세~60세	62	14.3
61세~	45	10.1
합계	436	100

평균(M)=43.55(SD=31.099)

(3) 거주지

응답자의 거주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는 185명(43.6%), '중소도시' 171명(40.3%), 농어촌 64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Ⅴ-51〉과 같다.

〈표Ⅴ-51〉 거주지 유형

구분	빈도(명)	구성비(%)
대도시	185	43.6
중소도시	171	40.3
농어촌	64	15.1
기타	4	0.9
합계	424	100.0

(4) 장애를 입은 연령

이용자의 장애를 입은 평균 연령은 약 14세이며, '0세(선천적 장애)' 147명(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19세' 127명(31.3%), '20세~30세' 63명(15.5%), '31세~40세' 30명(7.4%), '41세~50세' 18명(4.4%), '51세~60세' 11명(2.7%), '61세~' 9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연령에 대한 내용은 〈표Ⅴ-52〉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52〉 장애를 입은 평균 연령

구분	빈도(명)	구성비(%)
0세(선천적)	147	36.2
1세~19세	127	31.3
20세~30세	63	15.5
31세~40세	30	7.4
41세~50세	18	4.4
51세~60세	11	2.7
61세~	10	2.5
합계	406	100

평균(M)=13.828(SD=17.987)

(5) 장애유형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47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가 123명(25.3%)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세부사항은 〈표Ⅴ-53〉과 같다.

〈표Ⅴ-53〉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구성비(%)
신체장애	지체장애	147	30.2
	뇌병변장애	123	25.3
감각장애	시각장애	50	10.3
	청각장애	36	7.4
	언어장애	21	4.3
정신장애	지적장애	79	16.2
	정신장애	14	2.9
	자폐성장애	6	1.2
기타장애	뇌전증	5	1.0
	내부장애	2	0.4
	기타	4	0.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 장애등급

응답자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191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2급' 118명(26.9%), '3급' 82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9%를 차지한다.

〈표V-54〉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구성비(%)
1급	191	43.6
2급	118	26.9
3급	81	18.7
4급	14	3.2
5급	17	3.9
6급	7	1.6
합계	428	100

(7) 최종 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51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65명(15.1%), '무학' 53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대한 내용은 〈표V-55〉와 같다.

〈표V-55〉 최종학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무학	53	12.3
초등학교 중퇴	26	6.0
초등학교 졸업	29	6.7
중학교 중퇴	16	3.7
중학교 졸업	36	8.4
고등학교 중퇴	16	3.7
고등학교 졸업	151	35.1
대학교 중퇴	15	3.5
대학교 졸업	65	15.1
대학원(석사)이상	23	5.3
합계	430	1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8) 일 유무

응답자 중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명(68.3%), '현재 일을 한다'는 응답은 133명(31.7%)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내용은 〈표V-56〉과 같다.

〈표V-56〉 일 유무

구분	빈도(명)	구성비(%)
예	133	31.7
아니오	287	68.3
합계	420	100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과 만족도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유무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6명으로 84.7%, 없는 경우는 15.3%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21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감각장애가 응답자 중 85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5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있음	366	84.7
없음	66	15.3
합계	432	100

〈표V-58〉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구분	있음	없음
신체장애(n=252)	214(84.9%)	34(13.5%)
감각장애(n=92)	85(87.6%)	12(12.4%)
정신장애(n=89)	70(78.7%)	17(19.1%)
기타장애(n=11)	10(90.9%)	1(9.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203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홈페이지' 45명(12.6%),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21명(5.9%) '전단지안내지' 13명(3.7%), '포스터현수막, 평생학습소식지' 9명(2.5%), 'TV, 라디오' 7명(2.0%), '신문잡지' 6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도로 장애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4명(1.1%), '기타' 39명(10.7%)의 응답이 있었다.

장애유형별과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203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내용은 〈표Ⅴ-59〉, 〈표Ⅴ-60〉, 〈표Ⅴ-61〉과 같다.

〈표Ⅴ-59〉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명)	구성비(%)
인터넷, 홈페이지	45	12.6
신문, 잡지	6	1.7
TV, 라디오	7	2.0
전단지, 안내지	13	3.7
포스터, 현수막	9	2.5
평생학습소식지	9	2.5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203	57.0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21	5.9
별도로 장애인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4	1.1
기타	39	11.0
합계	356	1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6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구분	신체장애(n=252)	감각장애(n=92)	정신장애(n=89)	기타장애(n=11)
인터넷, 홈페이지	12.3	14.3	7.7	22.2
신문, 잡지	2.3	0.0	0.0	0.0
TV, 라디오	2.7	1.2	0.0	0.0
전단지, 안내지	2.3	8.3	2.2	0.0
포스터, 현수막	2.7	2.4	1.3	11.1
평생학습소식지	3.2	2.4	0.0	0.0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55.9	48.8	67.69	66.7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17.7	20.2	20.5	0.0
별도로 장애인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0.9	2.4	0.0	0.0

〈표Ⅴ-61〉 참여 경험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구분	평생교육의 참여 경험 있음	평생교육의 참여 경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12.4	4.8
신문, 잡지	1.6	1.6
TV, 라디오	1.9	0.0
전단지, 안내지	3.6	0.0
포스터, 현수막	2.5	0.0
평생학습소식지	2.5	0.0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55.8	4.8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5.8	85.7
별도로 장애인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1.1	0.0

(3) 참여한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참여했던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야학'이 158명(43.2%)으로 가

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81명(22.1%), ‘장애인평생교육센터’ 27명(7.4%) ‘학교’ 26명(7.1%), ‘지자체(시·도 평생학습관 등)’ 13명(3.6%), ‘학교부설(대학 평생교육원등)’ 11명(3.0%), ‘사이버대학’ 9명(2.5%), ‘직업훈련기관’ 4명(1.1%), ‘지역사회복지관’ 3명(0.8%), ‘사업장부설(문화센터 등)’ 2명(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6명(4.4%)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가 참여했던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Ⅴ-62〉와 같다.

〈표Ⅴ-62〉 참여한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

구분	기관유형	빈도(명)	구성비(%)
평생교육 기관	학교	26	7.1
	학교부설(대학 평생교육원등)	11	3.0
	사이버대학	9	2.5
	사업장부설(문화센터 등)	2	.5
	시민단체부설	7	1.9
	지자체(시·도 평생학습관 등)	13	3.6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27	7.4
	장애인야학	158	43.2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81	22.1
	지역사회복지관	3	.8
	직업훈련 기관	4	1.1
합계		366	100

(4)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초문해교육(읽기·쓰기·셈하기 관련 교육, 생활기술교육 등)’이 175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스포츠, 문화, 음악, 미술, 풍선아트, 생활공예, 노래교실 등)’ 154명(24.2%), ‘인문교양교육(건강, 정보인터넷 교육, 인문학, 외국어, 예절, 문학, 철학, 심리학 등)’ 110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7.3%)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자격인증, 직무역량강화)’ 88명(13.8%),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시간등록제 등)’ 86명(13.5%), ‘시민참여교육(지역 이해 및 국가정책 이해 교육, 지역리더양성, 자원봉사 등)’ 24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참여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표Ⅴ-63〉과 같다.

〈표Ⅴ-63〉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분	빈도(명)	구성비(%)
기초문해교육	175	27.5%
학력보완교육	86	13.5%
직업능력교육	88	13.8%
문화예술교육	154	24.2%
인문교양교육	110	17.3%
시민참여교육	24	3.8%
합계	637	100.0%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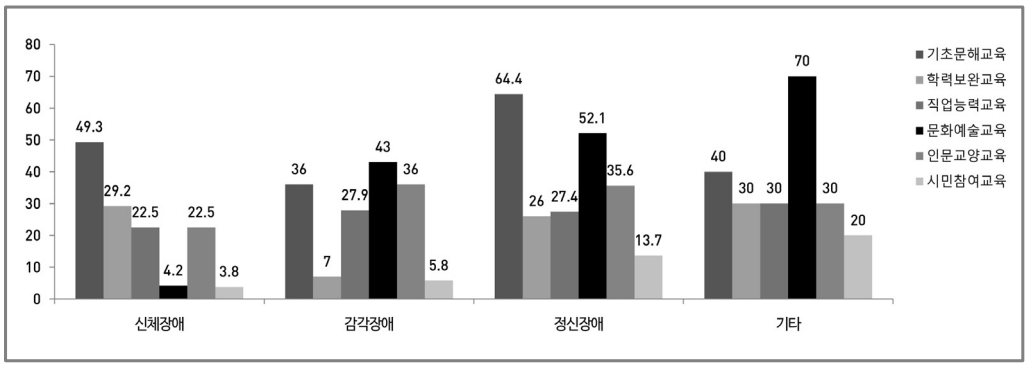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는 기초문해교육이 49.3%, 감각장애는 문화예술교육인 43.0%, 정신장애는 문화예술교육이 52.1%, 기타장애는 문화예술교육이 70%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표Ⅴ-64〉 장애유형별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신체장애	49.3	29.2	22.5	4.2	22.5	3.8
감각장애	36.0	7.0	27.9	43.0	36.0	5.8
정신장애	64.4	26.0	27.4	52.1	35.6	13.7
기타	40.0	30.0	30.0	70.0	30.0	2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9] 장애유형별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5)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

당사자가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로 나타나며, 이것은 여러 과정을 참여한 경우를 모두 합친 것이다.

〈표Ⅴ-65〉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

구분	평균(개월수)	표준편차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	38.18	39.341

(6)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 과정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이 235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3만원 이하' 33명(9.4%), '모르겠음' 30명(8.6%), '4~5만원' 21명(6.0%), '10만원 이상' 19명(5.4%), '6~10만원' 1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참여했던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표Ⅴ-66〉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66〉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

구분	빈도(명)	구성비(%)
없음	235	67.1
3만원 이하	33	9.4
4~5만원	21	6.0
6~10만원	12	3.4
10만원 이상	19	5.4
모르겠음	30	8.6
합계	350	100.0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에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73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 68명(21.8%),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낀다' 47명(15.1%), '많은 부담을 느낀다' 24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의 부담 정도에 대한 내용은 〈표Ⅴ-67〉과 같다.

〈표Ⅴ-67〉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 부담

구분	빈도(명)	구성비(%)
많은 부담을 느낀다	24	7.7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낀다	47	15.1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73	55.4
모르겠다	68	21.8
합계	312	100.0

(7) 전반적인 만족도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신청과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신청과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28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99명(29.0%), ‘보통이다.’ 94명(27.6%), ‘만족하지 않는다’ 12명(3.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나)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참여한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12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119명(33.0%), ‘보통이다.’ 105명(29.1%), ‘만족하지 않는다’ 9명(2.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 127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119명(33.1%), ‘보통이다.’ 90명(25.1%), ‘만족하지 않는다’ 13명(3.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0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 직원과 강사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시 직원과 강사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130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125명(34.8%), ‘보통이다.’ 84명(23.4%), ‘만족하지 않는다’ 12명(3.3%),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 평생교육기관의 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 평생교육기관의 편의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12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106명(29.4%), ‘매우 만족한다.’ 101명(28.0%), ‘만족하지 않는다’ 18명(5.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명(3.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바)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동안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 95명(26.5%), '도움이 되었다.' 81명(22.6%), '도움이 되지 않았다.' 9명(2.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충분성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 121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부족하다' 73명(20.5%), '보통이다' 72명(20.2%), '충분하다' 53명(14.9%), '매우충분하다' 37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아)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충분성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 108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78명(22.2%), '매우 부족하다' 69명(19.7%), '충분하다' 58명(16.5%), '매우충분하다' 38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자) 이용자가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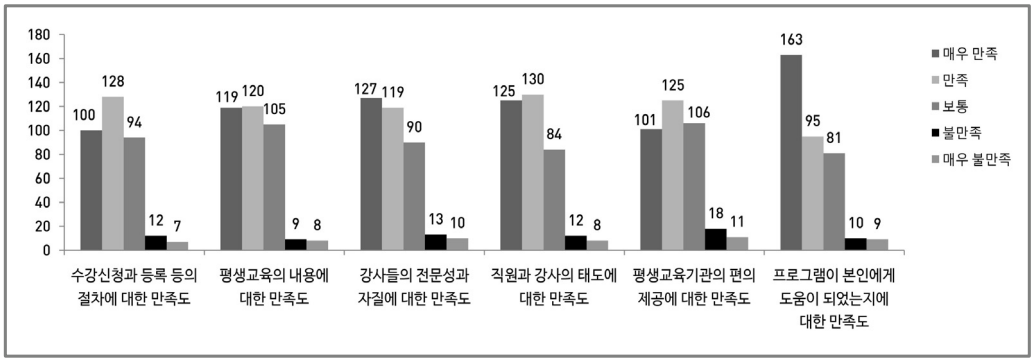
① 전체 응답자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6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 114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84명(23.7%), '매우 부족하다' 77명(21.7%), '충분하다' 43명(12.1%), '매우충분하다' 37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Ⅴ-68〉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68〉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균 (SD)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계	
수강신청과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100 (27.3)	128 (35.0)	94 (25.7)	12 (3.3)	7 (1.9)	26 (7.1)	366 (100.0)	1.97 (1.053)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119 (32.5)	120 (32.8)	105 (28.7)	9 (2.5)	8 (2.2)	5 (1.4)	366 (100.0)	2.05 (0.981)
강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만족도	127 (34.7)	119 (32.5)	90 (24.6)	13 (3.6)	10 (2.7)	6 (1.6)	366 (100.0)	2.02 (1.026)
직원과 강사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125 (34.2)	130 (35.5)	84 (23.0)	12 (3.3)	8 (2.2)	7 (1.9)	366 (100.0)	1.98 (0.989)
평생교육기관의 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	101 (27.6)	125 (34.2)	106 (29.0)	18 (4.9)	11 (3.0)	5 (1.4)	366 (100.0)	2.17 (1.029)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163 (44.5)	95 (26.0)	81 (22.1)	10 (2.7)	9 (2.5)	8 (2.2)	366 (100.0)	1.87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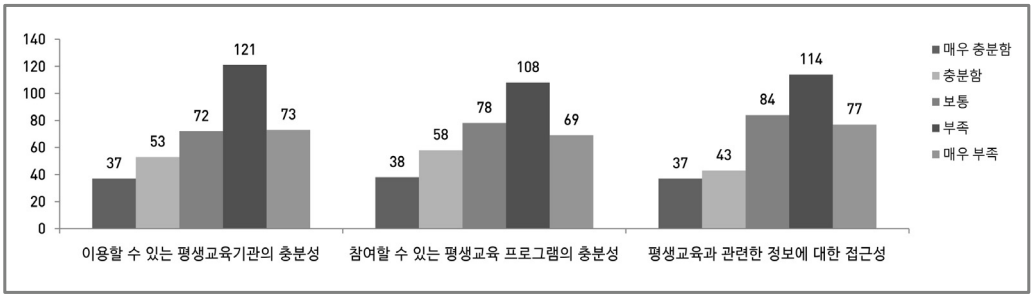


[그림Ⅴ-10]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69〉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충분성 및 정보의 접근성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균 (SD)
	매우 충분함	충분함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무응답	합계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충분성	37 (10.1)	53 (14.5)	72 (19.7)	121 (33.1)	73 (19.9)	10 (2.7)	366 (100.0)	3.30 (1.356)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충분성	38 (10.4)	58 (15.8)	78 (21.3)	108 (29.5)	69 (18.9)	15 (4.1)	366 (100.0)	3.18 (1.401)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37 (10.1)	43 (11.7)	84 (23.0)	114 (31.1)	77 (21.0)	11 (3.0)	366 (100.0)	3.32 (1.359)



[그림Ⅴ-11] 평생교육과 관련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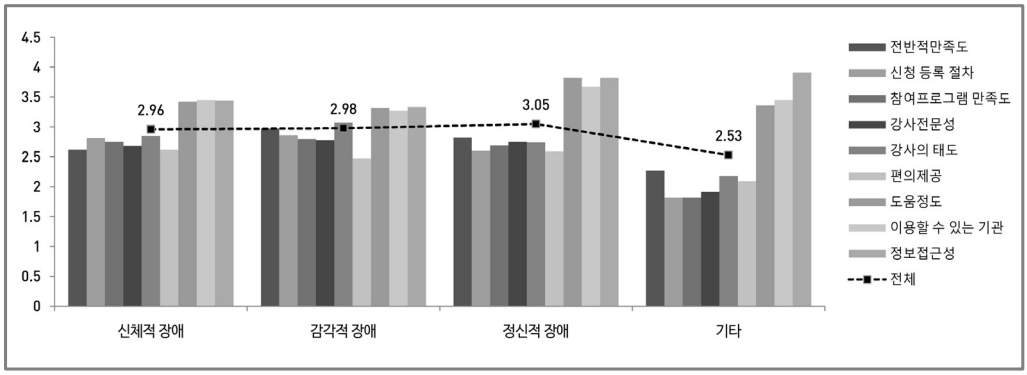
②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장애가 전반적 만족도가 제일 낮았으며(2.27점), 기타 세 부항목에도 기타장애가 2점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신체장애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2.62점으로 감각장애나 정신장애보다 0.2점 이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70〉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신청 등록 절차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강사 전문성	강사의 태도	편의 제공	도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정보 접근성
신체적 장애	2.62	2.81	2.75	2.68	2.85	2.62	3.42	3.45	3.44
감각적 장애	2.97	2.86	2.80	2.78	3.07	2.47	3.32	3.27	3.33
정신적 장애	2.82	2.60	2.69	2.75	2.74	2.59	3.82	3.67	3.82
기타	2.27	1.82	1.82	1.91	2.18	2.09	3.36	3.45	3.91



[그림Ⅴ-12]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만족도

(8) 비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록 시 거절 경험 유무

평생교육시설과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거절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복지시설 등록 거절 경험 9.8%보다 2배 이상인 22.8%가 평생교육시설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비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록 시 거절 경험에 대한 내용은 〈표Ⅴ-71〉과 같다.

〈표Ⅴ-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록 시 거절 경험 유무

구분	거절당한 경험이 있음	거절당한 경험 없음	시도한 경험이 없음
평생교육시설	22.8%	47.9%	29.3%
복지시설	9.8%	34.3%	55.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9)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 유무

평생교육시설과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요청 경험유무를 살펴보면, 요청한 경험이 있음은 평생교육시설이 47.4%로 복지시설(25.5%)이 요청한 것보다 2배 정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72〉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평생교육시설	47.4%	52.6%
복지시설	25.5%	74.5%

(10) 편의제공

(가)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 152명을 대상으로 어떤 편의 제공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근 및 이동 편의 관련(화장실 출입, 엘리베이터 사용 등)' 75명(51.7%), '학습 및 수강 편의 관련(점자자료, 수화통역사, 교육보조원, 강의실 조명 등)' 62명(42.8%), '기타' 8명(5.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접근과 이동과 관련된 편의 요청이 65.1%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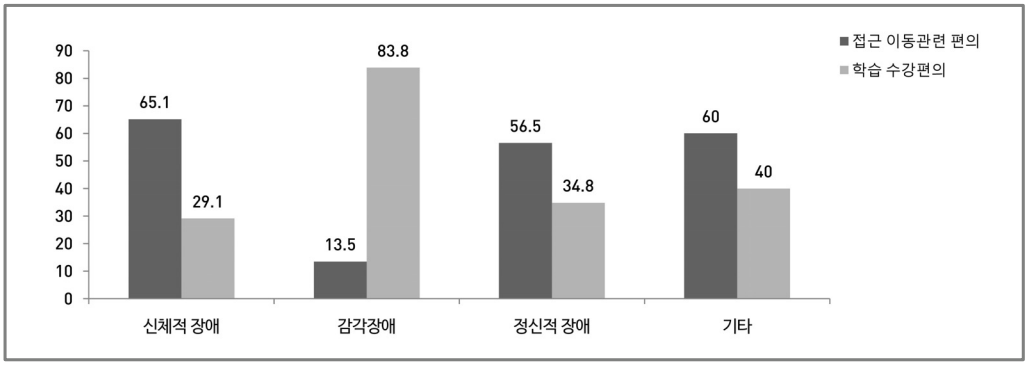
〈표Ⅴ-73〉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접근 및 이동편의 관련	75	51.7
학습 및 수강편의 관련	62	42.8
기타	8	5.5
합계	145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74〉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구분	접근 이동관련 편의(%)	학습 수강편의(%)
신체적 장애	65.1	29.1
감각장애	13.5	83.8
정신적 장애	56.5	34.8
기타	60.0	40.0



[그림V-13]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 종류

(나)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 152명을 대상으로 요청한 편의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공받았다' 64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만 제공 받았다' 58명(40.3%), '제공 받지 못했다' 2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표V-75〉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제공 받았다.	64	44.4
일부만 제공 받았다.	58	40.3
제공 받지 못했다.	22	1.3
합계	144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만족도

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 152명을 대상으로 요청한 편의를 제공 받았다면 그 결과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42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 38명(31.7%), '매우 만족한다' 31명(25.8%), '만족하지 않는다' 8명(6.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표V-76〉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만족도

구분	빈도(명)	구성비(%)
매우 만족한다.	31	25.8
만족한다.	38	31.7
보통이다.	42	35.0
만족하지 않는다.	8	6.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0.8
합계	152	100.0

(라) 요청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 152명을 대상으로 요청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부족' 38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기관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33명(21.7%), '해당기관의 인력 부족' 9명(5.9%), '기타' 6명(3.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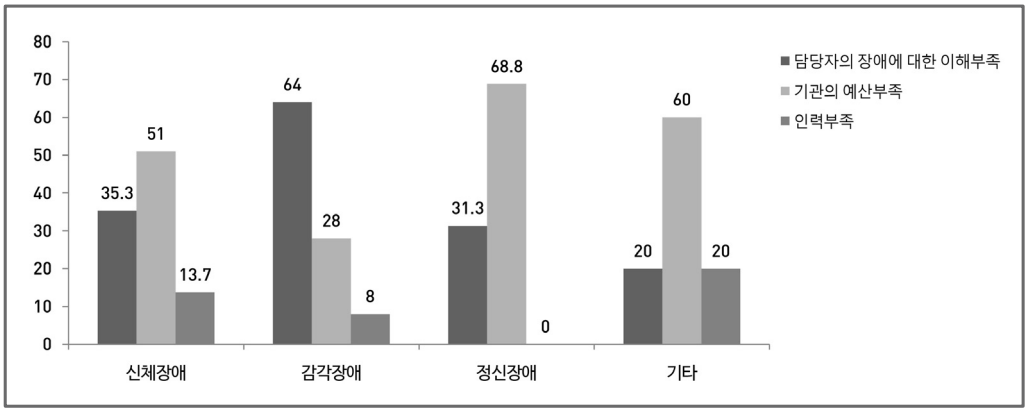
〈표V-77〉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구분	빈도(명)	구성비(%)
해당기관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33	21.7
해당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부족	38	25.0
해당기관의 인력부족	9	5.9
기타	6	3.9
합계	86	100.0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과반수 이상의 빈도수를 나타낸 장애는 신체장애(51.0%), 정신장애(68.8%), 기타장애(60.0%)로 나타났다.

〈표V-78〉 장애유형별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기관의 예산부족(%)	인력부족(%)
신체장애	35.3	51.0	13.7
감각장애	64.0	28.0	8.0
정신장애	31.3	68.8	0.0
기타	20.0	60.0	20.0



[그림V-14] 장애유형별 요청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이유

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1) 평생교육의 목적과 정의

(가) 목적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는 '자립생활 능력향상' 139명(33.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선택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향상' 92명(22.0%), '여가 및 취미생활' 84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79〉 평생교육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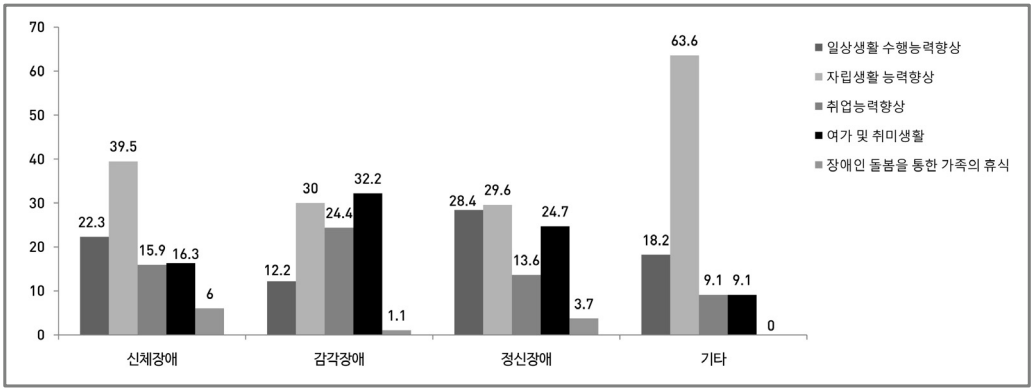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구성비(%)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92	22.0
자립생활 능력 향상	139	33.2
취업능력 향상	71	16.9
여가 및 취미생활	84	20.0
장애인 돌봄을 통한 가족의 휴식	19	4.5
기타	14	3.3
합계	419	100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립생활 능력향상"이 신체장애 39.5%, 감각장애 30%, 정신장애 29.6%, 기타장애 63.6%로 응답하였다. 감각장애에서는 32.2%가 "여가 및 취미생활"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Ⅴ-8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단위 : %)

	일상생활 수행능력향상	자립생활 능력향상	취업능력향상	여가 및 취미생활	장애인 돌봄을 통한 가족의 휴식
신체장애	22.3	39.5	15.9	16.3	6.0
감각장애	12.2	30.0	24.4	32.2	1.1
정신장애	28.4	29.6	13.6	24.7	3.7
기타	18.2	63.6	9.1	9.1	0.0



[그림Ⅴ-15]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목적

(나) 정의

장애인 당사자가 내린 평생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158명(38.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96명(23.1%),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55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V-81〉 평생교육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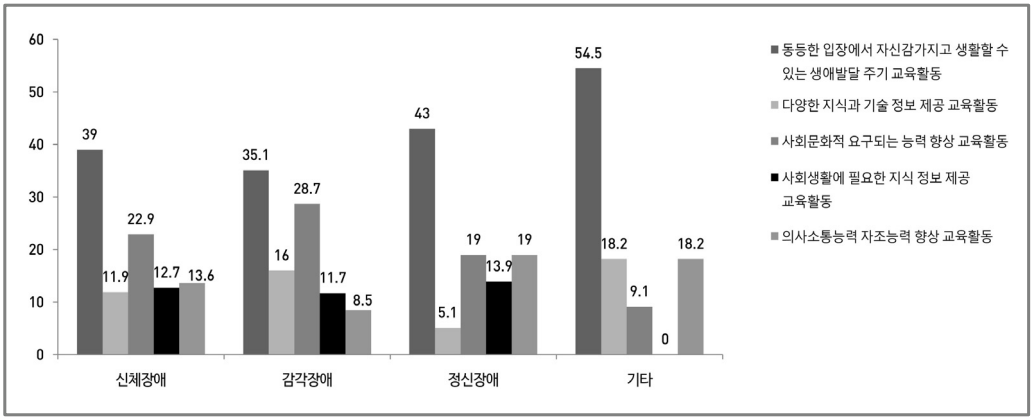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158	38.0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 발달 및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48	11.5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96	23.1
장애인들이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51	12.3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55	13.2
기 타	8	1.9
합 계	438	100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 모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82〉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정의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가지고 생활 할 수 있는 생애발달 주기 교육활동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 제공 교육활동	사회문화적 요구되는 능력 향상 교육활동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정보 제공 교육활동	의사소통능력 자조능력 향상 교육활동
신체장애	39.0	11.9	22.9	12.7	13.6
감각장애	35.1	16.0	28.7	11.7	8.5
정신장애	43.0	5.1	19.0	13.9	19.0
기타	54.5	18.2	9.1	0.0	18.2



[그림Ⅴ-16]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정의

(다) 권리, 참여기회 보장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참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로 196명(46.3%)이며, '그렇다' 112명(26.5%) 순으로 나타났다. 73%이상이 평생교육의 참여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83〉 평생교육 참여 권리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균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생교육의 참여는 국민의 권리	11 (2.6)	22 (5.2)	82 (19.4)	112 (26.5)	196 (46.3)	428 (100.0)	3.95 (1.26)

또한 현재의 평생교육의 참여기회 보장수준이 당사자가 느끼기엔 '보통이다'가 170명(40.6%)으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낮은편이다'가 98명(23.4%), '매우 낮은편이다' 79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응답자 438명 중 82%이상이 보통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V-84〉 평생교육 참여기회 보장수준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균 (SD)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합계	
평생교육의 참여기회 보장 수준	26 (6.2)	47 (11.2)	170 (40.6)	98 (23.4)	78 (18.6)	438 (100.0)	2.52 (1.20)

통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27명(74.4%)이며, '그렇지 않다'는 87명(19.9%)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V-85〉 통합프로그램 운영 필요

구분	빈도(명)	구성비(%)
그렇다	327	78.9
그렇지 않다	87	21.0
합계	414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할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로 응답한 사람은 215명(50.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누구와 함께 참여하든 상관없음'은 119명(28.1%), '장애인들끼리만' 67명(15.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Ⅴ-86〉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들끼리만	67	15.8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215	50.8
누구와 함께 참여하든 상관없음	119	28.1
잘 모르겠음	22	5.2
합계	4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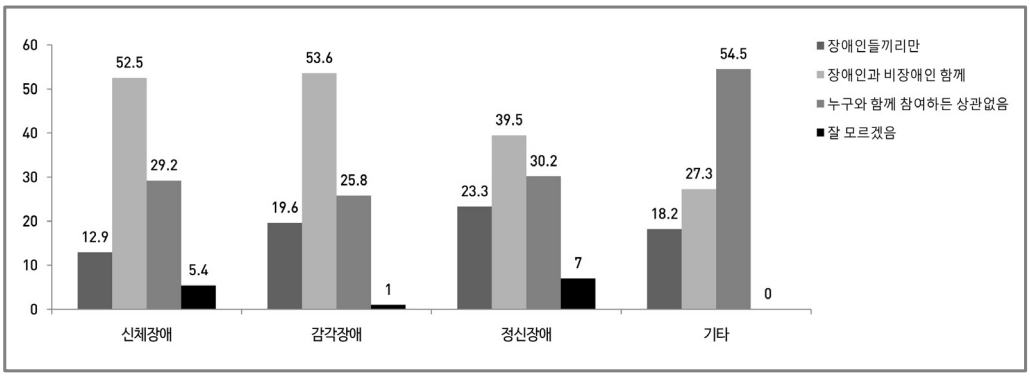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신체장애 52.5%, 감각장애, 53.6%, 정신장애 39.5%로 나타났다.

〈표Ⅴ-87〉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단위 : %)

	장애인들끼리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누구와 함께 참여하든 상관없음	잘 모르겠음
신체장애	12.9	52.5	29.2	5.4
감각장애	19.6	53.6	25.8	1.0
정신장애	23.3	39.5	30.2	7.0
기타	18.2	27.3	54.5	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17]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할 대상

(나) 교육 시간대

장애인 당사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간대에 대한 응답으로 오후시간의 교육을 원하는 응답자는 168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녁시간으로 응답한 사람은 90명(21.5%), '하루종일' 84명(20.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Ⅴ-88〉 교육 시간대

구분	빈도(명)	구성비(%)
오전시간만	77	18.4
오후시간만	168	40.1
저녁시간만	90	21.5
하루종일	84	20.0
합계	438	100.0

(다)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업교육' 82명(19.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78명(18.7%), '문해교육' 69명(16.5%), '여가교육' 67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89〉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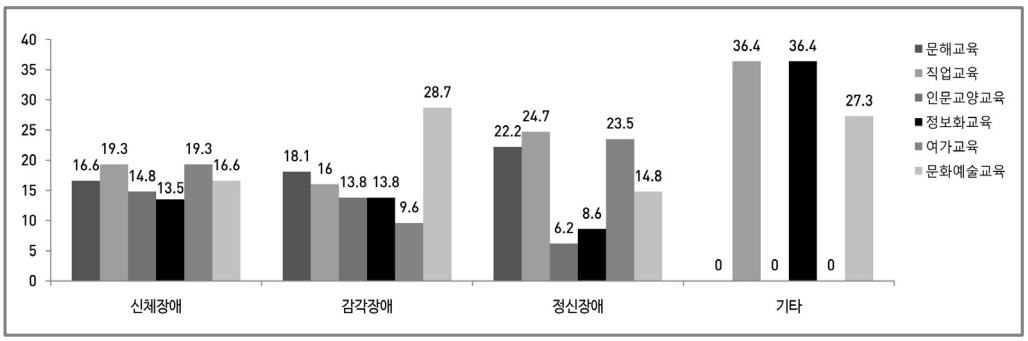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구성비(%)
문해교육	69	16.5
직업교육	82	19.7
인문교양교육	50	12.0
정보화교육	53	12.7
여가교육	67	16.1
문화예술교육	78	18.7
기타	18	4.3
합계	438	100.0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는 직업교육이 19.3%, 24.7%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감각장애는 문화예술교육이 28.7%로 높게 나타났다.

〈표Ⅴ-90〉 장애유형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

	문해교육	직업교육	인문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여가교육	문화예술교육
신체장애	16.6	19.3	14.8	13.5	19.3	16.6
감각장애	18.1	16.0	13.8	13.8	9.6	28.7
정신장애	22.2	24.7	6.2	8.6	23.5	14.8
기타	0.0	36.4	0.0	36.4	0.0	27.3



[그림Ⅴ-18] 장애유형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라)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 127명 30.5%로 나타났다. “도청, 시청,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87명 20.2%로 응답하였다. 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91〉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구분	빈도(명)	구성비(%)
도청, 시청,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83	20.0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29	7.0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127	30.5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	42	10.1
발달장애인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2	7.7
백화점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14	3.4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기관	48	11.5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25	6.0
기 타	16	3.8
합 계	4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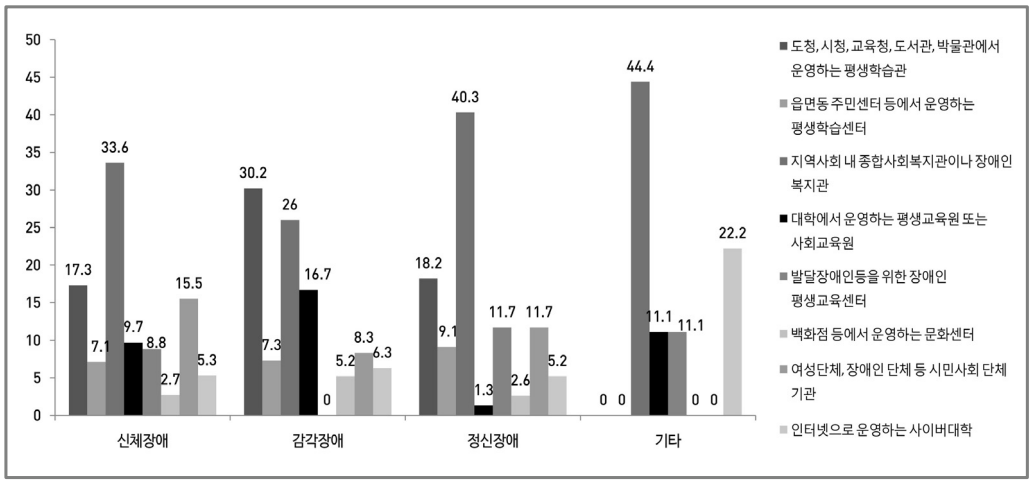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는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감각장애는 지역사회내 도청, 시청,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지하고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92〉 장애유형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단위 : %)

	도청, 시청,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센터	지역 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 기관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신체장애	17.3	7.1	33.6	9.7	8.8	2.7	15.5	5.3
감각장애	30.2	7.3	26.0	16.7	0.0	5.2	8.3	6.3
정신장애	18.2	9.1	40.3	1.3	11.7	2.6	11.7	5.2
기타	0.0	0.0	44.4	11.1	11.1	0.0	0.0	22.2



[그림Ⅴ-19] 장애유형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

마)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1) 관련 부처의 적절성

장애인 평생교육의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의 적절성에 대하여 종사자는 '교육부'가 220명(52.7%), '보건복지부'가 171명(41.0%)으로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93〉 관련 부처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교육부	220	52.7
보건복지부	171	41.0
기타	26	6.2
합계	438	100.0

(2) 증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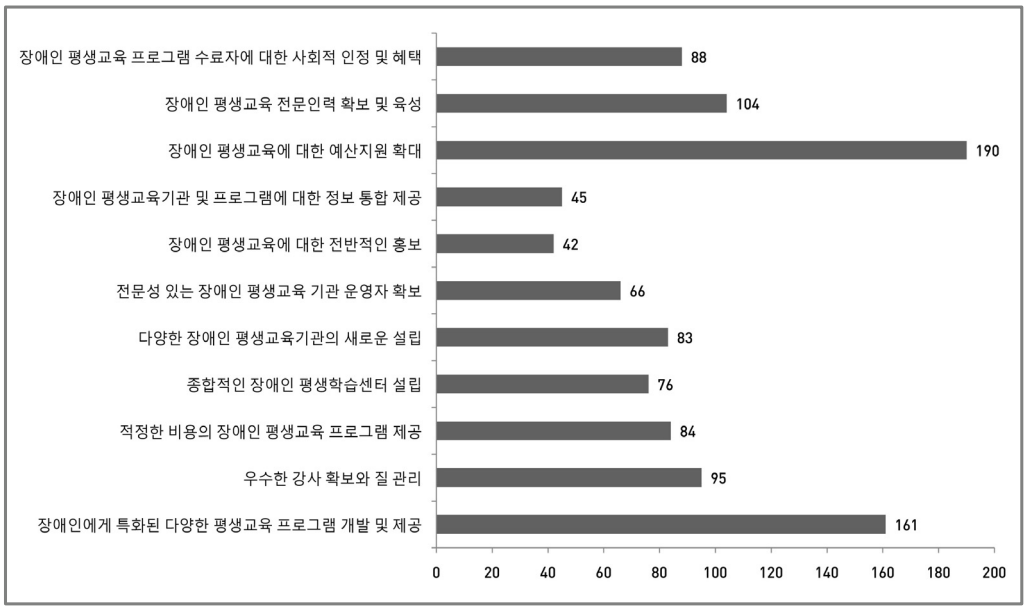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1순위로 161명의 응답자가 복수응답을 하였으며,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가 2순위로 95명이 복수 응답하였다. 또한, '적정한 비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3순위로 84명이 복수 응답하였다.

〈표V-94〉 증진 요소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61	15.6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	95	9.2
적정한 비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84	8.1
종합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립	76	7.4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새로운 설립	83	8.0
전문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확보	66	6.4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42	4.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통합 제공	45	4.4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190	18.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104	10.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혜택	88	8.5

* 중복응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20] 증진요소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분석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 중 설문에 참여한 7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학교 졸업 후 배운 것에 대한 생각, 평생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비장애인과 함께 교육, 교육 환경), 일상생활에 대한 능력 및 자립능력,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 하였다.

가) 발달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설문에 응답한 발달 장애인 중 여성은 44명으로 57.1%, 남성은 33명 42.9%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95〉 성별

구분	빈도(명)	구성비(%)
남성	33	42.9
여성	44	57.1
합계	77	100

(2) 연령

발달장애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35세이며, '20세~30세' 29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41세~50세' 19명(26.4%), '31세~40세' 13명(18.1%), '51세~60세' 7명(9.7%) 순으로 나타났다.

〈표V-96〉 연령

구분	빈도(명)	구성비(%)
20세~30세	29	40.3
31세~40세	13	18.1
41세~50세	19	26.4
51세~60세	7	9.7
61세 이상	4	5.6
합계	77	100.0

평균(M)=34.64(SD=15.94)

(3) 학력

발달장애인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2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14명(18.2%), '초등학교 졸업' 12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명(57.1%)가 일반학교를 다녔으며, 15명(19.5%)는 특수학교를 다녔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97〉 학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특수학교/일반학교 여부(명, %)
초등학교 졸업	12	15.6	일반학교 44(57.1) 특수학교 15(19.5)
중학교 졸업	14	18.2	
고등학교 졸업	32	41.6	
대학교 졸업	6	7.6	
무학	13	16.9	
합계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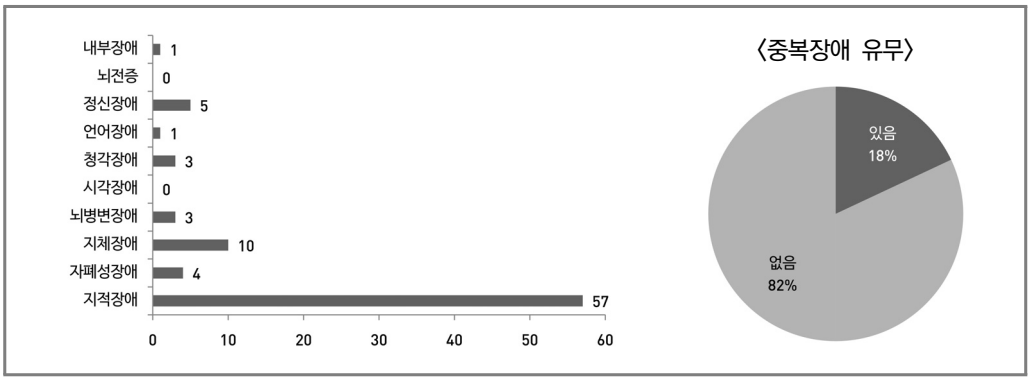
(4)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유무

발달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57명(6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10명(11.8%)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1명(66.2%)가 중복장애가 없었으며, 11명(14.3%)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유형의 세부사항은 〈표Ⅴ-98〉과 같다.

〈표Ⅴ-98〉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유무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중복장애 유무(명, %)
지적장애	57(67.1)	있음 11(14.3) 없음 51(66.2)
자폐성장애	4(4.7)	
지체장애	10(11.8)	
뇌병변장애	3(3.5)	
시각장애	0(0.0)	
청각장애	3(3.5)	
언어장애	1(1.2)	
정신장애	5(5.9)	
뇌전증	0(0.0)	
내부장애	1(1.2)	

* 중복응답



[그림V-21] 장애유형 및 중복장애 유무

(5) 장애등급

응답자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2급'이 27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급' 26명(34.7%), '1급' 15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5%를 차지한다.

〈표V-99〉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구성비(%)
1급	15	20.0
2급	27	36.0
3급	26	34.7
4급	3	4.0
5급	1	1.3
6급	1	1.3
모름	2	2.7
합계	77	100

나)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 및 생각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정규 학교를 졸업한 후에 평생교육을 경험하면서 배운 세부분야 및 유익성을 알아보았다. 유익성을 떨어지게 했던 사유 및 극복하기 위해 쉽게 말해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사유 역시 알아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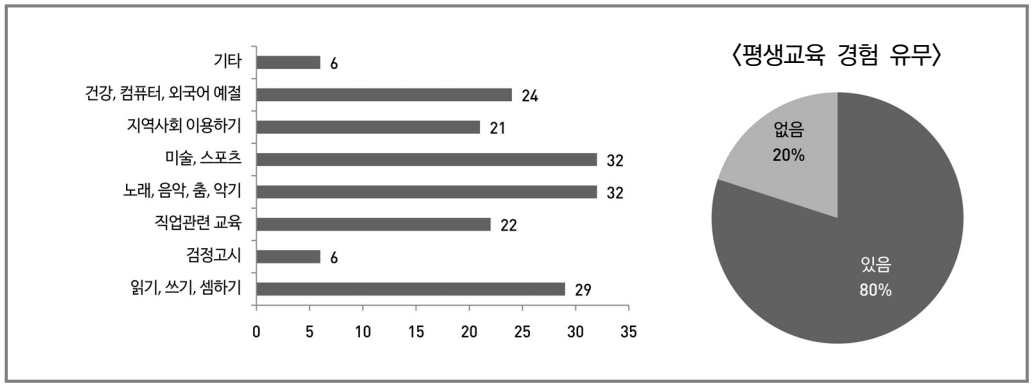
(1) 평생교육 경험 및 세부 교육 경험

응답자 중 56명(72.7%)가 졸업 후 평생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 내용은 '읽기, 쓰기, 셈하기' 29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노래, 음악, 춤, 악기' 및 '미술, 스포츠' 예체능 영역은 각 32명(18.5%)의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Ⅴ-100〉 평생교육 경험 및 세부 교육 경험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생교육 경험유무(명, %)
읽기, 쓰기, 셈하기	29(43.9)	있음 56(72.7) 없음 14(18.2)
검정고시	6(3.5)	
직업관련 교육	22(12.7)	
노래, 음악, 춤, 악기	32(18.5)	
미술, 스포츠	32(18.5)	
지역사회 이용하기	21(12.1)	
건강, 컴퓨터, 외국어 예절	24(13.9)	
기타	6(3.5)	

* 중복응답



[그림Ⅴ-22] 평생교육 경험 및 세부 교육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평생교육을 제공받은 장소

교육을 제공받은 장소를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34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센터' 역시 17명(27.9%)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

〈표Ⅴ-101〉 평생교육을 제공받은 장소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인복지관	34	55.7
스포츠센터	4	6.6
직업재활	2	3.3
평생교육센터	17	27.9
대학교	2	3.3
주간보호센터	2	3.3
학원	2	3.3
기타	3	4.9
모름	7	11.5
합계	77	100

(3) 평생교육의 유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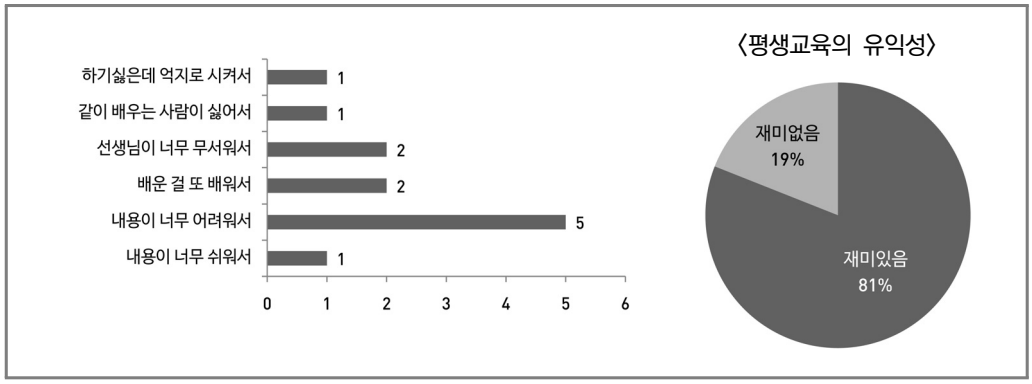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평생교육 유익성(재미없었던 사유)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미있다는 응답은 52명(70.1%)이며, 재미없었다는 응답은 13명(16.9%)으로 나타났다. 유익성을 해치는 사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움' 5명(41.7%)으로 나타났으며, '배운 걸 다시 배움' '선생님이 무서움'으로 각 2명(16.7%)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102〉 평생교육의 유익성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평생교육 유익성(명, %)
내용이 너무 쉬워서	1(8.3)	재미있음 54(70.1) 재미없음 13(16.9)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5(41.7)	
배운 걸 또 배워서	2(16.7)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2(16.7)	
같이 배우는 사람이 싫어서	1(8.3)	
하기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1(8.3)	

* 중복응답



[그림Ⅴ-23] 평생교육의 유익성

(4)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법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법(쉽게 말해달라고 하지 못한 사유)으로 지도자인 선생님께 쉽게 말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2명(59.7%)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19명(24.7%)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말하지 못한 사유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가 9명(52.9%)이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가 5명(23.5%)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에서는 지도자의 역량과 교수방법의 중요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 및 자신감 부족을 파악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V-103〉 평생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법

구분	빈도 및 구성비(명, %)	쉽게 말해달라고 요청 유무(명, %)
선생님이 무서워서	2(11.8)	있음 42(59.7) 없음 19(24.7)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	9(52.9)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4(23.5)	
혼날까봐 걱정되서	1(5.3)	
조용히 하라고 해서	1(5.3)	
말하면 안될꺼 같아서	2(10.5)	

* 중복응답

다) 추후 평생교육 과정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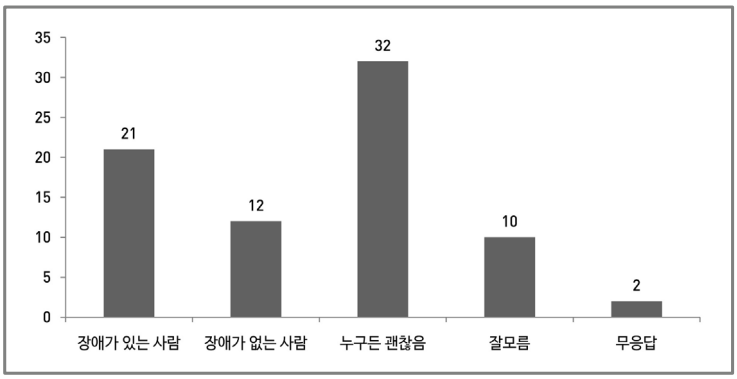
(1) 함께 하고 싶은 대상

평생교육 과정에서 추후 같이 하고 싶은 대상은 32명(42.7%)가 누구든 괜찮다고 답했으며, 21명(28.0%)은 당사자와 같은 장애인 그룹과 함께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함께 통합프로그램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12명(16.0%)으로 나타났다.

〈표V-104〉 함께 하고 싶은 대상

구분	빈도(명)	구성비(%)
장애가 있는 사람	21	28.0
장애가 없는 사람	12	16.0
누구든 괜찮음	32	42.7
잘모름	10	13.3
합계	77	1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Ⅴ-24] 함께 하고 싶은 대상

(2) 교육 시간대

평생교육 과정의 개선점 중 교육시간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응답자는 '낮 시간에만' 진행하는 교육을 31명(40.8%)가 선호하였다. 또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으면 원하는 응답자는 그보다 3명적은 28명(36.8%)으로 나타났다.

〈표Ⅴ-105〉 교육 시간대

구분	빈도(명)	구성비(%)
아침시간에만	12	15.8
낮 시간에만	31	40.8
저녁에만	2	2.6
하루 종일	28	36.8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3	3.9
합계	77	1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교육장소 변경

교육장소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41명(53.9%)이며, '하루 종일 같은 곳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은 24명(31.6%)으로 나타났다.

〈표V-106〉 교육장소 변경

구분	빈도(명)	구성비(%)
하루종일 같은 곳에서	24	31.6
아침과 낮은 서로 다른 곳에서	11	14.5
어디에서 해도 괜찮음	41	53.9
합계	77	100

라) 일상생활에 대한 능력 및 자립능력

응답자의 현재 자립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에게 예의 지키기'가 53명(6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서 버스, 지하철, 기차타기' 52명(67.5%), '노래, 악기, 그림 운동등 취미활동하기' 52명(67.5%)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응답자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예의를 지키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서 대중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예체능과 관련한 취미활동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잠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V-107〉 일상생활에 대한 능력 및 자립능력

구분	빈도(명)	구성비(%)
혼자서 교회나 성당, 절에 가기	48	63.2
혼자서 버스·지하철·기차를 타기	52	67.5
혼자서 밥하기	43	44.2
혼자서 반찬이나 국 만들기	29	37.7
혼자서 집안 청소하기	49	63.6
혼자서 빨래하기	39	50.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빈도(명)	구성비(%)
혼자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사기	46	59.7
돈 계산하기	32	41.6
내가 가진 돈 만큼만 쓰기	40	51.9
적금이나 예금 종류 알기	27	35.1
혼자서 은행 이용하기	32	41.6
노래, 악기, 그림, 운동 등 취미활동하기	52	67.5
시간 잘 지키기	48	62.3
사람들과 한 약속 지키기	48	62.3
글자를 읽고 쓰기	50	64.9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해하기	46	59.7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 이야기하기	43	55.8
싫은 것과 좋은 것 표현하기	51	66.2
사람들에게 예의 지키기	53	68.8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44	57.1
친구를 만들거나 친구 사귀기	46	59.7
친구들에게 힘든 것 이야기하기	34	44.2
친구들과 놀기	45	58.4
조립하거나 만들기	32	41.6

* 중복응답

마)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싶은 부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46명(59.7%)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취미나 여가활동 하는 방법' 44명(57.1%), '친구 만드는 방법' 41명(53.2%)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높이는 교육과정 보다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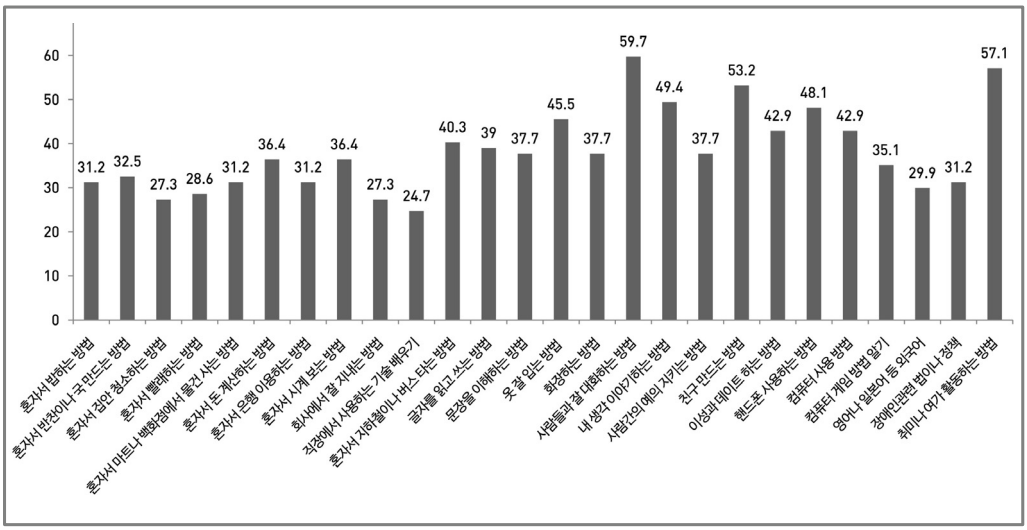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Ⅴ-108〉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

구분	빈도(명)	구성비(%)
혼자서 밥하는 방법	24	31.2
혼자서 반찬이나 국 만드는 방법	25	32.5
혼자서 집안 청소하는 방법	21	27.3
혼자서 빨래하는 방법	22	28.6
혼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방법	24	31.2
혼자서 돈 계산하는 방법	28	36.4
혼자서 은행 이용하는 방법	24	31.2
혼자서 시계 보는 방법	28	36.4
회사에서 잘 지내는 방법	21	27.3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 배우기	19	24.7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방법	31	40.3
글자를 읽고 쓰는 방법	30	39.0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	29	37.7
옷 잘 입는 방법	35	45.5
화장하는 방법	29	37.7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방법	46	59.7
내 생각 이야기하는 방법	38	49.4
사람간의 예의 지키는 방법	29	37.7
친구 만드는 방법	41	53.2
이성과 데이트 하는 방법	33	42.9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37	48.1
컴퓨터 사용 방법	33	42.9
컴퓨터 게임 방법 알기	27	35.1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23	29.9
장애인관련 법이나 정책	24	31.2
취미나 여가 활동하는 방법	44	57.1

* 중복응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V-25]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추후 배우고 싶은 부분

바. 소결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요건의 구비, 정당한 편의를 포함한 교육 환경 정도, 평생교육기관 이용 기회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만족도, 교육권 신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203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434명 등 총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첫째, 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45.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여가 및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2%로 동일하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는 6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는 45.6%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37.4%)으로 파악하거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29.6%)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경향은 평생교육사가 사회복지사들보다 더욱 강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교육을 우선시 하는 평생교육사와 복지적인 한 측면으로 인식하는 사회복지사 간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평생교육 측면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으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셋째, 종사자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보장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담당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등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부처와 지원 만족에 대해 종사자들이 밝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부처로는 '보건복지부'(26.3%)와 '교육부'(20.0%), 그리고 '기타 부처'(33.7%)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구체적 항목으로는 '운영비'(56.7%)가 가장 많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6.7%), '인력 지원'(11.8%) 순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아닌 기타 부처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자리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이를 관할하는 주무 부처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과반수이상(55.4%)이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종사자들이 밝히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참여자의 모집 방법으로 '전단지 및 안내지'(28.5%), '인터넷 홈페이지'(28.0%), '직원 및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소개'(10.4%)를 들었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는 대부분 '기관 내 공간'(87.8%)이며, 기관 외부의 공간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4.3%)도 있다.

(3)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 종사자들은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다(93.7%)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로 '보조인력의 부족'(32.4%), '교통편의의 불충분한 제공'(26.9%), '편의시설 미비'(18.1%)를 주요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4) 한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비율은 발달장애인이 37.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지체장애인(35.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는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54.3%로 높고 그 다음이 '후원금'(19.4%), '수강료'(17.1%) 순이다.

(6) 종사자들은 대부분(80.5%)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강을 거부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거부 경험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은 '해당 장애인의 자격이나 수강 능력 부족'(40.5%)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강사 및 보조 인력의 부족'(29.7%), '편의시설 부족'(1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종사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한 기관에서 보통 4개까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참여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며,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순위, '기초문해교육'이 3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인문교양교육'이 따르고 있다.

(8)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기획하는 방법으로는 75.6%가 '장애인 대상의 교육 요구조사를 통해 선정·기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정·기획'(12.8%)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들의 자격 및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능력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비장애인들과의 통합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교육요구(장애인의 자격 및 학습 능력 수준 부족으로 인한 기초문해교육 등)와 교육수혜자의 교육요구(문화예술교육 및 직업능력향상교육)와는 차별적인 인식이 나타남으로 인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학습 능력 및 자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학습능력 및 장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장애인들과의 통합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업무활동에 대해 종사자들이 밝히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들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주로 하지만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겸하여 맡고 있는 경우가 24.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16.4%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업무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맡은 경우가 46.9%이며,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37.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요인(어려움)을 기관 외 요인과 기관 내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기관 외 요인이 기관 내 요인보다 강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기관 외 장애요인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지역 관계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기관 내 장애요인의 경우 '종사자의 역량 측면'과 '기관 내 여건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종사자의 역량 측면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3.64)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부족'(3.61)이 다음으로 높다. 기관 내 여건 측면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3.79)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환경적 측면의 열악한 부분 중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4.24)이다. 이것은 기관 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과 연결하여 기관 내·외적으로 공통적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교·강사 등의 인적자원 교류' 협력 필요성을 제일 높게 꼽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 종사자들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4.15)을 타 기관과의 협력이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제도 및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방안들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발전계획 및 평생교육통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들을 삽입하여 국가적 관심을 표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종사자들은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50.0%)과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48.4%)이 비슷하다.

둘째,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확대'와 ②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④ '우수한 강사확보와 질 관리'에서 찾고 있다.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다 같이 중요한 요소를 ①-②-③ 순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②-①-④ 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②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③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④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⑤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고 있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①-②-③의 순위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④-②-①의 순위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④-①-⑤의 순위로 각각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생교육기관과 복지기관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접근 방법 및 성과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 예산 및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원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복지기관에서는 기반 시설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구분 보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강한 기관에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이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첫째, 이용자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33.2%)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22.0%)과 '여가 및 취미생활'(20.0%)이라는 생각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의 경우 '자립생활 능력향상'(39.5%)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22.3%) - '여가 및 취미생활'(16.3%)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감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여가 및 취미생활'(32.2%) - '자립생활능력 향상'(30.0%) - '취업능력 향상'(24.4%)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자립생활 능력향상'(29.6%)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28.4%) - '여가 및 취미생활'(24.7%)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체장애를 가진 이용자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이용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38.0%)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23.1%),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13.2%)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으로 파악하거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29.6%)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경향은 평생교육사가 사회복지사들보다 더욱 강하다. 장애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에 있어서도 1순위와 2순위의 인식은 동일하다.

셋째, 이용자 전체의 73% 이상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82% 이상의 이용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74.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첫째, 이용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소개'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57.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12.6%),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5.9%), '전단지 및 안내지'(3.7%)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도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소개'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모두 가장 높다.

둘째, 이용자들이 참여한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장애인 야학(43.2%)과 장애인 복지관(22.1%)의 비율이 가장 높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센터가 27.9%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들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초문해교육'이 27.5%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 24.2%, '인문교양교육' 17.3%, '직업능력향상교육' 13.8%, '학력보완교육' 13.5%, '시민참여교육' 3.8%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기초문해교육'(49.3%), 감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는 '문화예술교육'(43.0%),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는 '문화예술교육'(70.0%)을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72.5%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교육 내용은 '읽기, 쓰기, 셈하기'가 43.9%로 가장 많았다. '노래, 음악, 춤, 악기' 및 '미술, 스포츠' 예체능 영역은 18.5%가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넷째, 이용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이며, 이는 여러 과정에 참여한 것을 모두 포함한 기간이다.

다섯째, 이용자들이 지출한 평생교육 수강료는 무료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하'가 9.3%, '4~5만원' 6.0%, '10만원 이상' 5.4%, '6~10만원' 3.4% 순이었다. 여섯째, 이용자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끼고 있는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등록 등의 절차나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담당 강사들의 전문성과 자질 및 태도, 편의 제공 등에 대부분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만족을 보였다.
(2) 그러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2.7%가 보통 이하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 이용자들의 77.5%가 보통 이하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4)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이용자의 70.0%는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16.9%는 '재미없다'로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이 재미없는 이유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가 41.7%, 배운 걸 또 한다거나 '강사의 태도 때문'이 각각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편의제공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1) '이동 및 접근 편의 제공'(화장실 출입,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대한 요구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 및 수강 편의 제공'(점자자료, 수화통역사, 교육보조원, 강의실 조명 등)에 대한 요구가 42.8%로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이동과 접근 편의 제공 욕구(65.1%)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이용자가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는 44.4%이며, 일부만 제공받은 경우는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 제공을 요청한 이용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의 처리 사항에 대해 94.5%가 보통 또는 그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들은 그 이유를 해당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25.0%)이나 해당 기관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21.7%)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이용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이용자들은 50.8%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누구와 함께 해도 상관없다(28.1%)거나 장애인들과만 하기(15.8%)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감각장애인(53.6%)과 신체장애인(52.5%)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인(39.5%)은 비교적 적게 갖고 있는 편이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누구든 괜찮다'가 47.2%로 가장 높았으며, 28.0%는 이용자와 같은 발달장애인들만 함께 하고 싶어 하였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는 1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간으로 '오후만'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40.1%이며, '저녁 시간' 21.5%, '종일'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20.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오전'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18.4%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낮 시간'(오후)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40.8%, '종일' 36.9%로 나타났다.

(3) 이용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19.7%이며, '문화예술교육'이 18.7%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 '직업능력향상교육'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으며, 감각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참여하고 싶은 내용으로 이용자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59.7%가 희망하여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취미나 여가활동 하는 방법' 57.1%, '친구 사귀는 방법' 53.2% 순으로 나타났다.

(4) 이용자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기타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감각장애 이용자들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이용자들은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52.7%)이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41.0%)보다 높다.

둘째, 이용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18.4%)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15.6%),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10.1%)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사자와 이용자 간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면 〈표 V-109〉와 같다.

〈표Ⅴ-109〉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구분	종사자	이용자
평생교육의 정의	생애발달주기에 맞춰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관련부처의 적절성	교육부	교육부
평생교육 증진 강화 요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평생교육 정책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 및 합리적 배분/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6장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1.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
3. 영역별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4. 정책 개선 과제 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문헌분석과 조사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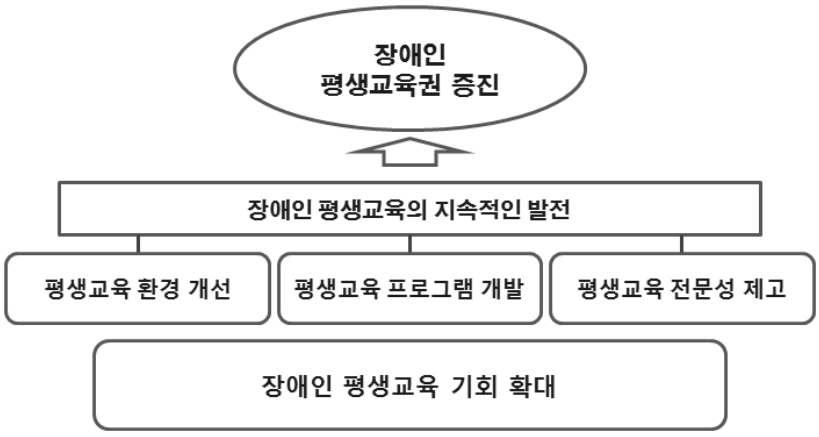
첫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평생교육기관을 통합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한 관련시설·설비를 마련하고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준수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충실히 제공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력 양성, 선발 및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인증평가제와 같은 정기 검증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V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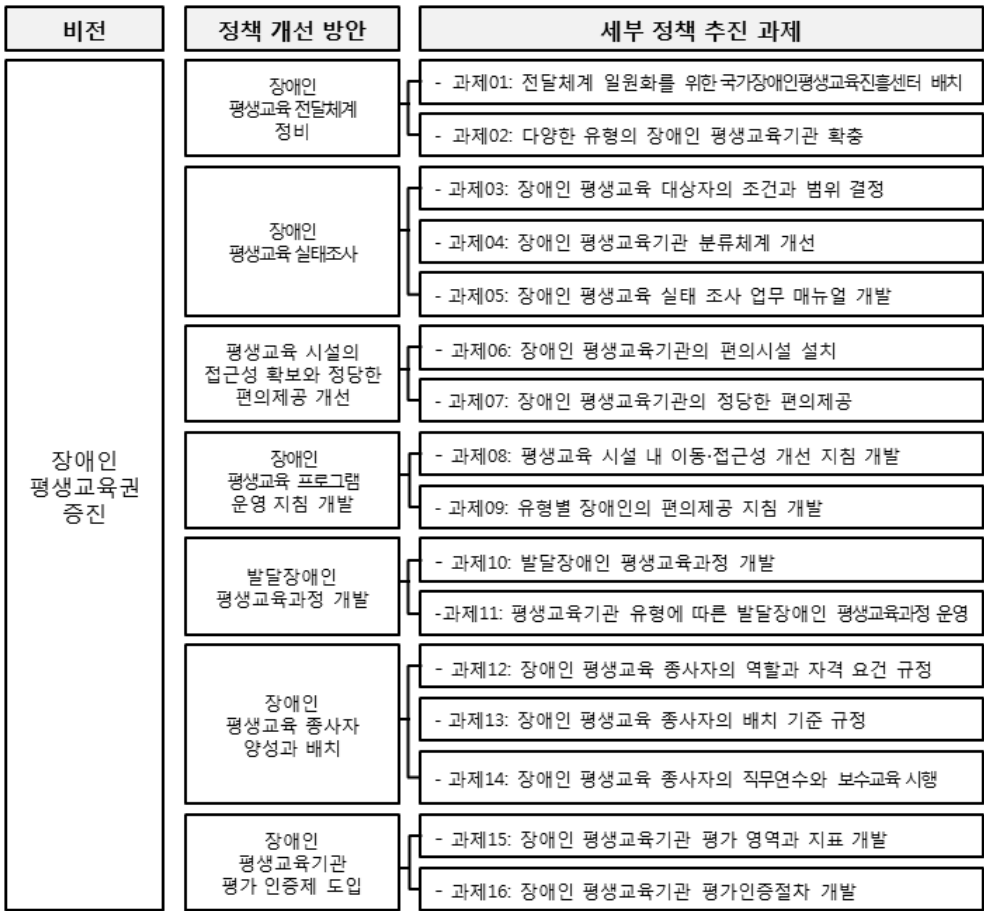


[그림Ⅵ-1]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체계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

이상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별 세부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그림VI-2]와 같다.



[그림VI-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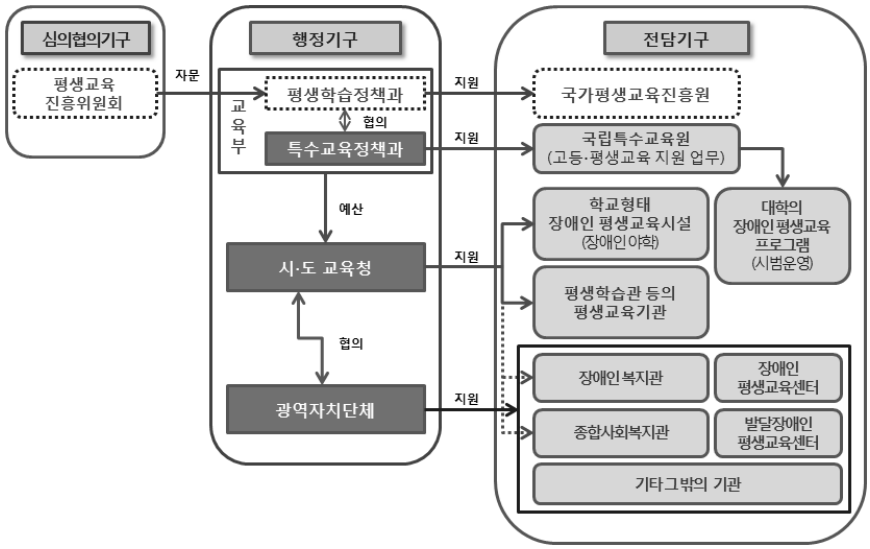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영역별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교육에서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교육의 제공자인 '정부(중앙과 지방)와 학교'로부터 수혜자인 '학생'에 이르는 교수-학습의 지원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우리나라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크게 심의 및 협의기구와 행정기구, 전담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는 각각 '국가'(정부) - '광역 자치단체'(시·도)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단계별 체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II-3] 참조).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전달체계도 원칙적으로 [그림 II-3]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심의협의기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행정기구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전담기구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형편이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그동안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그림VI-3]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는 사실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VI-3]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제([그림II-4]와 동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현재의 전달체계에 따르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 잡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업무만은 지역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와 국립특수교육원(고등·평생교육 지원 업무)에 일임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이 전달체계 내에서 겉돌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 수준의 전달체계(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를 일원화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달체계(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는 물론 그동안 성인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는 장애인 야학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및 운영 관리도 일원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 과제01 :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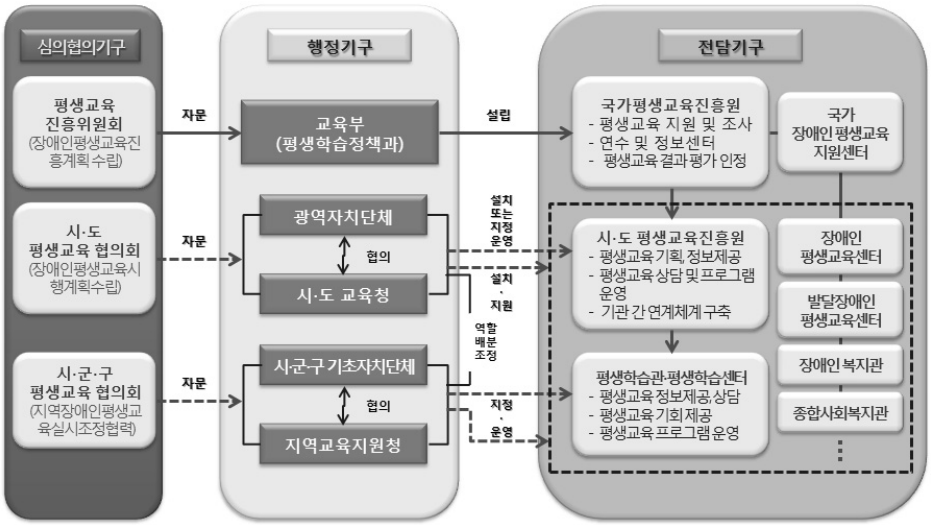
2017년 시행 예정인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기구로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립에 매우 중요하다.

법 개정의 취지로 보나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신설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두영(2016)은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의 취지를 그동안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를 삭제하고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조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다루고 있는 제19조의2에 위치하고 있고, 원보다는 작은 의미의 센터라는 점에서 누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기구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지원 및 조사 업무,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③ 장애유형별 프로그램(교재·교구 포함)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사소통 도구 포함) 개발·보급, ④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연수, ⑤ 각급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의 양성 지원, ⑥ 기타(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를 들 수 있다. 즉, 장애

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평생교육 제공 인력 양성·연수와 같은 국가수준의 업무이다.

국가문해교육센터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같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기구로 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제시해 보면 [그림VI-4]와 같다.



[그림VI-4]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과제02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총 6,849개소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포함)은 11.8%인 805개에 그치고 있다(〈표Ⅲ-14〉 참조). 이것은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기관 이용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용 중인 기관들도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전체의 4.7%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33.9%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표Ⅲ-7〉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5~41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고작 6개 유형(학교, 학교형태, 평생학습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조차 3개 유형(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은 특정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선택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로 편중되어 있는 기관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개정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정·운영한다.
-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 유·초·중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 평생교육기관(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한다. 현재 기타법령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유형에서 20개 이상의 유형으로 확대한다.

- 문화예술교육 중심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 문화의 집, 미술관, 박물관, 장애인 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전수회관, 지방문화원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 직업능력향상교육 중심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 시민참여교육 중심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보건소, 비영리민간단체, 성폭력상담소, 여성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셋째,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권고한다.

〈표Ⅵ-1〉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와 계열별 교습과정

분야	계열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 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출처 :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서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증진하는 일차적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학습자와 교육제공자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은 크게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무려 35~41개에 달하는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성인의 평생학습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단위의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평생학습 실태조사로 평생교육 정책 형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이들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다(김두영, 2016).

이에 따라 현재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실태는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과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부분적인 실태만 파악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3년마다 조사·보고하는 '특수교육실태조사'나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신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배치,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적정 예산의 배분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 규모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과제03 :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 결정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된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표II-2〉에서와 같이 교육(학습) 장면에서의 장애로 인한 제한이 있어 편의제공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 과제04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개선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포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된 운영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실제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기관의 관할 부처에 따라 교육부 관할과 보건복지부 관할, 기타 관할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통합 평생교육기관의 새로운 분류 체계가 생길 수도 있다.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분류체계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제05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업무 매뉴얼 개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도 실태조사 실시 과정을 정리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은 실태조사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업무 내용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도록 제시하고,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세부 기준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태조사 업무 매뉴얼에는 전체 업무 흐름도와 업무의 단계별 주요 내용, 업무 절차, 세부 업무, 그리고 각 업무의 부처별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다.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제공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의 편의법」') 제7조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실 이상,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로서 양호실, 화장실, 학부모 대기실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을 시설·설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자 초점집단면담'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초점집단면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은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설·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험하다는 점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장애인의 교육적 지원 방법을 잘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차별상황이 그만큼 많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설비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설립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이외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가 설립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등의 편의법」의 시설·설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 과제06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크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개정 「평생교육법」 제20조의2)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개정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2)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이들 기관은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향후 〈표VI-2〉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표VI-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 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 중 택시 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 과제07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표VI-3〉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도록 한다.

〈표VI-3〉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이동용 보장구 대여·수리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여유 공간 확보	•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교육과정 적용 유의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이동·접근 시설·설비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교통편의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이외의 성인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때 필요한 사항들(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이나 이들 기관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굳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하자면 통합형 프로그램(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분리형 프로그램(장애인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VI-4〉의 실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형 프로그램은 장애 특성으로 인한 추가적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만의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해 개설한다.

〈표VI-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분	정의	실례
통합형 프로그램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시설·설비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사로, 승강기에 의한 강의실 접근 보장 수화통역, 문자통역, 대체자료 등의 편의 제공
분리형 프로그램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인만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프로그램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활용' 등의 평생교육 강좌

2014년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비율이 47.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성인 장애인들은 훨씬 평생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욕구를 지닌 것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성인 장애인들은 자신들과 욕구나 수준이 맞지 않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주제를 달리하지 않으며, 이동이나 접근성, 편의제공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애를 가진 성인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장벽이 없으므로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이동이나 접근성, 편의제공 문제만 해소하면 지금이라도 평생교육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장애인구의 77.5%에 달하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성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보급을 통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 과제08 : 평생교육기관 내 이동·접근성 개선 지침 개발

장애인의 이동·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내 시설·설비 점검 및 개선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우선 개선 시설·설비 : 주 출입구 진출입, 학습장(강의실)까지의 접근, 학습장 출입구 진출입, 화장실 사용, 안전 대피 시설 접근 등
- 순차적 개선 시설·설비 : 장애인 주차시설,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 설치, 상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접근 등
- 시설·설비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침 및 정보

■ 과제09 : 유형별 장애인의 편의제공 지침 개발

장애인이 교육활동 중에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한 장애인들에게는 교육활동 중에 필요한 편의 요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호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고 편의제공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함
- 장애유형별(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밖의 장애)로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과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제시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 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열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기의 개인·가정·지역사회 생활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5).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전공과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동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워왔던 기초생활기술을 점차 잊어버리고 지역사회 적응에도 어려워하며, 자립생활능력 유지에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그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학령기 이후 단절된 교육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그러한 욕구는 현재 전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의 47.8%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교육부, 2014).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서는 학령기 이후 중단될 수 있는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을 골간으로 하는 교육 내용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2014년 제정·공포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이란, 구체적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꼭 배워야 하는 조직화된 교육 내용(지식)을 포함한 일정한 교육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굳이 따로 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보건복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계속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표VI-5〉의 구성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VI-5〉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의 구성

구분	정의	과목
기본 교육과정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각과 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58~61쪽에서 발췌.

■ 과제1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둘째, 기본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기본교육과정이라 함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성된 과목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각과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교육영역을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각과교육과정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편성한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과제11 :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표VI-6〉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VI-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구분	개념	대상 기관
통합형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거나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기관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의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곳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평생직업교육학원
전담형 평생교육기관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장애인 야학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 밖의 평생교육기관	기타법령에 의한 기관 중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의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곳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둘째, 교육기관의 형태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통합형과 전담형으로 제시하면 [그림VI-5], [그림VI-6]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Ⅵ-5] 통합형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



[그림Ⅵ-6] 전담형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라는 용어는 '교육제공인력'이라는 용어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교육 관리자, 교사 및 강사, 교육보조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법」에서는 기능상 교육 관리자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사의 배치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시·군·구평생학습관에는 정규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 20명 미만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그리고 법 제30조에서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는 각각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및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사 및 강사, 교육보조원 등의 나머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평생교육사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장애를 가진 성인 학습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전체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 개정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연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발달장애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제공인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표VI-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인 '기관 운영자'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대상을 선발하며, 프로그램 교·강사를 수급하는 등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 관리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 및 강사', 교사와 강사의 교수활동 및 장애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보조원' 등의 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Ⅵ-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역할

종류	역할(기능)
기관 운영자	• 평생교육기관 운영 총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관리자	•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프로그램 기획, 준비 및 평가 •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 강사에 대한 장애인 이해 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교사 및 강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지도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도
교육보조원	• 교육관리자 및 기본교육교사의 교육 지원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64쪽 재구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역할 및 자격 요건, 배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배치 못지않게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26조에서도 평생교육사의 배치까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 측면의 규정은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에서 평생교육사의 등급과 연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는 56.7%의 응답자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중 교육 관리자로서의 평생교육사를 제외한 그 밖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전문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 운영자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직무연수와 보수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과제12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할과 자격요건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기관 운영자와 교육 관리자, 교사 및 강사, 교육보조원이다. 각각의 역할을과 자격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VI-8〉 참조).

〈표VI-8〉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역할·자격요건

종류	역할(기능)	자격 요건
기관 운영자	기관 운영자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장으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총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관리자	교육 관리자는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기획, 준비,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강사 섭외 및 장애인 이해 교육,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평생교육사, 특수교육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 종사 경력을 가진 자로서 6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교사 및 강사	교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진단-계획(IEP)-교육-평가한다.	교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60시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단, 특수교육 교사 자격을 갖춘 자는 면제).
	강사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도를 담당한다.	강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기술자격증의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보조원	• 교육관리자 및 기본교육교사의 교육 지원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교육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첫째, 기관 운영자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장으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총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교육 관리자는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기획, 준비,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강사 섭외 및 장애인 이해 교육,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교육 관리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 종사 경력을 가진 자로서 6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진단-계획(IEP)-교육-평가하며, 강사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도를 담당한다. 교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60시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단, 특수교육 교사 자격을 갖춘 자는 면제). 강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기술자격증의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보조원은 교육 관리자와 교사 및 강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교육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과제13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배치 기준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배치는 해당 기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정한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육 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한다. 3개 과정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육 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이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다. 강사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설 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치한다. 1인의 강사가 같은 기관에서 같은 강좌를 2개 과정 이상 할 수 없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육 보조원을 1인 이상 배치한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참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교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과제14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직무연수와 보수교육 시행

첫째, 직무연수는 장애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직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둘째, '기관 운영자'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부임한 3개월 이내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교육 관리자와 교사 및 강사는 임용 즉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넷째, 직무연수의 내용은 〈표VI-9〉와 같이 기관 운영자, 교육 관리자, 교사 및 강사는 동일하게 '평생교육', '특수교육', '교육학 일반'이며, 교육 보조원은 시·도교육청 및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을 준용한다.

〈표VI-9〉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별 직무연수 과목과 시간

대상	주요 과목		시간
	분야	과목	
기관 운영자	*평생교육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등	60시간
교육 관리자	*교육학 일반	교육사회학,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 설계 등	
교사	**특수교육	특수교육론, 통합교육론, 전환교육론, 개별화교육계획, 정신지체아 교육론, 자폐성장애아 교육론, 장애아 가족 및 상담지원 등	
강사	장애의 이해와 교육	지체장애와 교육, 시각장애와 교육, 청각장애와 교육, 의사소통장애와 교육, 정서 및 발달장애와 교육 등	30시간
교육 보조원	장애인 및 가족 이해, 바람직한 관계형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일상생활 지원, 성인기 교육활동 지원, 안전생활 지원(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 참조)		30시간

※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발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서 발췌

다섯째, 보수교육은 연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내용은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장애인 평생교육권의 증진을 위해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정책 방안들(교육기회 확대, 교육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성 제고)을 실현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일정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고 평가를 통한 기관 파악과 지원의 양이나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기관들(예 : 보육시설,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

보통 기관 평가인증제도는 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시설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 시설종사자들의 서비스 수행에 관한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설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최미숙, 이미혜, 이민경, 200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는 정책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주안점은 참여 기회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접근성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 등 교육환경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이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얼마나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고 전문성은 충분한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과제15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영역과 지표 개발

첫째, 평가 영역은 '참여 기회'와 '교육 환경',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문성'의 네 가지 영역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 방안을 기관 외 실천 과제와 기관 내 실천 과제로 구분해 볼 때, 위 세 영역은 기관 내 실천 과제로써, 실제 기관들의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영역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으로 정한다.

둘째, 평가 영역에 따른 평가지표(안)은 〈표VI-10〉과 같다.

〈표VI-10〉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지표(안)

영역		부문	문항별 (준거)	배점
참여 기회 (10점)		• 수강절차 • 정보제공	2 2	10
교육 환경 (30점)	편의시설 설치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 및 기타시설 • 시설·설비 만족도	2 2 2 2 2	30
	편의 제공	• 이동용 보장구 대여·수리 • 보조인력(수화속기 등)의 배치 • 보조공학기기 제공 • 여유 공간 확보 • 기타	2 2 2 2 3	
프로그램 운영 (30점)		• 운영 프로그램의 수와 다양성 • 수행 프로그램의 편의지원 • 발달장애인교육과정 운영 • 참여자 만족도	2 2 2 2	30
교육 전문성 (30점)	기관운영자	• 기관운영자 직무연수	1	30
	교육관리자	• 자격, 경력, 직무연수	2	
	교사 및 강사	• 자격, 경력, 직무연수	2	
	교육보조원	• 자격, 경력, 직무연수	2	
4개 평가 영역		23개 평가 부문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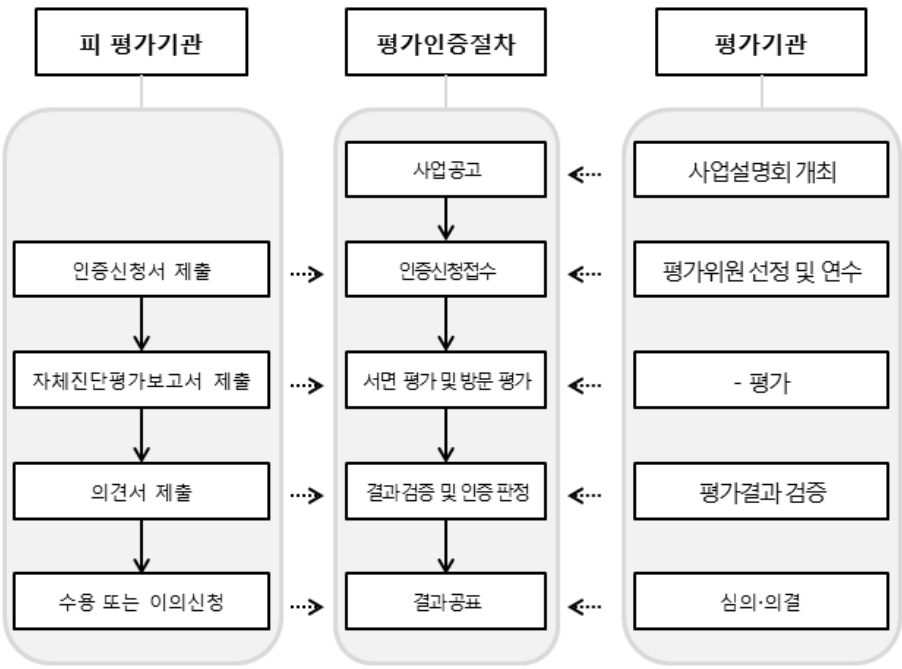
셋째, 평가지표에 따른 인증 기준은 4개 영역의 평가 점수를 가지고 결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증유형은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정한다.

넷째, 인증 기간은 다음 평가 때까지로 하며, 인증유형별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과제16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절차 개발

첫째, 평가기관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하고 평가대상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관인증평가절차가 시작된다. 기관평가인증 절차(안)는 [그림VI-7]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Ⅵ-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절차

둘째, 기관평가인증 평가기관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하되, 대학 등에 수탁할 수 있다.

4. 정책 개선 과제 수행기관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평생교육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7대 개선 방안 16대 세부 정책 추진 과제 수행에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교육청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개정「평생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과제01)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충(과제02)하여야 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표VI-11〉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의 정책 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VI-1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정책 수행

정책 개선 방안	세부 정책 추진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의 조건과 범위 결정(과제03)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개선(과제04)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업무 매뉴얼 개발(과제0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 평생교육 시설 내 이동접근성 지침 개발(과제08) • 유형별 장애인의 편의제공 지침 개발(과제0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과제10) •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과제1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할과 자격 요건 규정(과제12)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배치 기준 규정(과제1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영역과 지표 개발(과제15)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개발(과제16)

한편, 시·도교육청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과제06)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준수(과제0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와 보수교육 시행(과제14)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권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정책 동향, 미국과 호주 및 일본의 평생교육 동향 등 문헌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로서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초점집단면담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다르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과 제공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형편으로 평생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 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과 사회복지사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 장애인이 참여할만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 운영 실태,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일생생활 수행 능력 향상, 여가 및 취미생활'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만족도에 관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소개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한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애인 야학과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았다.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기초문해교육'이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순이었다. 평생교육 참여 기간은 평균 3.2년이며, 이는 참여한 모든 기간을 더한 결과이다. 평생교육 수강료는 무료가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하를 합치면 전체 조사 참여자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부족과 이동 및 접근성 부재를 꼽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는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자체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특히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 장애인들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교육 운영 실태에서의 문제점으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주로 하지만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지역 관계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을 들고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등을 공통적인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또 조사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확대'와 ②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④ '우수한 강사확보와 질 관리'에서 찾고 있다. 끝으로, 조사 참여자들 가운데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②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③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④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⑤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달체계 정비', '실태조사', '교육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발달

장애인 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등 총 일곱 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16개 세부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VI-2] 참조). 이상의 정책 개선 방안은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제공인력 양성과 배치' 측면에서 매우 지엽적으로 연구되거나 논의된 바는 있으나(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김주영, 2016; 김기룡, 2016a), 아직 어느 하나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평생교육 주무부처로서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교육청'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 방안과 그에 따른 세부정책추진과제는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편의상 순서를 정하여 제시하였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굳이 선후를 따지기보다 동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정책 과제들 중에는 법령의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과제04(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개선)나 과제07(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준수), 과제12(교육제공인력의 역할과 자격 요건 규정), 과제15(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영역과 지표 개발)의 경우 법령의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동법 개정법률 제20조의2와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 준수 의무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이 매우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제공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해서는 먼저 개정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교육제공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개정「평생교육법」제19조의2 제2항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업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새롭게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길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안배와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지자체 평생학습관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내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5개년 계획(2018~2022)'에 개정「평생교육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시행(2017년 5월 30일) 이전이라도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참고문헌

강순원(2010).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교육적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13**(2), 69-91.

교육과학기술부(2011).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2012). **보도자료**(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3~2017]**.

교육부(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교육부(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교육부(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2016).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조사 지침**.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교육백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04).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 **장애인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국립특수교육원(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2012). **특수교육실태조사 업무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권대봉(2007). 공공정책으로서의 평생학습 :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와 특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4)**, 149-172.

권대봉(2009). **평생교육의 다섯마당**. 서울: 학지사.

김기룡(2016a).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력의 배치와 교육.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97~120.

김기룡(2016b).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223~246.

김기룡·나경은(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6(4)**. 315~336.

김두영(2016).「평생교육법」개정의 내용과 발전 과제. **2016년도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207~2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김신일(1993). **교육사회학**. 서울:교육과학사.

김은숙, 이정은 (2006).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관련 법률 고찰.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 13(2)**, 179~208.

김주영(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구성.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63~90.

박승희(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연구, 39**(1). 39~75.

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201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동문사.

보건복지부(200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모형 개발**. 안산:국립특수교육원.

심성보(1994). 현대사회의 변화와 '공교육' 사상의 재정립. **교육문제연구 제6집**. 249~266.

안기성(1989). 국가교육권의 근거와 논리. **교육진흥 여름호 Vol.1**, No.4.

여수일(200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점룡, 양종국, 원성옥, 강병호(2010).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경기:국립특수교육원.

이기범(1993). 다양화, 분절화 시대의 '공교육': 정체성, 문화, 담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회**(9월 월례발표회).

이무근, 김신일, 강무섭, 최운실(2001).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발전모델 비교분석**. 서울:교육인적자원부.

이종재(200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2004년 제1차 평생교육 포럼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2001). **학습사회에서 학습경제로의 전환과 그 의미: 평생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임경원, 이유리, 곽슬철(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07~24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임연기·이병승·최준렬·이영재·박성희·박혜원·지희숙·김인옥·관효정·신교남·이지영 (2013). **교육복지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경태(2012).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 및 지원요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동영(1998).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전환전략 탐색. **특수교육연구, 5(-)**, 129-152.

정인숙(2007),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과 시사점, **특수교육학연구, 제41권** 제4호.

정인숙(2013). 다운증후군의 평생교육과 미래설계. **다운복지관 개관기념 세미나 자료집**. 59~90.

정인숙 외 4명(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정인숙·김석진·박재국·박진홍·이해영·홍성두(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수급 방안 연구**. 아산:국립특수교육원.

정재은(2012).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학지사.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최미숙·이미혜·이민경(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역할수행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9호**. 129~149.

최복천·이미정외(2013).**발달장애인 자조그룹지원 매뉴얼.** 서울:한국장애인개발원.

표시열(2008). **교육법: 이론·정책·판례**. 서울: 박영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한숭희(2005). **평생교육론**. 서울:학지사.

한준상(2002). **호모 에루디티오**. 서울:학지사.

経濟産業省組織規則(2016)

高畑庄藏(2004)知的障害者本人參加を重視した青年學級のより豊かな實踐を求めて,發達障害支援システム學研究3(2).

今枝史雄·菅野敦(2010), 知的障害者の成人期における生涯學習支援について : 生涯學習に關する研究の動向と實態の調査から,東京學芸大學紀要. 總合教育科學系, 61(2)

寄林結·高橋智(2012), 生涯學習時代における障害者青年學級の役割 : 障害者青年學級參加の本{人のニーズ調査から,東京學芸大學紀要. 總合教育科學系, 63(2)

寄林結·高橋智(2012),畠山豊吉(1955)高畑庄藏(2004)

大南英明(2002),知的障害者の生涯學習を考える,帝京大學文學部紀要教育學27.

木村政秀(2012),生涯學習からみた成人期知的障害者の「學び」の保障と支援の實際-滋賀大學教育學部附屬特別支援學校卒業生を對象とした「青年學級大學講座」の實踐から—滋賀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論文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文部科學省組織令(2016)
文部科學省組織規則(2016)
山內修·廣森直子(2010),知的障害者の生涯學習にかかわる地域ネットワークづくりに關する研究,青森縣立保健大學
生涯學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關する法律(2002).
小塩允護(2007),知的障害のある人の生涯學習における支援プログラムの開發に關する研究, 國立特殊教育總合研究所.
松矢勝宏(2004). 知的障害のある青年や市民へのプログラムーオープンカレッジ實踐から.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4 月号, pp.20-22.
畠山豊吉(1955)青年學級振興法の基本構造と實態,岩手大學學芸學部研究年報 8(1)
田浦武雄·伊藤敏行(1954)青年學級の社會的背景,教育社會學研究 6,
烏雲,畢力格 今枝,史雄 菅野,敦(2012). 成人期知的障害者の生涯學習支援に關する研究:
烏雲畢力格·今枝史雄·菅野敦(2013),成人期知的障害者の生涯學習支援の"ねらい"に關する研究 : 障害者青年學級·特別支援學校(青年學級·同窓會)·オープンカレッジにおける實態調査を通して,東京學芸大學紀要. 總合教育科學系 Vol.64
烏雲畢力格·今枝史雄·菅野敦(2013),成人期知的障害者の生涯學習支援における「學習の目的」に關する研究:實施主体や實踐の"ねらい"との關係を通して,東京學芸大學教育實踐研究支援センター紀要 Vol.9
中央教育審議會生涯學習分科會(2004).今後の生涯學習の振興方策について
CEC.(2005). *What's New in the New IDEA 2004..* Arlington: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Donald, D. D., Jean B. S. (2006). *Teaching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California: Corwin Press
Donn, E. B., Robert, J. L. (2004).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Services. New Jersey: Pearcon Education.
Getzel, E. & Wehman, P.(2010). *Going to College: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ML: Brokes.
Moni, K. & Jobling, A (2000), LATCH-ON : A program to develop literacy in young adults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Adolescent and Adult Literacy.
OECD(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OECD.
OECD(1998). *Human capital invest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aris: OECD.
Prince, D., & Jenkins, D(2005). Building pathways to success for low-skill adult students: Lessons for community college policy and paractice from a statewide longitudinal tracking study.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25*, 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Timmons, G.(1988). *Education, Industrialization, and Selection*. Routledge.

Thomas, A. M.(1991). *Beyond education*. SF: Jossey-Bass.

Turnbull, R., & Stowe, M. J. (2001). A Taxonomy for Organizing the Core Concepts According to Their Underlying Principl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3),177-197

UNECO(1972). *The Faure report*. Paris: UNESCO.

West, E. G.(1975). *Educat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B.T.: Batsford Ltd.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미네소타대학교: https://ici.umn.edu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kaswc.or.kr/centerlist

호주장애서비스: http://www.dsa.org.au/Pages/Home.aspx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UNESCO 홈페이지. http://en.unesco.org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 록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사자용 설문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용 설문지(1유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용 설문지(2유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부록1 :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사자용 설문지

ID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그 동안 귀하가 평생교육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각했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 9. .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한국복지대학교

※ 연락처: 박민영 010-4767-7122

Ⅰ.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 )세
3.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4. 근무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④ 기타
5. 소속기관 유형	□① 학교 □③ 사이버대학 □⑤ 시민단체부설 □⑦ 장애인야학 □⑨ 지자체(시·도평생학습관 등) □⑪ 장애인복지관 □⑬ 지식인력개발	□② 학교부설(대학 평생교육원 등) □④ 사업장부설(문화센터 등) □⑥ 언론기관부설 □⑧ 직업훈련 기관 □⑩ 장애인평생교육센터 □⑫ 지역사회복지관 □⑭ 기타( )	
6. 소지자격증 (중복 가능)	□① 평생교육사 □④ 상담사 □⑦ 직업재활사	□② 사회복지사 □⑤ 치료사 □⑧ 기타 공인자격	□③ 특수교육 교사 □⑥ 청소년지도사 □⑨ 없음
7.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기타
8. 경력	1.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 : ( )년 ( )개월		
	2.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경력 : ( )년 ( )개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9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②	자립생활 능력 향상
□③	취업능력 향상
□④	여가 및 취미생활
□⑤	장애인 돌봄을 통한 가족의 휴식
□⑥	기타 :
10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②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 발달 및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③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④	장애인들이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⑤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⑥	기타 :

	문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2	귀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3	귀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Ⅲ.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14	귀하의 기관은 현재 정부의 어느 부처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교육부
□②	보건복지부
□③	기타 부처( )
□④	지원 받고 있는 부처가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4-1	현재 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받고 있는 지원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③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④	시설 및 장비 제공
□⑤	강사 정보 제공
□⑥	인력 지원
□⑦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⑧	기타 :

문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2	정부 부처로부터 귀 기관이 받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5	귀하의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아래 항목에서 <u>하나만 골라</u>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신문·잡지
□③	TV·라디오
□④	전단지·안내지
□⑤	포스터·현수막
□⑥	평생학습 소식지
□⑦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⑧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⑨	별도로 장애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⑩	기타 :

16	귀하의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 운영하십니까?
□①	기관 내부 공간
□②	기관 외부 유상 임대 공간
□③	기관 외부 무상 임대 공간
□④	기타 :

문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귀하의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 수강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17-1	귀 기관에서 장애인 수강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편의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편의시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② 보조인력
□③ 학습 환경
□④ 교구나 교재
□⑤ 교통편의
□⑥ 기타

18 **귀하의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중 장애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 2015년 기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　　)명 중 장애인 참여자 (　　)명

19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수강자의 장애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용이 많은 장애유형 순으로 순서를 (　) 안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각장애(　　) ② 청각장애(　　) ③ 지체장애(　　)
④ 발달장애(　　) ⑤ 기타(　　)

20 **귀하의 기관 총 예산 규모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 2015년 기준

총 예산 규모 : (　　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 (　　백만원)

21 **귀하의 기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① 수강료
□② 후원금
□③ 지원금
□④ 기타 :

22 **귀하의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강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2

22-1 **거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편의시설 부족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③ 해당 장애인의 자격이나 능력 부족
□④ 강사 및 보조인력의 부족 등
□⑤ 기타

23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했던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였습니까?(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1명이라도 참여한 경우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함)**
※ 2015년 기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1명이라도 참여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에 포함합니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　　)개

24 **귀하의 기관에서 제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인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한 프로그램 세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① 기초문해교육(한글, 한글응용교실, 한글강좌, 한글노래 등)
□② 학력보완교육(교과연계강좌, 중·고·대입검정고시강좌, 과학교실, 학점은행제 과정, 독학사 강좌 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③ 직업능력교육(창업·취업·재취업교육, 각종 자격증 인증·취득, 직무연수 등)
□④ 문화예술교육(스포츠, 생활공예, 미술·서예,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등)
□⑤ 인문교양교육(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관련, 생활의료, 문학, 역사·전통 등)
□⑥ 시민참여교육(인권, 다문화이해, 주민자치, 시민리더양성, NPO, NGO 관련 교육 등)
□⑦ 기타 :

25 귀하의 기관에서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기획하고 있습니까?

□① 장애인 대상의 교육요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선정·기획
□②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
□③ 지원 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선정·기획
□④ 기타 :

26 귀하의 업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만 전담
□②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
□③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 다른 업무의 비중이 반반
□④ 다른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가 부가적임
□⑤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와는 관계없음

27	**귀하가 담당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는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편입니까?**	1	2	3	4	5

28	**아래 항목들은 귀하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문제가 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관외측면	①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1	2	3	4	5
	② 지역 관계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1	2	3	4	5
	③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족	1	2	3	4	5
	④ 법 체계의 혼란	1	2	3	4	5
	⑤ 전담 행정기관의 이원화	1	2	3	4	5
기관내측면	⑥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2	3	4	5
	⑦ 과중한 업무 부담/다른 업무와의 중복	1	2	3	4	5
	⑧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	1	2	3	4	5
	⑨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1	2	3	4	5
	⑩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부족	1	2	3	4	5
	⑪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1	2	3	4	5
	⑫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1	2	3	4	5
	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어려움	1	2	3	4	5
	⑭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부족	1	2	3	4	5
	⑮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 부족	1	2	3	4	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⑯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열악성	1	2	3	4	5
	⑰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1	2	3	4	5
	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협력 기관 및 시설 부족	1	2	3	4	5
	⑲ 기타	1	2	3	4	5
29	**아래 항목들은 귀하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할 때 타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등 인적자원의 교류	1	2	3	4	5
	② 장애인 평생교육 공간·시설·장비 등 물적 자원의 교류	1	2	3	4	5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1	2	3	4	5
	④ 장애인 평생학습축제 등 공동 이벤트 사업 추진	1	2	3	4	5
	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1	2	3	4	5
	⑥ 공동홍보, 정보 교환, 학습안내 등 정보 자원 교류	1	2	3	4	5
	⑦ 기타 :	1	2	3	4	5

Ⅳ.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30	**귀하는 예산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는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부
□②	보건복지부
□③	기타 :

문항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31	**아래 항목들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	2	3	4	5
②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	1	2	3	4	5
③	적정한 비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1	2	3	4	5
④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1	2	3	4	5
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통합 제공	1	2	3	4	5
⑥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1	2	3	4	5
⑦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1	2	3	4	5
⑧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혜택	1	2	3	4	5
⑨	기타 :	1	2	3	4	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1-1	위의 요소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3순위까지 선정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32	아래 항목들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장애인 평생학습업무 총괄 거점 기구 설립 및 운영	1	2	3	4	5
②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1	2	3	4	5
③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증원 및 배치 확대	1	2	3	4	5
④	우수 강사 확보 및 강사은행제 운영	1	2	3	4	5
⑤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대상의 장애이해 교육	1	2	3	4	5
⑥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협력	1	2	3	4	5
⑦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1	2	3	4	5
⑧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개선 및 다양화	1	2	3	4	5
⑨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상담	1	2	3	4	5
⑩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및 요구에 대한 주기적 조사 연구	1	2	3	4	5
⑪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평가	1	2	3	4	5
⑫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1	2	3	4	5
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	2	3	4	5
⑭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	2	3	4	5
⑮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참여	1	2	3	4	5
⑯	기타 :	1	2	3	4	5

32-1	위의 과제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부록2: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용 설문지(1유형)

ID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떤 교육을 받아오셨는지, 또 어떤 교육을 더 받고 싶으신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싶으신 지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권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 9. .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한국복지대학교

※ 연락처: 박민영 010-4767-7122

Ⅰ.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현재 몇 세이십니까?	만 _____세
3.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④ 기타	
4. 귀하는 몇 세에 장애를 입으셨습니까? 당시 연령을 써 주십시오.	
만 _____세(※ 선천적일 경우 0세로 기입해 주세요.)	
5. 귀하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③ 지체장애 □④ 뇌병변장애 □⑤ 시각장애 □⑥ 청각장애 □⑦ 언어장애 □⑧ 정신장애 □⑨ 뇌전증 □⑩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간) □⑪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 귀하의 장애는 몇 등급입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7.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③ 초등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 □⑤ 중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중퇴 □⑦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교 중퇴 □⑨ 대학교 졸업 □⑩ 대학원(석사) 이상

8. 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십니까?

주당 평균 ( ) 시간 근무

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약 _____원

II.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과 만족도

10. 귀하는 그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 평생교육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귀하는 주로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아래 항목에서 하나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신문·잡지
□③ TV·라디오
□④ 전단지·안내지
□⑤ 포스터·현수막
□⑥ 평생학습 소식지
□⑦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소개
□⑧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⑨ 별도로 장애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없음
□⑩ 기타 :

12. 귀하가 참여하셨던 평생교육 기관은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① 학교 □② 학교부설(대학 평생교육원 등)
□③ 사이버대학 □④ 사업장부설(문화센터 등)
□⑤ 시민단체부설 □⑥ 언론기관부설
□⑦ 장애인야학 □⑧ 직업훈련 기관
□⑨ 지자체(시·도평생학습관 등) □⑩ 장애인평생교육센터
□⑪ 장애인복지관 □⑫ 지역사회복지관
□⑬ 지식인력개발 □⑭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 귀하가 참여하셨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었는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기초문해교육(읽기·쓰기·셈하기 관련 교육, 생활기술교육 등)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시간등록제 등)
□③ 직업능력교육(직업준비, 자격인증, 직무역량강화)
□④ 문화예술교육(스포츠, 문화, 음악, 미술, 풍선아트, 생활공예, 노래교실 등)
□⑤ 인문교양교육(건강, 정보인터넷 교육, 인문학, 외국어, 예절, 문학, 철학, 심리학 등)
□⑥ 시민참여교육(지역 이해 및 국가정책 이해 교육, 지역리더양성, 자원봉사 등)

14. 귀하가 그동안 참여한 평생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여러 과정에 참여한 경우 모두 합친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 )년 ( )개월

15.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 과정에 부담한 금액은 월 평균 어느 정도이셨습니까?
※ 가령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2개 수강하는데 모두 12만원이 들었다면, 12÷2개÷3개월=2만원

□① 없음 □② 3만원 이하 □③ 4~5만원 □④ 6~10만원
□⑤ 10만원 이상 □⑥ 모르겠음

15-1. 귀하는 평생교육에 드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많은 부담을 느낀다.
□②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낀다.
□③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④ 모르겠다.

16. 귀하는 그동안 참여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과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7. 귀하는 그동안 참여하신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 귀하는 그동안 참여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9. 귀하는 그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직원과 강사의 태도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0. 귀하는 그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평생교육기관의 편의 제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1.	귀하는 그동안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2.	귀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23.	귀하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24.	귀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25.	귀하는 비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② 거절당한 경험이 없다. □③ 비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시도한 경험이 없다.					
26.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귀하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6-1	편의 제공을 요청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편의 제공을 요청하셨습니까?					
	□① 접근 및 이동 편의 관련(화장실 출입, 엘레베이터 사용 등) □② 학습 및 수강 편의 관련(점자 자료, 수화통역사, 교육보조원, 강의실 조명 등) □③ 기타( )					
26-2.	요청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까?	□① 제공받았다. □② 일부만 제공받았다. □③ 제공받지 못했다.				
26-3.	요청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6-4	요청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당 기관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해당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 □③ 해당 기관의 인력 부족 □④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Ⅲ.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27. 귀하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② 자립생활 능력 향상
□③ 취업능력 향상
□④ 여가 및 취미생활
□⑤ 장애인 돌봄을 통한 가족의 휴식
□⑥ 기타 :

28.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활동
□② 장애인들이 급속한 기술 발달 및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③ 장애인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학력 증진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④ 장애인들이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
□⑤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 능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
□⑥ 기타 :

29.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0. 귀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31.	귀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3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사람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① 장애인들끼리만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③ 누구와 함께 참여하든 상관없음 □④ 잘 모르겠음

33. 귀하는 하루 중 주로 언제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① 아침시간(오전)에만 □② 낮 시간(오후)에만
□③ 저녁시간에만 , □④ 하루 종일

34. 귀하가 가장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 문해교육(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교육)
□② 직업교육(취업 및 직업생활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교육)
□③ 인문교양교육(일반적인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④ 정보화교육(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⑤ 여가교육(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한 여가교육)
□⑥ 문화예술교육(음악 또는 미술 등 예술활동 교육)
□⑦ 기타( )

35. 귀하가 가장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곳입니까?

□① 도청, 시청, 교육청,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②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③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④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
□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⑥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⑦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기관
□⑧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⑨ 기타 ( )

Ⅴ.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36. 귀하는 예산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에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부
□② 보건복지부
□③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7.	아래 항목들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	2	3	4	5
	② 우수한 강사 확보와 질 관리	1	2	3	4	5
	③ 적정한 비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1	2	3	4	5
	④ 종합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립	1	2	3	4	5
	⑤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새로운 설립	1	2	3	4	5
	⑥ 전문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확보	1	2	3	4	5
	⑦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1	2	3	4	5
	⑧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통합 제공	1	2	3	4	5
	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1	2	3	4	5
	⑩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1	2	3	4	5
	⑪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혜택	1	2	3	4	5
	⑫ 기타 :	1	2	3	4	5

37-1.	위의 요소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대로 3순위까지 선정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부록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용 설문지(2유형)

번호 □□□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기관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성인 장애인 여러분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신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곳 이외에는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 9. .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한국복지대학교

※ 연락처: 박민영 010-4767-7122

Ⅰ. 일반적 사항

1. 당신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① 남자 □②여자	2. 나이	
3. 당신이 마지막 다닌 학교는 어디인가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학교를 다니지 않음		
4. 마지막 다닌 학교는 특수학교인가요? 아니면 일반학교 인가요?	□① 특수학교 □②일반학교 □③ 모름		
5. 당신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나요?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③ 지체장애 □④ 뇌병변장애 □⑤ 시각장애 □⑥ 청각장애 □⑦ 언어장애 □⑧ 정신장애 □⑨ 뇌전증 □⑩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		
6. 당신에게는 다른 장애가 또 있나요?	□① 있음 (장애명:) □② 없음 □③ 모름		
7. 장애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모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것에 대한 생각

1번] 당신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번]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배운 것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 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① 읽기, 쓰기, 셈하기 □② 검정고시 , □③ 직업관련 교육 □④ 노래, 음악, 춤, 악기 , □⑤ 미술, 스포츠 등 □⑥지역사회 이용하기 □⑦ 건강, 컴퓨터, 외국어, 예절 □⑧ 기타(글로 써 주십시오. :)	
3번] 학교를 졸업한 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 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① 장애인복지관 □② 스포츠센터 □③ 직업재활 □④ 평생교육센터 □⑤ 대학교 □⑥ 주간보호센터 □⑦ 학원 □⑨ 모름 □⑧ 기타(글로 써 주십시오. :)	
4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것이 재미있었습니까?	□①예 (5번은안해도됩니다) □②아니오 (5번에 답해 주세요.)
5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것이 재미없었으면 어떤 게 재미없었습니까? (여러 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① 내용이 너무 쉬워서 □②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③ 배운 걸 또 배워서 □④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⑤ 같이 배우는 사람이 싫어서 □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6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것이 어렵거나 힘들 때 선생님에게 쉽게 말해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7번은안해도됩니다) □②아니오 (7번에 답해 주세요.)
7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울 때 어렵거나 힘들면 쉽게 말해 달라고 이야기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① 선생님이 무서워서 □② 말해도 되는지 몰라서 □③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④ 혼날까봐 걱정돼서 □⑤ 조용히 하라고 해서 □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Ⅲ. 배우고 싶은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을 누구와 얼마나 어디서 하고 싶은가요?

1번] 누구와 같이 배우고 싶나요?	□①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애가 없는 사람 □③누구든 괜찮음 □④ 잘 모름
2번] 하루 얼마나 오래 동안 배우고 싶습니까?	□①아침시간에만 □② 낮 시간(오후)에만 □③저녁에만 □④ 하루 종일 □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3번] 배우는 장소는 어떤 곳이 좋습니까?	□① 하루 종일 같은 곳에서 □② 아침과 낮은 서로 다른 곳에서 □③ 어디에서 해도 괜찮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 당신이 잘 하는 것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내 용	○
1. 혼자서 교회나 성당, 절에 가기		13. 시간 잘 지키기	
2. 혼자서 버스·지하철·기차를 타기		14. 사람들과 한 약속 지키기	
3. 혼자서 밥하기		15. 글자를 읽고 쓰기	
4. 혼자서 반찬이나 국 만들기		16.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해하기	
5. 혼자서 집안 청소하기		17.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 이야기하기	
6. 혼자서 빨래하기		18. 싫은 것과 좋은 것 표현하기	
7. 혼자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사기		19. 사람들에게 예의 지키기	
8. 돈 계산하기		20.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9. 내가 가진 돈 만큼만 쓰기		21. 친구를 만들거나 친구 사귀기	
10. 적금이나 예금 종류 알기		22. 친구들에게 힘든 것 이야기하기	
11. 혼자서 은행 이용하기		23. 친구들과 놀기	
12. 노래, 악기, 그림, 운동 등 취미활동하기		24. 조립하거나 만들기	

Ⅴ. 당신이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것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내 용	○
1. 혼자서 밥하는 방법		14. 옷 잘 입는 방법	
2. 혼자서 반찬이나 국 만드는 방법		15. 화장하는 방법	
3. 혼자서 집안 청소하는 방법		20.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방법	
4. 혼자서 빨래하는 방법		21. 내 생각 이야기하는 방법	
5. 혼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방법		22. 사람간의 예의 지키는 방법	
6. 혼자서 돈 계산하는 방법		23. 친구 만드는 방법	
8. 혼자서 은행 이용하는 방법		24. 이성과 데이트 하는 방법	
8. 혼자서 시계 보는 방법		25.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9 회사에서 잘 지내는 방법		26. 컴퓨터 사용 방법	
10.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 배우기		27. 컴퓨터 게임 방법 알기	
11.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방법		28.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12. 글자를 읽고 쓰는 방법		29. 장애인관련 법이나 정책	
13.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		30. 취미나 여가 활동하는 방법	
31. 그 밖에 더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것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인쇄일 | 2016년 11월 25일
| 발행일 | 2016년 11월 25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저동1가)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760
| 제 작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ISBN : 978-89-6114-536-7 93370 비매품